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480-14

Justice  
1st  
법치로! 정의로! 미래로!

#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2009. 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480-14



#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2009. 12.





# 목 차 | Contents

<b>제1장</b>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I. 행정정보공개제도란	1
II. 매뉴얼 작성목적	1
III. 매뉴얼 작성범위	1
IV. 연혁	2
<b>제2장</b> 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	5
I. 정의	5
II. 사전정보공표제도	10
III. 정보공개청구를 대비한 공공기관의 사무	14
IV. 정보공개청구의 진행	20
V. 수수료	39
VI. 청구인 확인	41
VII. 정보공개심의회	42
VIII. 인터넷 정보공개	45
IX. 제도운영 FAQ	49
<b>제3장</b> 비공개 대상정보	53
I. 개관	53
1. 개요	53
2.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기준	54

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57
1. 개요	57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61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61
Ⅲ.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69
1. 개요	69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73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73
Ⅳ.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77
1. 개요	77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80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80
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82
1. 개요	82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86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87
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95
1. 개요	95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98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99
Ⅶ.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110
1. 개요	110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113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113

VIII.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125
1. 개요	125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127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128
IX.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133
1. 개요	133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135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135
X. 기타 비공개 사항	137
<b>제4장 문서의 유형별 공개여부</b>	141
<b>제5장 정보공개와 권리구제</b>	169
<b>제6장 정보공개 관련 참고자료</b>	175
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5
I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7
II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7
IV.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216
V. 비공개 결정처분의 통지 표준화 방안	256
VI. 비공개 결정 등 통지시 안내문 발송 계획	269
VII.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표준 문안	271
VIII.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안내제	276
IX.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안내문	278
X. 중요 결정 사례	281
XI. 정보공개 관련 질의 & 응답	291



# [ 제 1 장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

## I. 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II. 매뉴얼 작성목적

- 법무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정보의 공개 결정여부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및 유형화를 통하여 청구의 편의성 증진과 정보공개결정의 일관성 유지
-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신뢰도 향상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 및 행정정보목록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안내 책자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정보의 접근 및 이용 편의 도모

## III. 매뉴얼 작성범위

- 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 설명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공표

- 일반적 문서의 유형별 공개여부 분류
- 정보공개와 권리구제절차 안내
- 정보공개 관련 참고자료 제공

## IV. 연혁

### 1. 법령 등 제·개정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제도도입 추진 ('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94. 7.)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96. 12. 공포, '98.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 ('98. 1.)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정 (국무총리 훈령 제442호, '03. 6. 시행)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법무부 예규 제682호, '03. 11. 시행)
- 정보공개법령 개정 3회('04, '07, '08 개정)

### 2. 법령 등 주요개정 내용

#### 가. 정보공개법의 주요개정 내용 ('04. 7. 30. 시행)

-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이외에 전자우편(e-mail) 공개가 가능함
-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정보(비전자적 형태의 정보 포함)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공개에 응하도록 하였음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또는 정부간행물의 발간·배포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법제화 하였음
- 공공기관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음 ('05. 7월부터 시행)

-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가 축소되었음
- 공개방법은 청구인의 요청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대신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개여부의 결정기한을 종전 15일 이내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음
-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청구인이 열람 후에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도록 하되, 교부기간이 2월이 넘지 않도록 하였음
- 불복구제 요건을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등”으로 완화하였음
- 청구서의 기재사항에서 ‘사용목적’을 삭제함
-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삭제함

#### 나.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내용('07. 4. 05. 시행)

- 정보목록 작성시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음
-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함
- 청구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도록 함

#### 다.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주요개정 내용

- 청구정보는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지 않도록 함. 단,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동의 하에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
- 정보목록은 매월 작성 후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함
- 운영지원과는 각 실·국·본부별 기록물등록대장을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록물등록대장의 출력물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수를 1명 이상으로 확대함
- 즉시공개제도를 명문화함('09. 9. 4.)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에 따른 범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적용시 범익형량의 원칙을 신설함('09. 9. 4.)
- 심의회 개최 절차 구체화 및 외부위원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함('09. 9. 4.)
- 정보공개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자체 진단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평가 근거를 명시함('09. 9. 4.)

## 제 2 장 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

### I. 정의

####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법 제2조 제1호)

- 공공기관이 문서 등을 생산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 받았을 때에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그 대상이 됨
- 정보공개를 청구 받았을 때에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보공개를 청구 받았을 때에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존재하고 있지 않는 문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음
-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그 대상이 되므로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문서도 그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물 폐기심의회’에서 폐기대상으로 심의한 후 폐기할 계획중에 있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여부 결정시점에서 당해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의 부존재’를 들어 비공개 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가 아닌 사례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공람절차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부존재”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함(법 제2조 및 제3조)
  - 문서·도면·필름 등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
  - 열람·복사·복제할 수 없는, 즉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정보
  -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판단시점을 정보공개 청구시점이 아닌 정보공개 여부 결정시점이라고 볼 때,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므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문서는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부존재에 따른 비공개” 결정 가능)
- 정보 부존재의 유형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거나 소관기관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다만,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그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0’으로 공개처리
- 부존재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이유
  -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부존재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보공개 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정보의 충실한 보존·관리 및 검색 의무, 부존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부존재의 경우 비공개 결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현행 법률에서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외에 “정보 부존재”라는 결정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임

- 부존재 청구정보의 처리
  - 공개 청구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후 처리
-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입증책임 문제(판례)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고, 공개해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그 실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한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입증방법은 그러한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도록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이 최소한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 고의적인 ‘부존재’ 결정 처분
  - 처리부서 공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가 ‘부존재’ 한다고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적시하였다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고, 부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음

## 2. 공개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법 제2조 제2호)

- 공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열람에 의한 공개란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란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란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공개 청구된 경우 동 시스템에 결정 통지서를 등록·통지함으로써 문서통지에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기관장은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상에는 전자이미지 관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출력하여 관인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함

### 3. 정보공개대상기관(법 제2조 제3호)

#### □ 국가기관

-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 위 기관의 소속기관 등

####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09년 지정기준)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소비자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09년 지정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 4.)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으나, 기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은 시행령 제2조 제4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포함되어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

4.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 지방자치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 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 ▶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 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짐(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II. 사전정보공표제도

국민의 국정참여를 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예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밀실행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법 제7조, 영 제4조)

## 1. 공표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다만,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사전공표하기로 결정한 정보

## 2. 정보 선정시 유의사항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고려하여 판단
- 공개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 불가피한 경우란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 3. 사전정보공표의 주기·시기

- 정보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분기별), 행정정보목록(매월)
- 정보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 예) 00계획 (0월 공개 예정)
- 생산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생산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 사전정보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 4. 사전정보공표 내용

- 본부에서는 30여종의 공표대상 정보의 목록과 범위,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목록과 범위, 시기 등은 별첨의 「**법무부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을 참고하기 바람

- 통합 온나라 시스템과 홈페이지 “공표코너”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표대상 문서의 결재 완료시,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자동게시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제공정보의 성격에 따라 결재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게시되거나 자동게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속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 사전공표정보 : 공표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체화

#### 예 시

- 사업평가 결과 → ○○사업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 주요정책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의거 선정
- 정책연구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초과 용역(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 추진단계별 공개 → 계획 확정, 계획 변경, 진행과정, 결과 등

#### 5. 공표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열람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공개

- 전자과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과 같은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 사전공표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는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보의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나, 청구인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교부를 원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공개

## 6. 공표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표의 주기·시기, 공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공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표 실시
- ※ 공표방식 구분을 통한 검색편의 강화

### 예 시

-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 별도 메뉴를 구상하고 체계적으로 공개
-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항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 사전정보공표 대상
-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
  -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
  -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

- ※ 하위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표 목록상에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하여 정보획득의 편의성 제고
- ※ 주요문서에 원문공개, 정책결정과정 공개 등을 통해 사전적 정보공개를 활성화

### Ⅲ. 정보공개청구를 대비한 공공기관의 사무

#### 1. 공공기관의 의무

##### 가.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법 제6조 제1항)

- 정보의 공개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국민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존중하여 공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대법원 97누5114판결)
- 법령 제·개정 시 각종 행정운영정보가 국민에게 널리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

##### 나. 정보관리체계 정비의 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 다.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영 제16조)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의 정보공개처리 대장예의 기록·유지.  
특히 사후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필요

##### 라.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운영정보는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으로 발간하여 적극적인 국정의 홍보에 주력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노력은 물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 강구

##### 마.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정보공개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함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사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 제6조 제2항)

## 3.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 가.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법§8①)

- ※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함. 다만 정보 공개여부결정 시 문서생산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 있음

### 나. 정보목록 구성 항목

- 단위업무명칭 : 정보에 해당하는 단위업무명
  -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상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여부

#### 예 시

생산일자	번호	단위업무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2008.12.20.	운영지원과-1000	정보공개제도운영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운영지원과	홍길동	10년	공개

#### 다.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비공개대상 정보도 포함되지만,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라.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보 목록에 포함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정보이며,
-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 없음

#### 마.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은 정보생산 시점에 설정한 것으로 실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적용될 기준인 반면,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한 상황에서 청구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비교·형량의 원칙이 개입됨
-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공개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음

## 바. 기관별 정보목록에 게시 위치

- 본부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목록
-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 보호관찰기관 :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알림마당/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목록
- 소년보호기관 : 소년원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목록
- 교정기관 : 교정본부 홈페이지/ 민원사무/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목록
- 출입국기관 : 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목록

## 4. 정보공개 창구

### 가. 설치장소

- 본 부
  - 고객지원센터(과천청사 5동 1층) : 상담요원 2명 배치, 청구서 접수, 정보목록 검색,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위한 컴퓨터 비치
  - 운영지원과 기록관리실(과천청사 5동 2층) : 정보공개 전담직원 배치, 관련 업무 수행
- ※ 담당자 연락처 : 02-2110-3484, 구내 3484, 팩스 : 02-2110-3079
- 소속기관
  - 국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민원실 등에 정보공개창구 설치
  - 업무처리 절차 숙지 직원 배치, 정보목록 검색,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위한 컴퓨터 비치

- ❖ 청사 사정상 별도창구 마련이 곤란한 경우 전담부서에 창구 설치
  - ☞ 일부부서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수 설치 가능
- ❖ 민원실 또는 정보공개 총괄부서 입구에 정보공개창구 안내 표지판 부착

## 나. 비치자료 (영 제5조)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자료(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책자)
-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제3자 의견서 등 법정 서식
-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 관련 지침 등 내부규정

## 다. 업무분장

### ● 본 부

#### - 관련업무 총괄(운영지원과)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분류, 처리현황 관리
- 공표제도의 운영, 정보목록·공개여부 결정사례 공개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평가
-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지침·기준 등의 제·개정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정보공개책임관(기획조정실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교육·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담당함

#### - 각 부서 : 소관 정보 공개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불복 대응 등 실시

#### 《청구서 처리 주관부서의 결정》

공개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행정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 당해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함(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 ● 소속기관 : 본부에 준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

- 총무 또는 기록물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
- 기관 특성을 감안, 접수·처리 및 운영개선 분야로 부서 이원화 가능
- 총괄부서 내에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기록물관리·민원 등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획관련 부서 등의 장이 되며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과 같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사항을 담당함

## 라. 정보공개 처리현황 관리

### ● 정보공개 처리대장의 관리

- 청구서 접수시점에서 공개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대장에 기재

각 처리부서에서는 공개여부 결정 또는 처리기간 연장시 결정서 사본 등을 운영지원과 등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 단,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공개여부결정 또는 처리기간 연장시는 제외함

- 총괄 부서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각 부서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독려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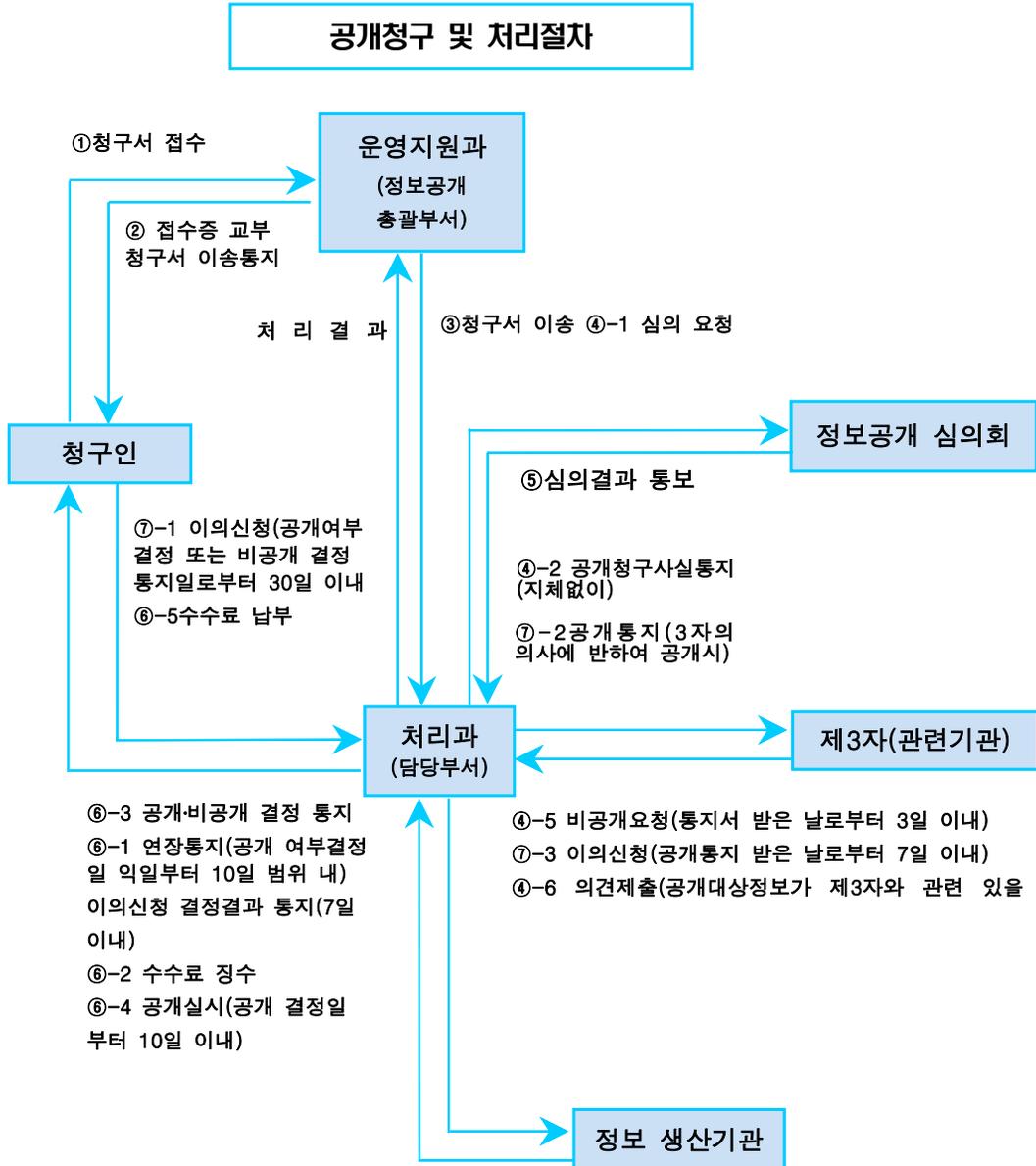
### ● 온라인·오프라인 현황관리 일원화

-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상의 ‘청구 관리’내 ‘청구서 등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대장 통합 관리
- 청구내용이 많은 경우 대표적인 내용을 기재한 후 전산화(스캔 등) 하여 참조 문서 형태로 등록
- 다만,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초기 업무상의 혼돈 방지를 위하여 기관별 유예 기간 설정후 통합 관리 필요

## IV. 정보공개청구의 진행

### 1. 정보공개 처리절차

#### 가. 처리절차 흐름도



##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 1) 청구권자 (영 제3조)

- 모든 국민 (자연인·법인, 종중·동창회 명의,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포함)
  - ※ 이해관계·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청구 가능)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 (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청구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공개청구서 : 내부종결이 아닌 민원이첩 후 반송처리

### 2) 청구서 접수 (영 제6조)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 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청구인이 접수증을 특별히 교부할 것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 있어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 우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등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술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자의 면전에서 구술하게 하여야 함 (법 제10조 제2항)

#### 《법정양식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서》

법정양식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청구로서 정보공개처리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결정통지서 대신 회신문서 발송

- 3)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고객지원센터, 인터넷, 팩스 등 창구에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당해 청구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로 분류함

**《공개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 당해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함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5조)

- 4) 청구서의 이송 : 청구정보가 피청구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 소관기관에 이송 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함 (법 제11조 제4항)

**《이송과 비공개 결정》**

- ❖ 이송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임
-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되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이송대상 청구서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를 문서로 통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

《이송의 한계》

-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기관마다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 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송에 같음  
예) 전국 시·군·구에서 각각 처리할 사항을 한 기관에 청구한 경우
-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이송에 같음

5) 청구인 확인

- **피공개권자**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필요시 그 정당한 대리인으로 확인된 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영 제15조)

《본인 확인 등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등》

- ❖ 본 인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외국인 :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일반 행정자료 사본제공 등”의 공개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여부 확인을 생략함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하며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청구인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본인 확인 실시  
예)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공개청구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영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 6)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열람

-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 담당공무원은 기능별·업무별 비공개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 7) 청구정보의 특정범위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3.28. 선고 2000두9212)

#### 8) 수수료에 대한 확정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가 상당금액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수수료의 예상금액과 납부방법 등을 설명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계속 여부를 결정케 함

#### 9)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생산 중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
  - ※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판결).
  - ※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두7087판결)

## 2. 청구서의 이송

### 가.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가 청구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으로 이송
  -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나. 이송 방법

-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소관기관 이송

### 다.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에 노력해야 하고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송에 갈음

## 3. 처리부서 지정

- 정보공개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그 청구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 처리부서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및 기록관리표준서 등 참조

## 4. 청구서 처리방법

- 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결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법 제11조)

### 《동일 청구인의 반복 공개청구서에 대한 처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정보에 대한 반복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종결처리 하여야 함

※ 3회 이상 반복 청구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호)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호)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호)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호)

### 《결정 기간의 기산점》

-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 인터넷으로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 정보공개를 실제 접수한 날이 기산점이 아님을 유의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문제》**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 ❖ 만료일 이전이라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결정통지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될 수 있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결정절차(법 제11조 및 제13조)” 없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함

-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됨)
-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생산시점에 공개로 분류된 정보의 즉시공개 대상여부》**

- ❖ 정보 생산시점에서 공개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기준이며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에게 공개할 때 공개여부를 재차 판단할 필요가 없이 즉시 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님
- ❖ 따라서, 공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여 즉시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즉시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

- **공개결정** : 청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부분공개 결정**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가리고) 공개 (법 제14조)

**《우리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우리부의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 ❖ 현재, 각 부서의 업무수행절차별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의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기록관리표준서에 포함하여 마련 ('09. 12. 시행)

-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처분시 사유서 작성·통지 방법》**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처분시 그 “사유와 근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결정처분의 통지 표준서(별첨)」에 따라 작성, 통지하여야 함

**「비공개 결정처분의 통지 표준서」 적용방법**

(법 제9조의 「비공개 근거」 별로 적용)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모델
부분 공개	제9조 제1항 제1호	모델 1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모델 2
	제9조 제1항 제6호	모델 3
비 공 개	제9조 제1항 제1호	모델 4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모델 5
	미작성, 폐기 등으로 미보유·미관리 정보	모델 6
	폐기 등으로 미보유·미관리 정보	모델 7
	청구정보 불명확 등으로 보정요청이 필요한 경우	모델 8

《적극적 행정정보의 공개》

-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라도 “공개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가능한 공개 실시
- ❖ 청구정보에 이름 등 비공개 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제외”후 적극 공개
- ❖ 청구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유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공개
-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그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0’으로 공개 처리

《정보공개심의회에 의한 공개여부의 결정》

-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음(처리과에서 총괄부서에 심의회 개최 요청)
-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다. 공개방법의 결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임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 하에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법 제15조)

※ 전면적인 전자파일 작성 작업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 수수료 절약 등의 목적으로 전자파일의 용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정보 가공공개의 허용 문제》

-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 공공기관은 고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음. 청구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비공개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 ❖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라. 공개일시의 결정**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되,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영 제12조 제1항)

- 정보 양이 과다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일시 경과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다만, 기간경과 후라도 청구인 요청시 가급적 공개가 바람직

**《불복 신청방법 안내》**

- ❖ 정보공개 관련 처분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뒤쪽에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식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

**5.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가.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 의견의 기속력》**

공개여부 결정은 당해 기관의 책임이며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방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비공개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 으로부터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 법령 등을 내용으로 함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 ❖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따라서, 청구인의 성명, 주소(상세 지번은 제외) 정도는 제3자에게 알려주되, 이와 같은 사항이 제3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도 알려줌

나. 제3자의 의견청취(영 제8조)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문서에 의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다.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됨(공개여부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함)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의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

-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시 제3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3자는 불복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따라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둬으로써 **제3자는 불복 제기와 병행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라.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 6. 정보공개 결정통지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법 §11②)
- 기간연장 사유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제3자(이해관계인) 또는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거나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

## 7. 정보의 공개

### 가.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1)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2)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3)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조)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개

**나. 공개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다. 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영 제12조 제2항)

**라. 공개일시 경과시의 종결 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음

**8. 즉시 공개****가. 즉시공개요건(법 제16조)**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나. 즉시공개처리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생산시점에 공개로 분류된 정보의 즉시공개 대상여부》

- ❖ 정보 생산시점에서 공개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기준이며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에게 공개할 때 공개여부를 재차 판단할 필요가 없이 즉시 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님
- ❖ 따라서, 공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여 즉시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즉시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다. 비공개 분류 정보의 공개 여부

정보 생산 시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도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의 정보공개청구 시점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9. 부분공개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 ※ 공개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 10. 비공개

### 가. 비공개결정통지서에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인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한시적인 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 ❖ 한시적인 비공개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와 관련됨
-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 사전 예방

#### 나.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 11. 민원 이첩처리와 반복된 청구

#### 가. 대상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나. 처리형식

- 청구인에게 민원이첩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서 대신 회신문서 발송)

#### 다.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 비공개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써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 등도 같음
- ※ 3회 이상 반복 청구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 12.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방지(형집행법 근거규정 제정)

#### 가. 대상

-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 나. 내용

-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등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할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가능

#### 다. 시행시기

- 국회 심의('09.12.) 결과에 따라 '10년중 시행 예정

## V. 수수료

### 1. 원칙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 징수 취지》

-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
- ❖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 금액으로 정한 것이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영 제17조 제1항)

- **우송료** :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함
  - 우편요금은 공개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인터넷 등 우편요금이 소요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 **수수료** : “수수료 산정기준표” 참고

### 2. 수수료의 금액

#### 가. 문서에 의한 정보공개 시의 수수료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

#### 나.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여기서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①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②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경우, ③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④ 그 밖에 추가되는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등을 말함

※ 산정된 수수료가 1000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다. 납부방법

- 우송료는 우표로 납부하고 수수료의 경우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산하단체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수입인지는 결정통지서에 부착 후 소인하여 보관하고 현금은 세입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 가능

### 3. 비용 감면

#### 가.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지침 제22조 제1항)

공개청구를 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면할 수 있음

-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도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함
-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감면 소명 자료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 교장의 확인서 등

#### 나. 감면비율

해당 수수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4.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 가. 수수료 징수 방법

- 정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 나. 수수료 징수 시기

정보 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의 경우에는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

## VI. 청구인 확인

### 1.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2.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3.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 · 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4.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영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 Ⅶ. 정보공개심의회

## 1. 구 성

### 가. 법무부 본부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6)	법무과장 · 검찰과장 · 범죄예방기획과장 · 교정기획과장 · 출입국기획과장 · 운영지원과장
외부위원(2)	변호사 1, 교수 1

※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으로, 외부위원은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나. 소속기관 :** 본부에 준하여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반드시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함

-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 단, 지소·출장소의 경우 본소 등의 심의회에서 그 사무를 관장

**다. 위촉의무 면제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지소 등은 본소의 심의회 활용)

《외부전문가의 위촉》

- ❖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

- ❖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도 가급적 배제)
- ❖ 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제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 직접적 업무 감독·관할 등의 관계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 임직원
  - ※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는 가급적 위촉대상에서 제외 ※

## 2. 운 영

### 가. 심의회의 심의 대상 (영 제11조 제2항)

-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비공개(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항
-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 나. 심의회 개최 여부 판단

-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 일상적·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 유형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 다. 심의회 소집·운영

- 총괄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적절히 활용,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처리함
  - ※ 심의회 운영은 총괄 부서에서 담당하며, 관련부서간 유기적 협조 하에 운영

## 라.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를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Ⅷ. 인터넷 정보공개

### 1. 개 요

- ▶ 위 치 :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 “정보공개” 코너
- ▶ 정보공개 코너의 구성 : 사전정보공표 /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 및 불복신청 사례 / 국회관련 정보공개 / 정보공개 Q&A

## 2. 사전정보공표

### 가. 정보공개 목록

- ▶ 본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매월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음
- ※ 소속기관 등은 정보공개창구에 매월 작성·비치하거나 대표기관 통합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코너에 게시하여야 함

정보목록이란 각급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제목·생산연도·보존기간·공개여부·업무담당자 등을 말함 (자세한 사항은 정보목록 부분 참조)

### 나. 주요정책추진과정 공개

- ▶ 주요 정책의 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우리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통로를 확대하는 코너
- ※ '07년도 :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106개 주요정책 및 재정성과 과제 등을 공개
- ※ '08년도 :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109개 주요정책 및 재정성과 과제 등을 공개
- ※ '09년도 :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96개 주요정책과제 등을 공개

### 다. 행정자료실

- ▶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법무행정에 관한 주요정책자료, 예산집행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코너
- 우리부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30여종의 공표대상 정보의 목록과 범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 ※ 구체적인 공표대상정보의 목록과 범위, 시기 등은 「법무부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을 참고 바람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공표대상 문서의 전자결재 완료시, 결재 문서의 원문그대로 홈페이지에 자동게시 되도록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코너” 와 연계되어 있음

## 《법 제7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라. 업무추진비

- 분기별 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게시
- 소속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주기적 공개 필요

## 3. 정보공개 청구

▶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코너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공개 결정된 정보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용안내
- ※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청구인 및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이의신청 및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제도 이용 안내서 내려받기 등
- ※ 관련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
- ※ 실국별 정보공개 담당자 안내
- ※ 정보공개 청구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
- ※ 인터넷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방법은 서면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공개 결정 절차, 통지방법 등과 동일하며 인터넷으로 공개정보를 받으시는 경우 우편료는 납부하지 않음

## 4. 공개여부 및 불복신청 사례 코너

- ▶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도모와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해제고 등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 정보공개여부 결정사례와 불복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공
- 공개여부 결정사례 : 청구빈도가 높거나 주요 청구 정보명, 공개·비공개 등 결정구분, 비공개 사유 및 근거, 소관부서, 반기별(1·7월) 게시

- 불복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사례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 불복신청 정보명, 결정 또는 판결내용 및 이유와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재처분 등 이행 결과를 반기별(1·7월) 게시

본부 각 부서 및 각급 소속기관에서는 공개청구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앞서 「동 사례 코너」를 참조하여 공개여부 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5. 국회관련 정보공개

- ▶ 국회자료제출 현황과 그 주요내용, 기타 법무정책 관련 주요이슈 등을 공개
- 주요정책자료
  - ※ 국회 자료제출 현황과 그 주요 내용, 기타 법무정책 관련 이슈 등을 공개
- 법령 제·개정
  - ※ 법무부 소관 법령의 국회에서의 제·개정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공개
- 예산
  - ※ 국회 예산제출 현황, 예산안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공개
- 국회의 정책 제언
  - ※ 국정감사 등을 통한 국회의 정책제언 내용과 그 조치현황 등을 공개. 예산 제출 현황, 예산안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공개
- 국회현장
  - ※ 정기(임시)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질의·답변 현황 등 국회진행상황을 공개

## 6. 정보공개 Q&A

- ▶ 우리 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며 궁금한 사항을 성심성의껏 답변함

## IX. 제도운영 FAQ

### 1. 사전공표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규정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의 해석상 “아직 공표(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모든 국민(교정시설 수용자 포함)은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인터넷 검색 등) 손쉽게 공개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음
- 다만,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개정보의 위치 또는 열람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정보공개법 제16조에 의한 “즉시공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2. 정보를 일괄 청구(정보 불특정)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출력물을 교부하는 것임
- 정보공개법의 규정 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그 실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한정되어 있음
- 청구인은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도록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서울행법 2004. 4.28. 선고 2000구 4179 판결)

### 3. 영수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매출전표·영수증 등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써 보호받아야 함(대법원 2003. 3.11. 선고 2001두 6425 판결)

#### 4.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

-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되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 결정

#### 5. 이송의 한계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송에 갈음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이송에 갈음

#### 6.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로서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7. 반복 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3회 이상) 청구의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8. 청구정보의 양이 과다할 때

- 청구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 완료)

## 9. 공개 일시 경과시 종결 처리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수수료 미납 등)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09.12. 형집행법 개정결과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10. 즉시 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나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이미 여러번 공개로 결정·통지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 청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절차(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교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제도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

## 11. 정보공개시 정보가공의 허용 문제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될 수 있음



# 제 3 장 비공개 대상정보

## I. 개관

### 1. 개요

- ▶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적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범죄의 예방, 수사, 형의 집행, 교정 등 일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 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6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제7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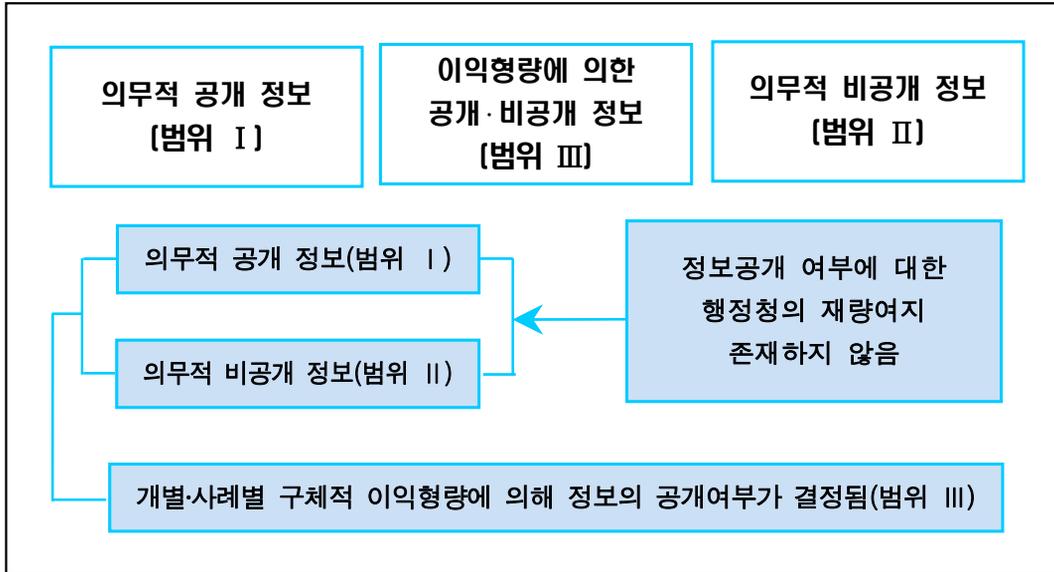
## 2.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기준

-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축소 : 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행정편의적 비공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 법무부에서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우리 부 성격에 맞게 30여종의 비공개 대상 업무명과 그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음

### 《우리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우리부의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 ❖ 현재, 각 부서의 업무수행절차별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의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기록관리표준서에 포함하여 제작('09. 12. 시행)

가.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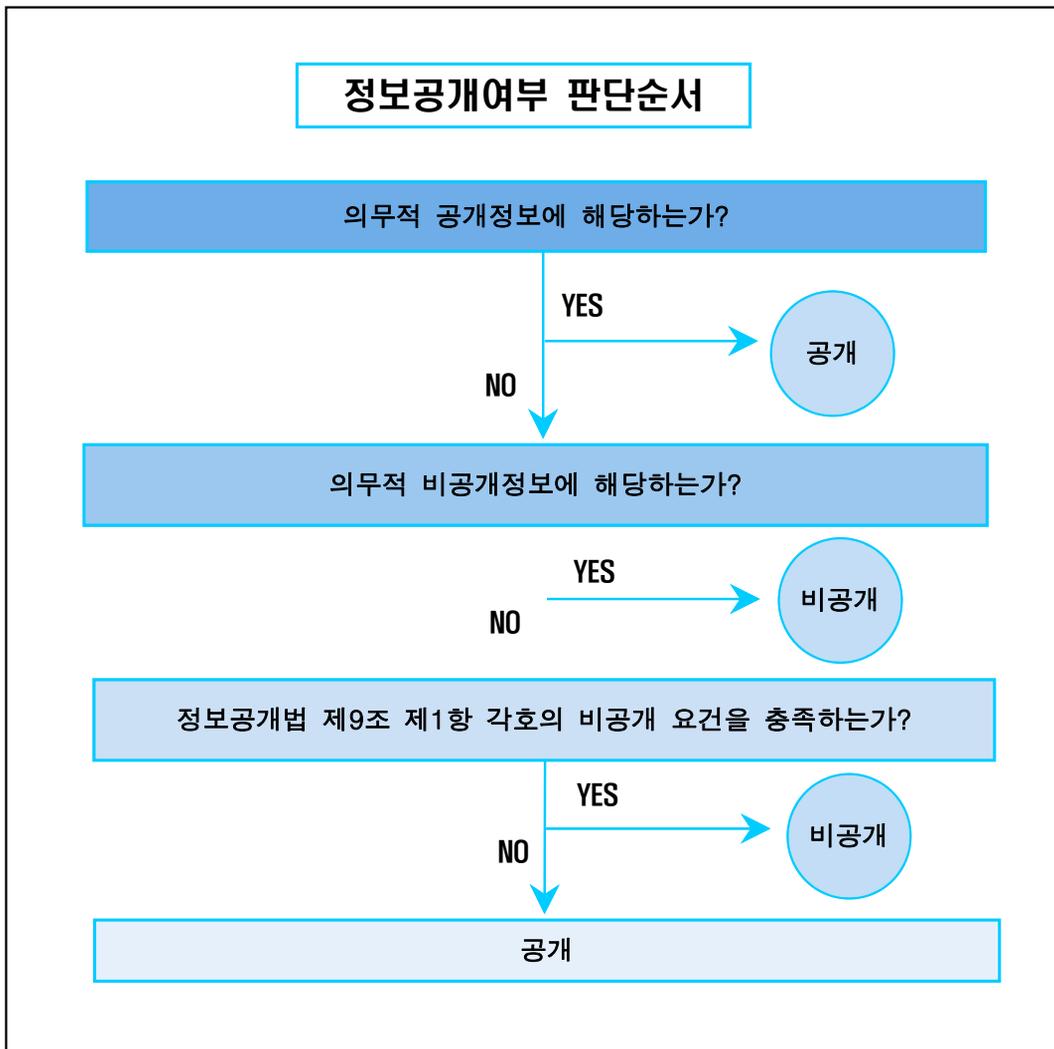
나. 범위 I, II, III에 대한 설명

1) 의무적 공개정보(범위 I)

- ①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하여 공표된 정보
-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단서 규정에 규정된 정보
-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 정보. 예,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의해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
- ④ 기타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 예컨대, 소송수행 중 이미 법원 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에 대해 그 준부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그 외에 적법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정보가 일부 외부에 유출된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된 정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하여야 할 실제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2) 의무적 비공개정보(범위Ⅱ) : 예컨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밀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비공개대상으로서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정보)

3) 이익형량에 의한 비공개정보(범위Ⅲ) : 그 외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관계된 정보



## II.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개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판결)

####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형식적’ 비밀 지정이 있을 것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정보공개제도를 통해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비밀’이라 함은 형식적 비밀지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형식적인 비밀지정은 법률규정 자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지정과 관련하여서 우리 법은 그 명령이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법규 명령 중에도 총리령, 부령과 행정규칙은 그러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이에 속한다.

행정규칙은, 실무에서 훈령, 통첩, 예규, 지침 등으로 불리면서 주로 행정조직 내부관계에서 조직, 업무처리절차, 활동기준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의미하는데,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나. 실질적 비밀로서 가치가 있을 것

비밀과 관련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참조하고,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원판결들이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가 비공개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비밀지정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정보를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족되어져 소위 “실질비”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 7171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정한 정보가 실질적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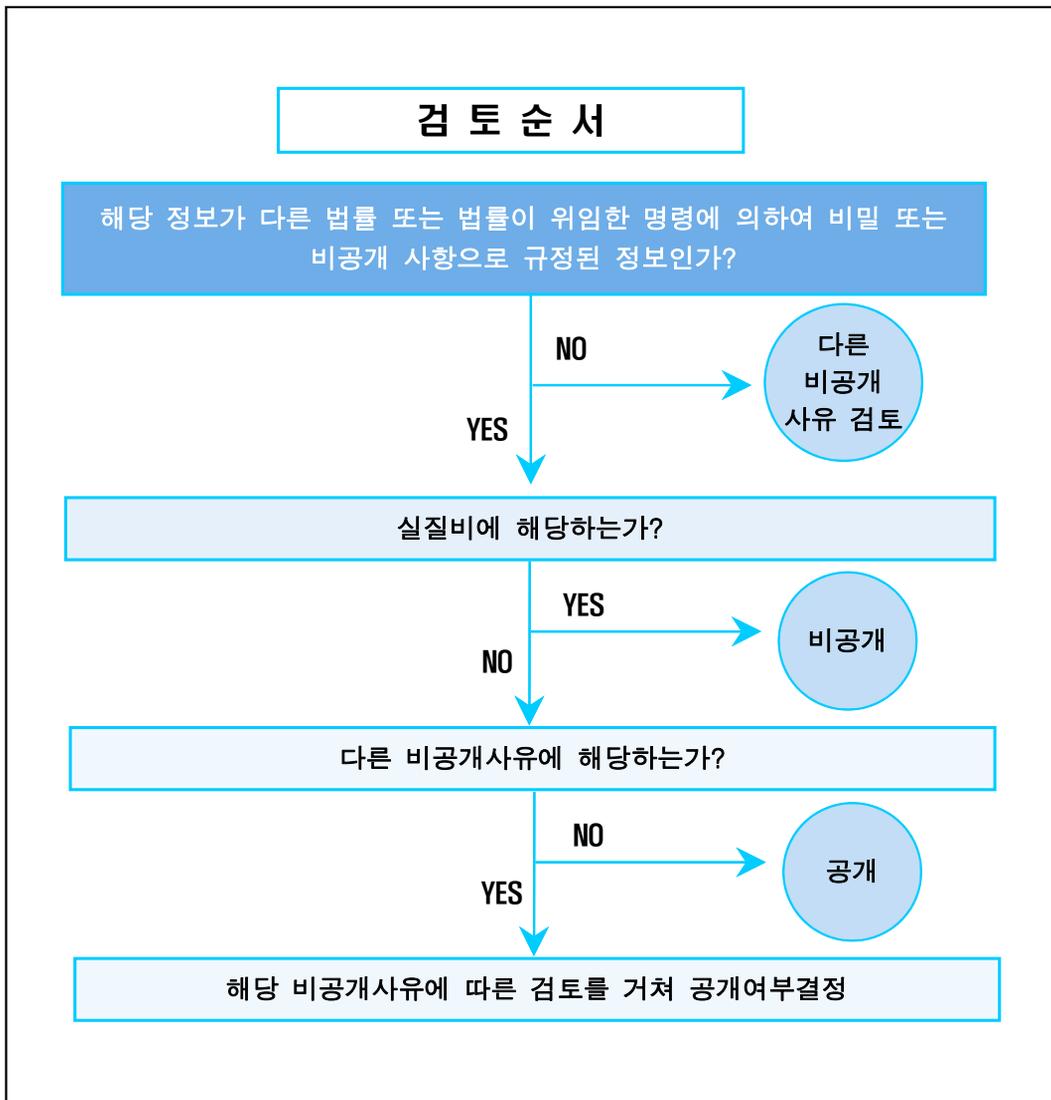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 상당성

당해 정보가 위법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 온 경우 일단 그 정보가 형식적으로 비밀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형식적으로 비밀지정이 되어 있다면(형식적 비밀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 제4호의

비공개사유 해당여부 검토) 다시 실질적 비밀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정보 공개담당부서에서는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법률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에게 문의를 하여 그에 기초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문의와 답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처리하고 추후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관련 서면을 보존할 것.



##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접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법률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군사비밀(군사기밀보호법)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7조의2)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목적 이외의 사용  
(통계법 제30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발명의 내용(발명진흥법 제19조)

라.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무원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징계위원들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공무원징계령 제21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 감사에 중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비밀관리, 보안업무	비밀문서	각 부서
감 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감찰담당관실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공공기관이 취득한 문서로서 개별법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의무와 연계 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06.5.23. 선고 2005구합33241) ⇒ 공개

비록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및 예산내역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위 해당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소재지·정원)와 제12조(예산)에 의하여 “법률”로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비공개되어야 함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의하여 III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쌀 관세화유에 연장을 위한 협상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을 “실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467 판결) ⇒ 공개

외국과 쌀관세화유예기간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된 사항을 수정이행 계획서에 기재하였고, 그 문서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I급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 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 그 정보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할 수 없음(※ 그러나 이 사례에서 판례는 해당 정보의 실질비성을 부인하였음에도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성격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정보공개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과세정보의 공개여부 (00고등법원 2002누19086 판결) ⇒ 비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청구 외 00연맹이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임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736 판결) ⇒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법령(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연구목적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 비공개

각 학교를 대상으로 비공개를 조건으로 하여 표집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차후 자료수집업무에 지장이 예상되고, 또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전수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자료로 무분별하게 인용되어 학부모 등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해당 정보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임

-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한 회의자료의 공개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4. 25. 선고 2005구합28133 판결) ⇒ 비공개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본문에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의 제호에 의한 비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비공개 사유 안됨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여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훈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 해당되지 않음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비공개처분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 잘못된 것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도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 비공개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 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함

○ 조합에 부과된 과세정보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6두18232 판결) ⇒ 비공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항 단서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원고가 비록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증여세와는 세목을 달리하는 종합토지세가 조합 등에 부과된다는 점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원고를 '타인'이 아닌 직접 당사자나 납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수도 없음

○ 행정규칙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 공개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같은 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검찰보존사무규칙(1996. 5. 1. 법무부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것)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  
(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판결) ⇒ 공개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인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다른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방어권 행사, 알권리의 보장 등을 위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고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록이 현출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한 판례이다.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또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7호)'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청 내부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준칙을 하위 법규인 법무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검찰청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 ⇒ 공개

법인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3조가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으로 공개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비공개 사유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또는 위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위 행정규칙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비밀로 지정한 것은 위 제1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이나 이에 근거한 구 보안업무규정(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해서가 아니라, 대통령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비밀로 분류되어 있던 정보를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이미 공개 상영한 바가 있는 경우 그 정보의 비밀로서의 가치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1997.11.20. 선고 97구13797) ⇒ 비공개

안전기획부는 1996. 6. 24. 국가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을 안전기획부의 청사 내로 초청하여 II급 비밀에 속하는 ‘최근북한정세평가’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와 III급 비밀에 속하는 ‘북한대남공작 및 국내 좌익 활동실태’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및 슬라이드를 상영하였다가 그 중 II급 비밀은 1997. 4. 30., III급 비밀은 1996. 9. 23. 향후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모두 파기하였다. 파기되지 않은 슬라이드와 시나리오는 현재 각각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다른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비디오테이프는 소각되어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므로 그 공개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슬라이드와 시나리오는 대부분이 파기되어 현재 그 일부만이 다른 형태로 남아 있는데 앞에서 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각각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법연수생을 상대로 위 시나리오와 슬라이드를 상영할 때 안전기획부의 청사 내에서 상영함으로써 비밀의 보안유지를 꾀하고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국내 좌익 활동실태에 관한 자료 등은 만일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면 안전기획부가 수집한 정보의 출처와 최근 북한의 군사지역 등에 관한 사진, 북한의 대남공작능력, 밀입북한 한총련 학생의 북한지역에서의 활동, 피고가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의 내용, 입수 경위 등이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바 이러한 정보의 내용은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 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으로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이와 같은 비밀의 취급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사면관련정보

(서울고등법원 2001.9.13. 선고 2000누15783 판결) ⇒ 부분공개

사면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경우 이러한 우려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의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에 불과한 이 사건 사면관련 정보를 굳이 공개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사면권의 행사가 국민들의 법감정에 합당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됨으로써 초래되는 역기능에 관하여 연구·조사하고, 입법청원 및 행정감시, 시민운동 등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는 점은 굳이 이 사건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시 공개되는 사면대상자 명단과 그들에 대한 사면 이유 등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 Ⅲ.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개 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12629 판결)

## 가. 대상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일 것

제2호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등장하는 법률용어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 등 법규범의 효력유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영역도 포함하는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북한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방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글로벌화로부터 발생하는 제 문제, 지구환경문제, 인구폭발, 제3세계의 기아, 빈곤, 난민문제, 지구분쟁, 핵확산, 국제테러리즘, 과격한 종교운동, 국제전염병의 만연 등의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 등도 포섭하는 극히 광범위하고 다의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방’이란 대외적인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국군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된 정보, 기타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민간경제시설에 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통일’은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지칭한다. ‘통일에 관한 정보’란 통일을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 또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에 관한 정보 등이 직접적으로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러한 정보가 아니지만 공개되는 경우 북한정부와의 통일을 위한 교섭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외교’란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교제, 교섭 등을 통해 상호관계를 형성해 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란 직접적으로는 외국정부와의 조약, 협정 등의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의 문서들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도 외국정부와 관계된 정보(예, 외국정부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자료 등)들로서 공개되는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 나. 대상정보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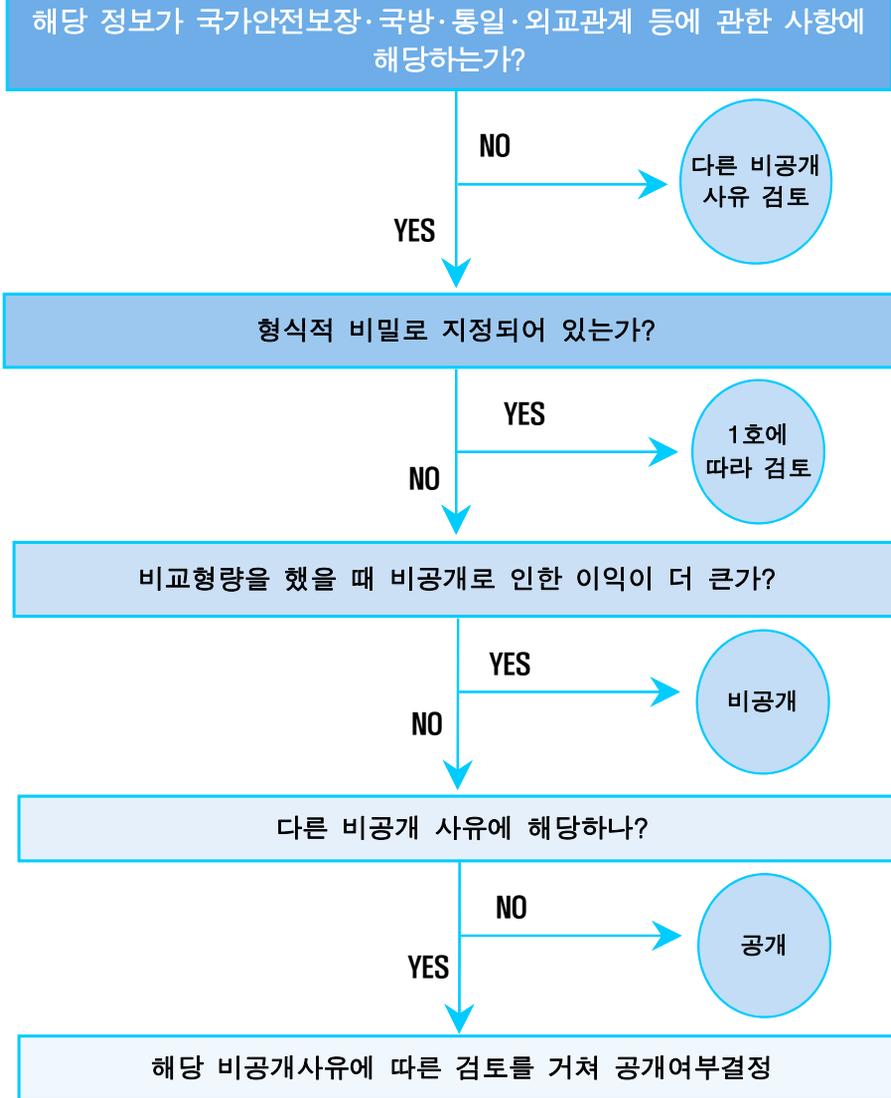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비교·형량에 있어서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이익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법률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에게 문의를 하여 이에 따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그 문의와 답변은 반드시 서면으로 행하고, 정보공개업무담당부서는 관련문서를 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다. 고려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비밀의 남용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국가안전보장정책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 국민이 국가안전보장정책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행하고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러한 것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고 그 수단이 정보공개법이 된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를 이유로 정보공개 예외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유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요건과 절차를 설정함이 요구된다는 점이 굳이 이 사건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시 공개되는 사면대상자 명단과 그들에 대한 사면 이유 등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검 토 순 서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기 획	법무시설기준규칙	동 지침	시설관리 담당관실
교 정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교정시설별 수용자 분류 수용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출입국	난민인정 관련 업무	관련 문서 (관련지침은 공개대상)	국적난민과
	사증발급 관련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사회통합과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 200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  
(국무총리행정심판 2005-01186) ⇒ 비공개

200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 및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에 수·발신된 문서 중 그 외 1건의 문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II급 비밀로 되어 있고,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에 수·발신된 문서 중 “미 패트리어트 전력 조기 전개 협조 의뢰” 문서는 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임

○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의 제2호에 의한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비공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 법무부의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임시상륙허가 절차’의 지침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7두12927 판결) ⇒ 공개

난민임시상륙허가절차와 관련된 정보인 난민임시상륙허가에 관한 규정은 영해 및 영토의 출입허가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개된다 하여 테러범과 같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고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난민인정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악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하여야 하는 점, 난민인정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난민인정제도의 민주적 통제는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점,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도 볼 수 없음

○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 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5구합20467 판결) ⇒ 비공개

통상교섭에 관한 합의사항의 전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공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라고 해석됨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대법원 2004.03.18 선고 2001두8254판결) ⇒ 비공개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지방검찰청 등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라고 하여도 그 함의(含意)를 통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여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당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국가안전보장을 형사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상의 형벌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은 헌법재판소도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공개요구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전국의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그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러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또는 제3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한일회담문서(외교관련문서) 중 일부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 비공개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이다. 외국과 관계된 정보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정보가 우리 사회 자체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만 검토해서는 안 되고 문제의 정보공개로 인해 상대국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국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국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온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공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상대국에서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외국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온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이미 상당히 오래 전의 정보로서(예, 30년) 비공개를 할 실익이 적고 또 양국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외교관계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 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이, 예상되는 외교관계에서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과 관계된 정보(예, 수사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로 인하여 상대국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인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수사 관련자료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판결) ⇒ 비공개

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KAL 858 비행기 폭파사고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관련자료와 우리나라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정보가 아직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의 인적사항, 공작활동 및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터폴 등 외국수사기관에서 일본 내 북한공작원과 관련한 자료에 관하여 무기한 비밀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에 대한 일본 사법당국의 수사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일 사법당국의 긴밀한 수사공조관계 및 상호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IV.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개 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이 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켜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비공개정보가 법정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호에서 비공개사유로 특정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다수 국민의 이익인 공익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폭넓은 비공개에 대한 재량권을 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수사·재판과도 연관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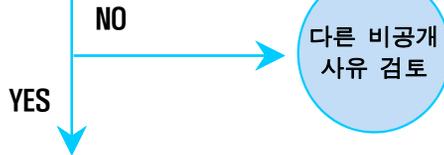
때문에 제3호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4호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제3호는 또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제6호와도 연관이 있지만 제6호가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정보의 공개에 따른 개인의 사적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제3호는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제3호는 또 “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7호와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주체적인 측면에서도 제3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자(死者)의 경우에는 적격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자(死者)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고 있으므로 역시 비교·형량을 하여야 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대상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이익인가, 재산에 관한 이익인가 그리고 우려의 현실화 정도가 높은가 낮은가, 또 반대로 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의 경우에는 그 위협의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개연성만 확보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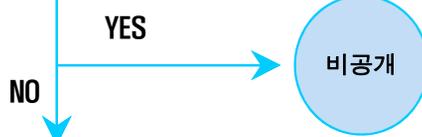
※ 제3호에 의한 비공개여부결정에 있어서는 다른 비공개사유와의 관계설정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다른 비공개사유와 마찬가지로 공개에 따른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의 비교·형량이 중요한데, 후자의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해당 기관의 법률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에게 문의를 하여 그에 기초하여 공개·비공개결정을 하고, 추후의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하여 질문서와 답변서는 서면형태로 보관할 것

### 검 토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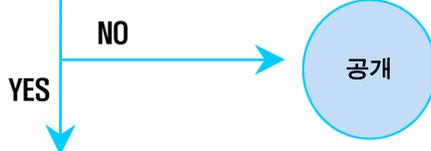
자연인인 국민의 개인적인 생명·신체·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가?  
(개인의 재산이 사업과 관계된 경우에는 제7호 문제이므로 제외)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는가?  
(공개와 비공개 필요성 비교·형량하여야 함)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해당 비공개 사유에 따른 검토를 거쳐서 공개여부 결정

##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검 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공안기획과
검 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공안기획과
출입국	출국금지·정지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입국금지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입국규제 실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판결) ⇒ 비공개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 비공개

입국관련 문제점 시정을 위한 업무지시공문, 입국심사제도개선 시행공문, 선박 업무 및 해상밀입국 방지관련 접수공문·업무지시공문, 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 계획서, 개최공문, 회의자료, 회의록,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에 관한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규제자 명단, 입국규제결정서 등에 관한

자료가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 비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호 해당사항이 됨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될 수 있음

○ 총기허가현황·위탁관리와 관련한 상세한 현황정보의 공개여부 ⇒ 비공개

총기허가 및 폐기에 관한 상세자료나 총기류에 관한 위탁관리관련 세부자료는 공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 시도가 행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비공개하여야 함

○ 자신이 고소인인 강간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의 비공개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공개

원고가 형사소송의 피고인인 소외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정보가 되지 않음

○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 ⇒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국가보안법상 범죄자를 체포·처벌하는 데 도움을 준 자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 관련 청구서와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보안유공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되어야 함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공개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V.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개 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판결)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단계에서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건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 가. 대상정보의 적합성

이 규정에 의해 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정보가 ①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②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 나.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시가 아니라 문서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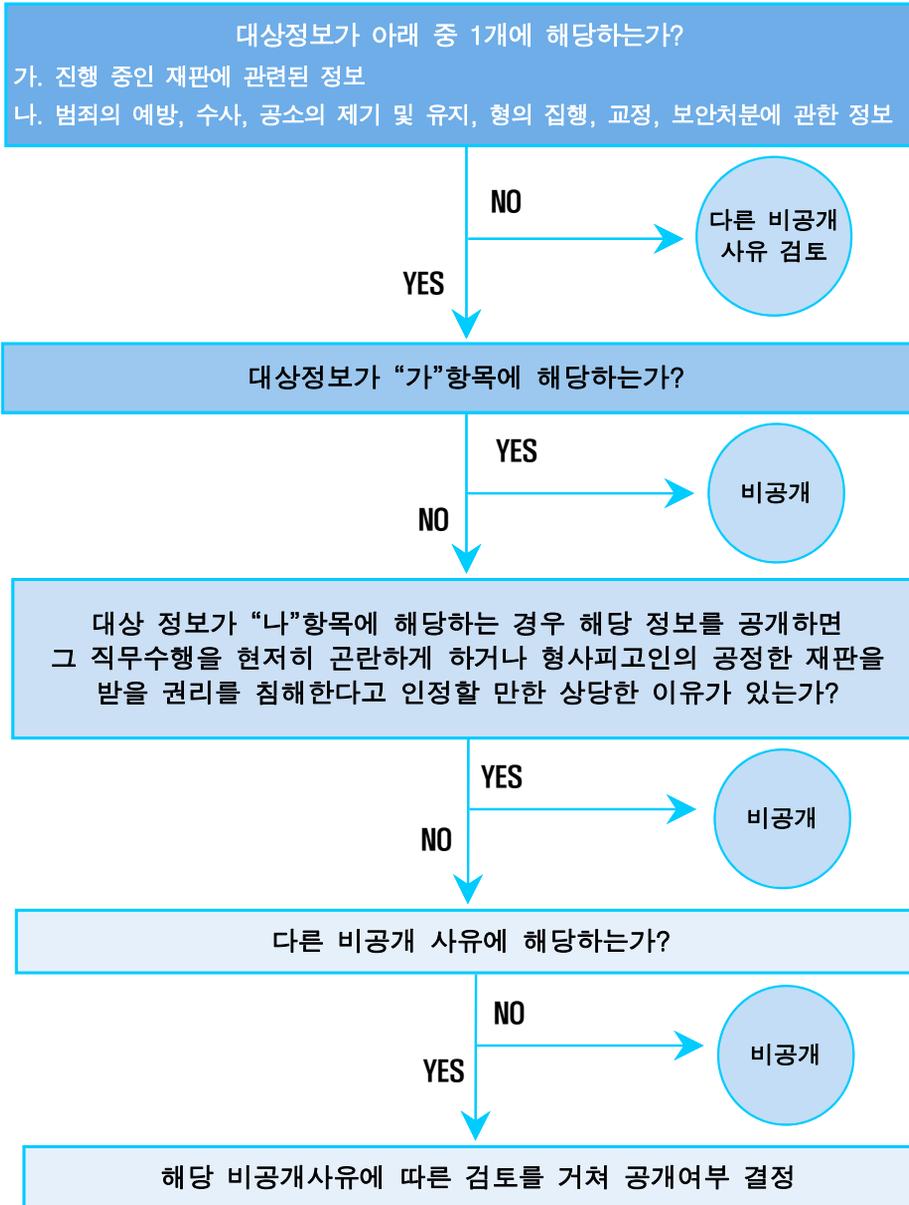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독립원칙” 때문에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와 달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이처럼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비공개 필요성의) 일방적 측면이 인정되면 바로 해당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하고,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보가 그러한 유형의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가 정당화되어 진다. 이는 비교·형량원칙을 조문화해 둔 것으로 내용면에서는 제1호에서 말하는 실질비여부의 판단과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형량원칙 내지는 실질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판결).

※ 제4호에 의한 비공개여부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비교형량 내지는 실질비여부 판단에 있어서 정보공개담당공무원에게 우월적 이익, 실질비 해당여부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비공개사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법률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에게 문의를 하여 그에 기초하여 공개·비공개결정을 하고, 추후의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하여 질문서와 답변서는 서면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검 토 순 서



##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관련)

소관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검 찰		형사·공안사건의 범죄예방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의견 수립·조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범죄예방 책		사회보호위원회심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법제과
		판결전 조사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관찰과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관찰과
		분류처우심사 등 수용처분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교과·생활성적 등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소년 외부행사 감호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위탁 소년이송 및 호송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소년 임시퇴원 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교 정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특이수용자 지정 및 처우 관련 문서	보안과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항	접견부 등 관련 문서	보안과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계구에 관한 사항	관련 지침	보안과
		분류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분류심사 및 가석방심사 관련 문서	분류심사과
출입국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	관련 지침	체류관리과
		출입국관련 사범 처리 업무	관련 문서	체류조사과
		동포 체류관리 업무	관련 문서	사회통합과

###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 특별관리대상자의 수용·관리계획  
(국무총리행정심판 2005-08300) ⇒ 비공개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 등  
(국무총리행정심판 2005-0189)⇒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정보는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은 I급 비밀·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건수 및 조치내용 공개여부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1588 판결) ⇒ 비공개

‘00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건수 및 조치내용’에 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수용 조치내용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하더라도 조치내용의 주요부분을 통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본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 신분장부(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2005구합3029 판결) ⇒ 비공개

원고의 신상관계 자료 일체(신분장부)는 교정기관의 고유업무인 교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수용자의 개별신상과 각종 처우 등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과 판단을 기록한 문서인 사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 속에는 원고의 재판 및 형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법·교정 공무원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평가 및 그 방법 등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문서는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

○ 청구인의 수용자건강기록부 내용중 구치소 의무관이 외부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내용과 그 자문에 응한 외부전문의의 이름의 공개여부  
(인천지방법원 2006구합3920 판결) ⇒ 비공개

외부전문의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공개여부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409 판결) ⇒ 공개

위 수사보고서에는 원고와 상피의자인 ○○○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참고인 ○○○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참고인 ○○○의 진술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관급도서 사용내역서 공개여부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1987 판결) ⇒ 공개

‘관급도서사용내역서’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관용도서대여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일응 인정되고, 위 관용도서대여부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다만, 수용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교정행정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그 사본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개대상 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수용동태기록(문제수용자 생활기록부) 공개여부  
(울산지방법원 2004구합2664 판결) ⇒ 비공개

수용동태기록(문제수용자 생활기록부)은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동태 및 처우상 유의사항, 접견 및 서신 등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 출정 및 이송시의 계호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될 경우 문제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문제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

○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 학교일지, 성과급 공개여부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판결)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대 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에 따라,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의 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01년 학교일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관련 행정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해당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판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판결) ⇒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이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교도소직원회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

○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비공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 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

○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진행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소송은 보상금지급에 관련된 소송으로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 공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판결 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각서제출 등을 위 면허 조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 어민들과의 쟁송가능성 등에 변호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회신을 한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피고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준공인가 후의 쟁송에 관하여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은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정보원이나 정보수집기법과 관련된 정보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다.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케 하여야 한다. 법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 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수용자 이송지침서에 관한 정보  
(춘천지법 2002구합1784호, 서울고등법원 2003누6438호) ⇒ 비공개

법무부 교정국이 2002. 5. 4. 교정기관에 하달한 환자(수용자) 이송지침서에 관한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전북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및 원고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 모임에 대한 각 단체자료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 ⇒ 공개

정보공개청구권의 성질 및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 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위 단체자료들은 원고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 원고 전북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가 일정기간 동안 행한 집회 및 파업 상황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여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자별로 서술하고, 위 각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구성 사실을 부수적으로 첨가·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은 언론 등에 이미 발표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정보수집과정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은밀한 정보원이 존재한다거나 특수한 정보수집경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향후 위 원고들의 집회 및 파업이 지능화 되고 은밀해져 그에 대한 피고의 정보수집활동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만약 위 단체 자료들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부분적

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위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단체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VI.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개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가. 행정운영정보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 중 공개하는 것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을 입법화 한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이다.

나열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로서, 공개하면 그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예시”로 이해하여야 한다. 법문을 규정함에 있어서 「감사 . . . . . 등」 이라고 함으로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개별적 업무가 포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영역에서 비공개로 되는 것은 행정운영정보 중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다른 비공개사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형량원칙”을 조문화 한 것으로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비공개로 인한 이익이 현저히 클 때에만 비공개를 하라는 의미이다.

- ※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정보공개담당공무원에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비공개사유에서와 동일하게 해당 기관의 법률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에게 문의를 하여 그에 기초하여 처리할 것

#### 나. 의사형성과정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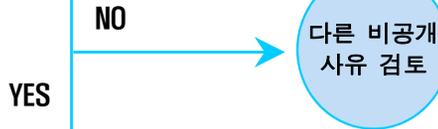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적절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신중한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정보란 좁은 의미로는 현재 회의·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 내부검토회정보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라고 하고 있으므로 회의·검토가 종료되어 해당 사항이 집행된 경우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운영정보와 마찬가지로 의사형성과정정보도 정보공개가 행정기관의 적절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염려의 유무 및 정도를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이익형량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비공개사항의 참고사항을 검토할 것. 그리고 의사형성과정정보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의사결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비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형성과정중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의사형성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비공개결정에서 명시해 주고, 또한 추가적인 공개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형성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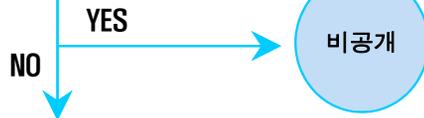
### 검 토 순 서

대상정보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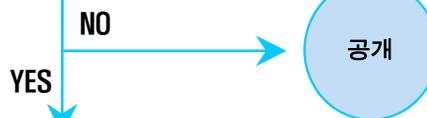
- 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사항에 있는 사항
- 다. 가, 또는 나. 와 유사한 정보로 공개하면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비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교우위에 있는가?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해당 비공개사유에 따른 검토를 거쳐 공개여부결정

##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소관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중에 있는 문서	관련 문서	각 부서
		승진, 전보 등 인사계획	관련 문서	각 부서
		다면평가	관련 문서	각 부서
		근무성적평정	관련 문서	각 부서
법 무		법무자문위원회 및 산하특별분과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무심의관실
		법령안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자료	관련 문서	법무심의관실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공증인징계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무과
		공증인 서류검열 결과	관련 문서	법무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1·2차 시험과목별 성적분포, 과락율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2차 시험전체 성적분포, 과락율,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3차 채점내역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감 사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지시	관련 문서	감사담당관실
		불시 감찰·조사계획	관련 계획	감사담당관실
출입국		귀화, 국적회복 및 결정이유	관련 문서	국적난민과

###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 ○ 이사회 회의록과 같은 합의제기관 관련정보의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추어 볼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 운영정보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위 조항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3조에 규정된 정보공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는 언제나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고, 이사회 회의록과 같이 이른바 합의제기관 관련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일반적인 행정운영정보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의 합의제기관 관련정보가 '의사결정과정 정보'로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당해 합의제기관의 성격, 합의제기관이 작성한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공개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한국방송공사 회의록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비공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신청 대상인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을 이미 허용한 이상 공개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회 회의록의 특정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개로 침해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한국방송공사에 3년간의 이사회 회의록을 빠짐없이 사본 교부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

○ 치과국가시험문제(문제은행방식) 공개여부  
(대법원 2007. 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 비공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 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언자명단, 회의록(공개)의 공개여부  
(춘천지방법 2004구합1207 판결) ⇒ 부분공개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공개로 인하여 심의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축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외부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들이 각종 사회단체의 이른바 로비 등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함이 타당(공개)

◎ 위원회의 심의회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 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언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비공개)

- ◎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진행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회의내용 부분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공개)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공개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본 판례는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서도 공개로 판단된 사항임)

○ 사법시험 2차 답안지 공개여부(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 판결) ⇒ 공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문서의 공개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 2003-01657) ⇒ 부분공개

- ◎ 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재심민원검토결과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는 공개될 경우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고충민원 기록서, 재심에 대한 고충민원기록서, 고충민원요약서, 고충민원 안전상정요구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성명, 민원 제목, 주심 위원 또는 조사관 성명 등이 주내용으로 공개되어도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함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공개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 판결) ⇒ 비공개

정부는 미국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작성·교환한 이 사건 협정문 초안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정보이고, 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이해관계집단의 대립·갈등으로 협상이 당초 전략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한·미FTA 체결을 위한 업무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공개여부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820 판결) ⇒ 비공개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개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배점내역의 주요부분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공개여부**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820 판결) ⇒ 비공개(제5호 및 제6호)

회의록 내용중 자유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나아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중 자유토론 부분까지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예산안 작성 시 참고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국별 예산요구서**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공개

위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인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공개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 행정청이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행정청이 정보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각 실·과장의 예산에 대한 의견제진 경색, 주민의 사업편성 착오,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 각 단체 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침해한 이익 갈등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 최종결론이 난지 30년이 지난 외교 관련문서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판결) ⇒ 공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가 한일회담의 최종 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라 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할 법률상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는 없다(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최종결론이 난지 30여년이 경과한 이 사건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3. 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발언자의 인적 사항부분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판결) ⇒ 비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 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선정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선고 2001구15787판결) ⇒ 공개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선정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연구교수 선정 등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법무사 제2차시험 답안지  
(서울행법 2001. 4. 27. 선고 2000구39823판결) ⇒ 비공개

법무사 제2차시험 답안지에는 각 문항별·채점자별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평가기준과 그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결국 평가자의 전문성과 양심의 신뢰라는 논술형 시험의 대전제는 무너지게 되고, 아울러 전문가들도 주관식 시험의 출제와 평가를 맡기 꺼려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논술형 시험의 시험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물류관리사 시험답안지

(서울행법 1999. 10. 15. 선고 99구7004판결) ⇒ 비공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시험의 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사실상 재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비교적 전문적인 4과목만을 수험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류관리사 시험에 있어서는 결국 수년이 경과할 경우 이미 축적해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상대적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수험생의 변별력 평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포기하고 직접 출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으며,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범위도 점차 좁아져 문제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문제은행 출제방식이나 직접출제방식 모두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출제자 또는 선정자에게 가하여질 비난과 출제된 문제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물류관리 전문가들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변별력이 있고 완성도가 높은 문제보다는 기계적인 암기 등으로 쉽게 해결되어 비난과 오류의 소지가 없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하거나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 1회의 선택형 시험문제와 일부 기술형 시험문제만으로 그 합격자를 결정하는 물류관리사 시험에 있어서는 수험생들이 공개된 기출문제의 암기에 매달려 전문영역에 대한 폭넓은 공부를 소홀히 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관리사의 자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에는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을 위한 물류관리사 선발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는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지식과 실무능력 등을 검정하기 위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본령을 훼손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학교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국무총리 행심위 2002. 3. 4. 의결 02-00004) ⇒ 비공개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학교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고궁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공고관련 자료 중 채점표**  
(국무총리 행심위 2002. 12. 9. 의결 02-05605) ⇒ 공개

문화재청이 일간신문에 공고한 고궁경관조명계획 현상공모공고관련 자료 중 채점표는 공모에 응모한 업체 6개 팀을 익명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2차 투표를 통하여 각 2팀씩 모두 4팀을 탈락시키고, 남은 2팀에 대하여는 당선팀을 선택하는 3차 투표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각 심사위원은 각 팀에 대한 채점을 마음속으로 하고 그 결과만 무기명 투표로 나타내고 있어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채점을 하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채점기준표는 고궁경관조명 현상공모 응모작품 심사계획(안)이 있는 심사기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사위원이 각 업체에 대해 채점할 경우 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들 정보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된다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의과대학에서 유급대상자의 커트라인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성적사정회의자료**  
(국무총리 행심위 1999. 7. 9. 의결 99-3662) ⇒ 비공개

의과대학에서 유급대상자의 커트라인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성적사정회의자료는 이를 공개할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유급대상자의 커트라인 등을 정한 교수 개인의 공정한 의견개진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지적조사측량과 관련된 의견서 공개청구  
(국무총리 행심위 1998. 8. 14. 의결 98-2880) ⇒ 공개

서울특별시시장의 의견서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측량적부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심의·의결이 있기 전에 관계 행정청이 제시한 의견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지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다.

○ 변리사 2차시험의 채점위원별 채점결과  
(국무총리 행심위 1998. 1. 23. 의결 97-7810) ⇒ 비공개

변리사 2차시험의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공개요구로 시험관장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채점결과에 대한 잦은 시비로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  
(국무총리 행심위 1999. 9. 6. 의결 99-4609) ⇒ 비공개

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에는 피청구인의 건물선정, 심의위원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건물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현재 추진 중인 장외사업소에 대한 위치, 건물명, 임대료 책정금액 및 향후 개설 예정지역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Ⅶ.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개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12629 판결)

#### 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이다.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다.

####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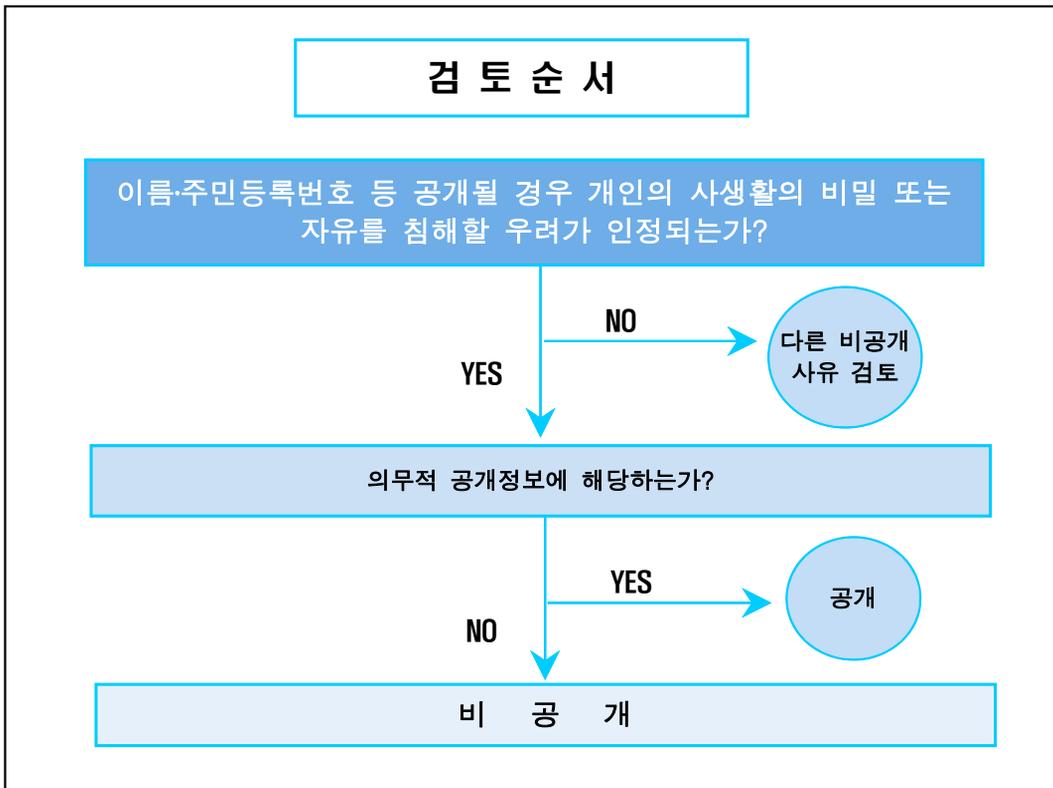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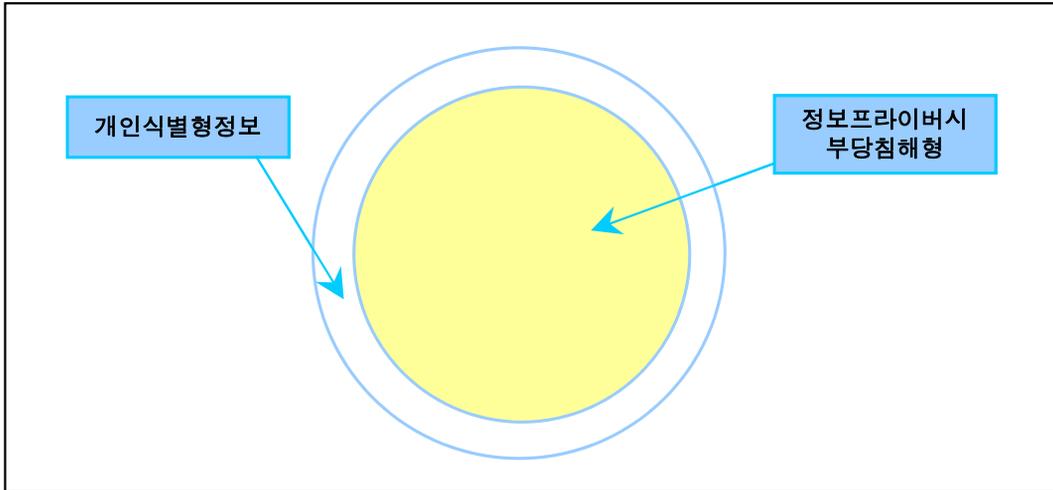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해하고 있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따라서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다.

#### 다.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지만, 예외적으로 의무적 공개대상 정보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라. 프라이버시 부당침해형 정보와 개인식별형 정보와의 관계



##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각 부서

##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안 검토를 위해 구성된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의 참석자 명단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비공개

이 사건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둔 조직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피고의 수정권 등 행사에 조력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이 법령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협의회 위원들 중 일부가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협의회 위원들의 위촉 경위 및 위 협의회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및 (마)목(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는 청소년 역사교육의 중요한 물적 토대이고, 피고의 수정권고안의 토대를 마련한 이 사건 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어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당초부터 명단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위 협의회에 참여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가능한 한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 ② 초·중등교육법령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피고에게 사인이 저작한 도서에 관한 검정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행사기준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협의회는 피고의 검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검정권의 행사에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시적·잠정적으로 구성된 조직에 불과하므로, 위 협의회 위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워 광범위한 여론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에 의하여 55개 수정권고안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 협의회 위원들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협의회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상 및 역사관이 공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 대립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여론공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④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하여 원고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 즉 청소년 역사교육의 올바른 물적 토대의 확립은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방식이 아니라, 피고가 발표한 수정권고안에 따르지 아니하여 향후 피고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검정합격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관한 민주적·사법적 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 이익침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공개청구한 제보자의 신원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부분공개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제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의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가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 외에 사적으로 제공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권리구제의 목적은 이 사건 정보중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의 공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중 제보자의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에 관한 정보  
(서울행정법원 2008. 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공개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뿐이고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점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등급구분점수정보는 개인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장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공개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계대상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  
(서울행정법원 2006.11.28. 선고 2006구합27298 판결) ⇒ 공개

징계대상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제외 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와 법관은 검사징계법 제23조, 법관징계법 제26조에 의하여 징계시 징계내용을 판보에 게시하게 되어 있음.

○ 기관업무추진비 관련 정보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 수령자의 인적사항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 비공개

금품수령자 정보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진정사건 기록중 0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734 판결) ⇒ 부분공개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중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 공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 이익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 공개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2005.11.16. 행정자치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고지거부자의 성명, 서명(날인))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되는데, 위 문서의 정보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사항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지거부자에게 동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고지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취득한 정보에 불과한 점,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의 공개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인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는 서로 관련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그 고지거부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고지거부자의 지위, 고지거부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성과급순위명부 공개여부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판결) ⇒ 비공개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임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 공개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 청구한 자료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판결) ⇒ 비공개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 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이다.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한 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함.

○ 이미 알려진 개인에 관한 정보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판결) ⇒ 공개

검거된 남과 간첩들의 개인정보는 그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조서와 통역인신문조서 등에서 그 대상자들과 통역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작성의 진술서 등에 의해서 △△△의 성명은 물론 연령, 생년월일, 북한에서의 원적, 본적, 주거, 학력, 가족관계 등에서 각 특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개인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나, 그 중 이 사건 사고의 범인들인 ○○○와 △△△의 성명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사망한 남파간첩의 경우 원래 생활 근거지가 북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굳이 비공개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외 달리 위에서 본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개인의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

○ 기관업무추진비 등 관련서류 사본  
(부산지방법원 2002.8.16. 선고 2001누2171 판결)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각 부서에 배정된 금액 포함)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및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형 정보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이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주요 시책의 홍보 및 보도업무 추진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서 그 구체적인 용도는 기관장이 주최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 행정홍보협조 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장애인, 이재민 등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이다. 따라서 집행증빙

서류 중에는 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형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관련 서류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 용도 집행이나 낭비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성명을 포함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그것이 성명과 결합되어 공개될 경우, 그 부정사용 여하에 따라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 ○ 기관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정보

(대전고등법원 2003.6.26. 선고 2001누2162 판결) ⇒ 부분공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한 판결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성질상 허용되는 것은 향유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운용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을 적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추구하는 바인 재정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적절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의도 하에 피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정이 있다 하여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비공개정보로 하여 비공개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가 피고로부터 위 격려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영업상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가 위 비공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모두 공개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정책홍보 협조 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 ○ 세무조사결과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 비공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는 인격, 신분, 재산,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이나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기타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 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고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조세비밀을 침해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침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가 지침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예산집행관련 지출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등은 그 집행이 적법한 이상 모두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는 보호할 만한 사생활의 비밀이 기껏해야 “당해 공무 집행과정에 참석하였거나 예산집행에 따른 금품 수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정도 이상의 것은 아니어서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성명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그 부정사용으로 인한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사본하면 될 것이다.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재(소송상대방)의 출입국 사실에 대한 자료  
(국무총리 행심위 2006. 5. 22. 의결 2006 - 3967) ⇒ 비공개

소송상대방의 출입국 관련사실에 관한 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출국일시, 체류 국가, 체류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달리 공개를 통하여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Ⅷ.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개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가.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성을 갖춘”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비록 법인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체”는 법인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집합체, 재산의 집합체 등 법인과 유사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모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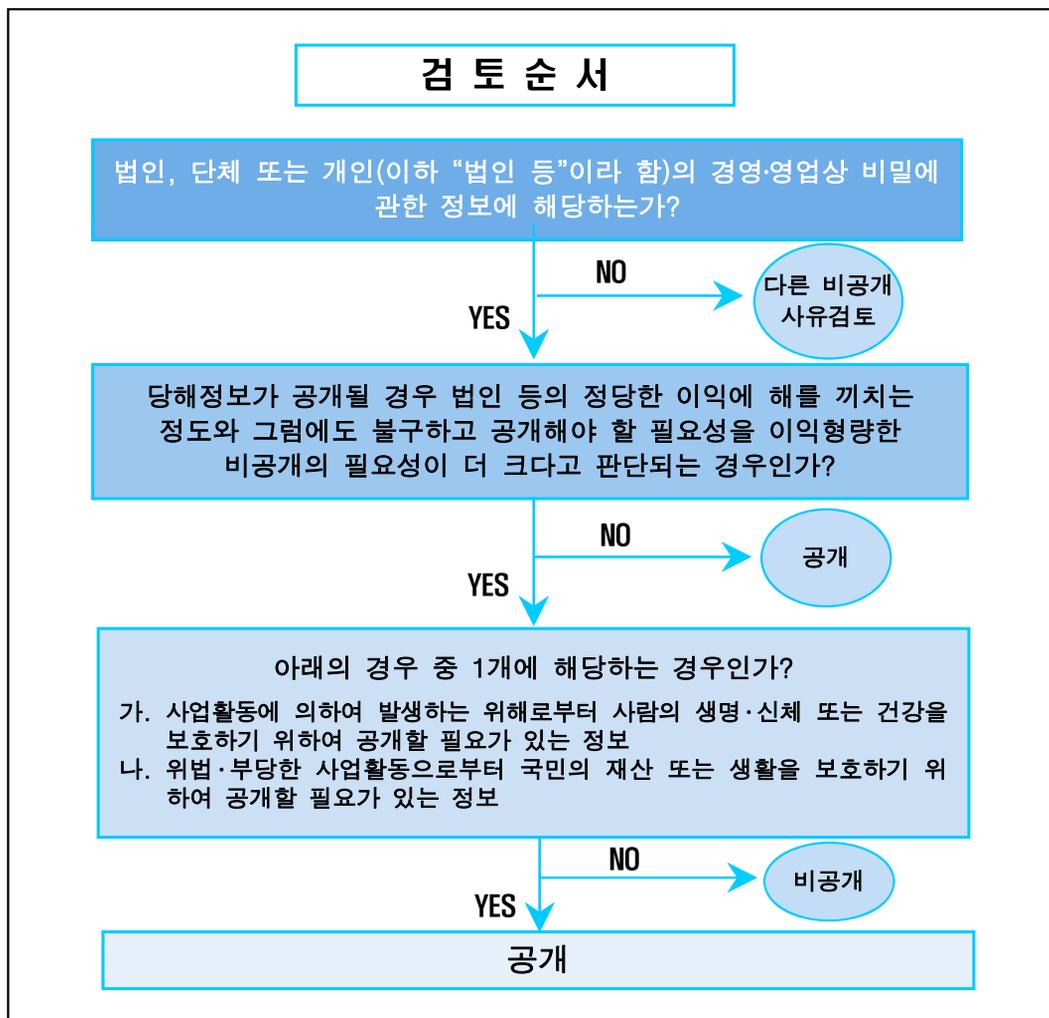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가 정보공개법에서 참조는 되겠지만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특히 학교법인, 종교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도 제7호의 “법인”에 포함이 됨을 고려할 때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성의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는 한은 “비경제적 가치”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나.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러한 대상정보가 비공개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더 중대하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 다. 의무적 공개정보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이익형량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비공개사항의 참고사항을 검토할 것.

##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교 정	수용자 위탁·외부통근 작업 업무	외부기업체와 계약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	직업훈련과

###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의 공개가능여부 (인천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구1536 판결) ⇒ 공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업소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하여야 하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하여야 함

- 적법한 기준과 재료로 제작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기계식 주차장사용검사 관련서류(14종)에 대한 공개여부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4502 판결) ⇒ 비공개

이 사건 서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제작과 성능에 관한 구체적 자료로서 그 설치자의 기술적인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영업상 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치의 제작·설치가 사실상 독점 또는 과점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경쟁이 제한된 업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될 경우 그 제작·설치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여야 함

- 과세정보에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여부 (00고등법원 2002누19086 판결) ⇒ 비공개

문제의 과세정보에는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사의 수입·지출상황,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납세내역과 추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하여야 함

-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내역중 외주처, 제작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 (서울행법 2007. 4. 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공개

피고의 외주제작 방식이 외주제작업체들 간의 입찰에 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작금액이 공개될 경우 외주제작업체들간의 가격담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 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명단 및 내역의 공개가능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 1998.10.9) ⇒ 공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자금내역은 공개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바로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대상 정보임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 (대전지방법원 2006. 7.26. 선고 2005구합2928 판결) ⇒ 비공개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공개여부 (대법원 2006. 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 공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의 조합 사이의 재건축사업계획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공개여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 공개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공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5292 판결) ⇒ 비공개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이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액(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공개여부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71 판결) ⇒ 공개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큼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상당함

○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공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는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사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문제의 정보는 요양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기관의 명칭은 의료인이 소비자들에게 대하여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정보는 의료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협회가 문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도 항생제 지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하여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영업상의 비밀이 누출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문제의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데에 요양기관 등의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인은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환자와 질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며, 이러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의료소비자들에게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에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더욱 깊어지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문제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  
(대구지방법원 2000.12.14. 선고 99구7884 판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는 피고가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특정 단체나 개인을 격려하는 등 공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서, 그 집행내역에 피고가 면담장소 등으로 이용한 식당 등의 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등 특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지방행정수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한 용도로 지출될 것이 예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그 집행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  
(서울행정법원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 공개

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과 다른 한편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 IX.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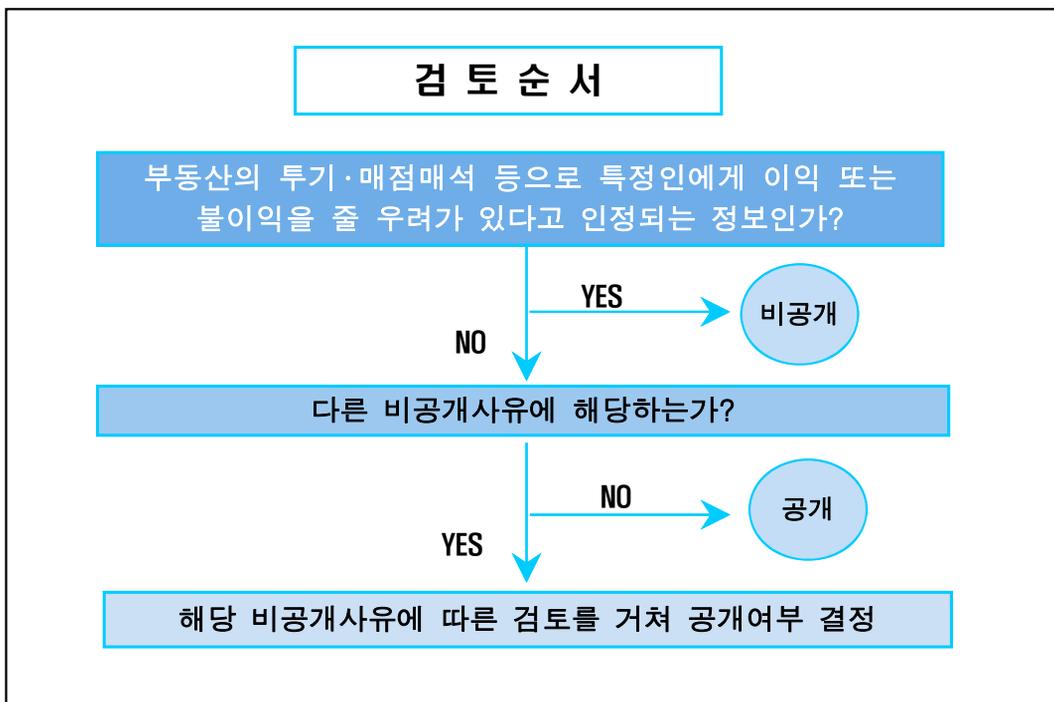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로서, 우리나라는 토지가 극도로 유한한 자원이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등의 정보는 개인이 가진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토지가 국민에게 유한한 자원임으로 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적 성격도 강하고 건물은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공개여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규정은 부동산 등에 관한 미성숙한 정보가 공개되거나 또는 정보가 너무 빨리 공개되어, 오해나 억측에 의거하여 국민 간에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것 등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미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없는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하도록 함



## 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관련)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각 부서

## 3. 관련 판결례 및 재결례

### ○ 사업장의 상호명 및 주소지 (국무총리행정심판 2005-16132) ⇒ 공개

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총액, 신고된 각 사업장 종업원 수, 각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 각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 수를 구분해서 표기 등 이 건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거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으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 지정이 끝난 사전환경성 검토협약과 관련된 구비서류의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국무총리행정심판 2005-10233)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하는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

하여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된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  
(국무총리행정심판 2001-03898) ⇒ 공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함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공개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X. 기타 비공개 사항

### 1.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공개거부 (민법 제2조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행하여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권리남용에 관한 일반법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청구가 행하여졌다는가 또는 대량의 공개청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비공개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청구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

- ❖ 정보제공을 위해 과도한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 청구인이 9,029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보공개에 공무원의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공개될 실익은 없는 것이 됨(대법원 1997. 5.23. 선고 96누2439 판결)
- ※ 참고 권리의 남용금지(모든 법 영역에서 타당한 법의 일반원칙임(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2.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여부 (법 제14조)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전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지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가 곤란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인이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청구인이 부분공개 의무를 다투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의 경우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를 구분하여 비공개정보를 삭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부분공개 의무를 면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정보를 쉽게 구분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부분이 의미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 즉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잔존정보가 의미가 있는가 유무는 청구인과 행정기관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잔존정보가 의미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두 부분 공개함이 타당하다.

### 3. 정보 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 (법 제2조 및 제3조)

정보 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보 자체의 존부 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개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청구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를 이유로 제시하여 거부처분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개청구에 관련된 정보의 존부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하여 비공개정보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보 자체의 존부 자체를 답하는 것에 의한 비공개정보규정의 보호이익의 손상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모든 비공개정보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기업을 지명하여 신상품의 인·허가 신청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의하여 특정기업의 기업전략이 경쟁기업에 알려지게 되어 경쟁상의 지위를 침해당할 수 있다.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존부응답거부가 필요한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고 항상 존부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로 답하고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부응답거부를 한다면,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존부응답거부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추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립암센터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개인을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서는 정보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항상 존부응답거부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존부에 관한 응답거부는 처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불복절차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4.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공개여부가 문제된다. 종래의 판례는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비공개한 경우가 있다(대판 2003.8.22, 2001두12946). 그러나 본래 의사형성이 일단 종료되면 더 이상 그 과정을 비공개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과정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된다면 이것은 행정운영정보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5.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공개청구를 행할 경우 공개여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의 본인공개제도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제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공개문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 6. 허위의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행정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개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공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절차를 취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한다.(물론,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본인이 공개청구가 가능하고, 타인이 허위사실을 기입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제 4 장 문서의 유형별 공개여부

### 1.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하고, 고시란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일반인에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다. 국회제출 최종법률안 및 그 참고자료로서의 이유, 신·구조문대조표, 참조조문은 정부의 의사결정 후 국무회의·국회 등에 제출되는 것이지만, 법률안 등의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제출 후가 적당할 것이다.

준비 중인 법령안으로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한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에는 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것, 입안을 위한 조사에 관한 것, 법령심사기관에 관한 설명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준비 중인 법령안 중 이를 공개하는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고 당해 입안사무 또는 법령개정 등 장래의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행정내부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조회서, 답변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 (i)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 (ii) 조세의 부과·징수
- (iii)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 (iv) 섭외·교섭의 방침 또는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탈법행위의 조장, 법령위반 행위의 교묘화·은폐를 초래하거나 교섭 등의 난항을 초래하는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 (v)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의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보안 경비 또는 피수용자 처우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 (vi) 직원의 인사사무, 청사·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훈령·지침은 이른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관 사무에 관해 명령하거나 시달하기 위해, 소관 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정 등을 명령·시달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각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의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직무운영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령·지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 3. 국무회의 등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국무회의의 결정, 국무회의의 보고, 관계장관회의 합의사항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결정, 보고 및 국무회의의 전단계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장관회의의 합의는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도 기관 등을 통하거나 국민의 청구에 응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타국 및 국제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당해 의사결정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4. 심의회, 위원회 등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개최통지서, 의제를 기록한 문서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개최현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건의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 (i)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정한 것
- (ii)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iii)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

심의회, 위원회 등이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제 기관을 말한다. 본 항목에서는 그 개최 상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건의, 의사록, 회의제출 자료의 취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심의회 등 위원 명부에 대해서는 앞에서의 인사 관계 문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i)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회 등으로서의 자주성, 자립을 배려한 것이며, (ii) 및 (iii)에 대해서는 의사운영규정 등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회, 위원회 등의 목적 및 임무에 비추어 동일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록의 취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회에 있어서 의사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응하여 상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사 요지의 공개에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심의회, 위원회 등의 부회, 분과회, 소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항목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회의 등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령, 법령에 근거한 훈령·지침, 국무회의 결정 또는 차관회의 등에 기초하여 개최된 회의, 협의회 등(당해 행정기관의 직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의 개최 취지, 구성원 또는 개최 현황에 관한 문서 및 회의결과 등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사록 또는 회의제출 자료로써 공개함으로써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하다.

본 항목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회의는 법령 및 훈령 등에 근거한 대외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는 회의를 말하며,

회의에 관한 문서 중에서 개최 취지, 구성원, 개최 상황에 관한 문서 및 회의의 결정·합의는 공개한다. 의사록 및 회의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6.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란 직원 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i)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결과 (ii)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위원 명부, (iii)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 등은 공개하도록 한다.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의 (i)~(iii)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공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성명·소속·직위 정도이다.

(i)의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청 3급 이상으로 하며 인사이동결과와 관보에 기재된다. (ii)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회와 같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iii)의 서훈 등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통상 명예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 7. 인사에 관한 그 밖의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직원의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연수실시결과 개요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공개함으로써 임면, 급여 등의 인사관리의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시험문제 및 그 작성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으로 공개함으로써 시험의 적절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하다.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연수실시결과 개요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의로 보고 등을 요구하는 문서는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에 의해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공개하는 것에 의해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후의 정보수집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채용 시험, 내부승진시험 등의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는, 출제분야가 좁아 출제가 한정되는 시험문제, 시험문제의 작성요령, 면접평가기준 등의 시험 채점 기준, 합격·불합격의 기준,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시험실시 요령 등 시험의 적절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8. 직원단체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

직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방침, 교섭결과 또는 직원단체 등의 요구서 등은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9. 자격·임용시험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자격시험 수험절차, 시험문제, 실무경험심사기준 등의 시험절차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지만, 시험문제 및 그 작성의 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의 기준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험실시기관에 의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며, 자격시험의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또는 합격판정위원회에 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 등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본 항목에는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에 관해서 당해 사무에의 종사, 관리감독자에의 취임 또는 일정 칭호를 인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시험 및 대학입학 자격 검정시험 등에 관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출제분야가 협소하거나 실기시험장 시설·설비에 제약이 있어 출제가 한정되어 그 공개가 시험실시기관 등의 판정·평가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시험문제 관리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문제의 문제은행식 관리) 공개하는 것이 추후시험의 적정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시험의 채점기준, 합격·불합격의 기준과 함께 시험문제가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시험문제의 작성요령이나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실시의 요령에 대해서도 시험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험의 수험자, 시험문제작성자, 합격·불합격 판정위원회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합격자의 명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과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상 게시판 등에 의해 공개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학입학자격 검정합격자 명단 등의 경우와 같이 합격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험에의 응시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시험응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10. 예산관련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예산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산의 내용에 관한 그 외의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예산작성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것이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

세입·세출 등의 잠정계산의 결정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세입·세출 등의 건적의 협의, 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잠정계산 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나 입찰 또는 건적의 실시목적 달성을 수 없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본 항목은 국가의 금전에 의한 수지의 예정계획으로서의 예산, 예산 작성을 위한 세입·세출 등의 건적, 예산의 실행결과로서의 결산, 수입 지출의 관리절차 작용으로서의 회계에 관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참고를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국가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1조 참조)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국가재정법 제9조) 다만, 예산에 관한 그 외의 문서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 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11. 결산관련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결산서, 결산관련 문서 및 감사원의 검사보고에 관한 설명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회계검사를 위해 제출 또는 취득한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결산은 일회계년도 간의 세입·세출의 결정적 계산이며 예산집행이 완결되고 회계감사원의 검사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결산에 관한 문서 중에서 검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원의 질문·확인, 피검사자 측의 견해 등에 관한 문서는 개선방안의 검토, 지도 또는 검사보고 작성의 자료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서를 공개하면 검사과정에서의 검사내용이나 피검사자 측의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감사원은 문서에 의한 질문을 행하는 것이 곤란한 피검사자측과의 정보교류의 중요한 수단을 잃고, 공정하고 적정한 검사활동을 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피검사자 측에서도 자주적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감사원의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12. 회계관련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세입의 징수·수납, 지출부담행위, 지급 및 세출에 관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을 기재한 문서, 영수증 등의 증거 서류로서 다음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할 수 있다.

- (i) 공개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의 정보수집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
- (ii) 예정가격, 예정가격에 추측되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iii)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되는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i), (ii)에 대해서는 수사비, 마약거래활동비, 국방조사위탁비, 보상비 등과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은 사무의 성격상 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한다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iii)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자금의 구체적 운용처, 방법을 공개하면 시장 등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상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회계문서는 공공기관의 내부관리에 관한 문서로 국민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적으로 당해 공공기관 내부의 일상적 관리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내부관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 13. 입찰참가 절차·결과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입찰실시에 관한 공고사항, 입찰 결정사유, 참가 자격요건,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참가의 절차·결과에 관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참가 자격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 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문서 등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본 항목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 정한다. 공공기관의 계약방식으로는 공고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 다수의 자를 지명하고 신청을 받아 신청자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자를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쟁계약에 의한 방법과 경쟁에 부치지 않고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도 있다. 또한 경쟁의 방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의해 가격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입찰에 의해 행하여진다.

입찰에 부치는 계약의 내용, 입찰실시의 장소·일시 등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관보 등에 의해 공고되고 있음), 입찰 결정사유, 경쟁계약 참가 자격요건, 입찰 선정기준, 유자격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개가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14. 예정가격 관련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것(예정가격조서 등) 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것(당해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단가 등)을 공개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달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점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15.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 (i) 설계·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
- (ii)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설설비의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iii) 용지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교섭의 난항·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 초래 등 당해 또는 장래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방식 선정의 이유, 입찰계약의 경우의 입찰자명, 입찰가격, 낙찰자명, 낙찰가격 등 계약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문서 및 계약이행의 확인에 관한 규정·검사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i)~(iii)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 16. 국유재산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국유재산 현재액 구좌별 조서 등 국유재산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 보통 재산의 대부, 매매와 지불 등의 보고서, 국유재산의 환경결정서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처분 등의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이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상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가 된 재산이며 부동산과 종물, 선박 및 항공기 등과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등의 증권, 특허권·저작권 등의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등이 해당된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국유재산의 현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 중에 처분예정지의 평가액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입찰 등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 등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이용계획, 자금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17. 물품관리에 관한 문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관리부 등 물품관리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물품관리계획, 물품수령서, 물품의 망실, 손상 등의 보고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예정가격, 구입예정단위가 추측될 수 있는 것 등 공개함으로써 물품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 18. 최종적 행정계획과 실시상황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의 행정기관이 책정한 행정운영에 관한 중장기의 기본적인 계획, 목표, 방침 등 행정계획에 관한 문서 및 목표달성상황 등 행정계획 실시상황에 관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행정계획의 실시상황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개개의 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해 임의로 제공되는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재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행정계획은 국가 행정의 기본에 관한 것이며, 행정계획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에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행정계획 관계문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개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달성상황 등 실시상황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행정계획중의 개개의 사무사업의 실시상황을 기록한 문서로서 그 문서가 정보제공자의 임의적인 협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고, 공개하는 경우 당해 정보제공자에게 지장이 초래되는 등으로 인해 이후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19. 행정계획 확정과정중의 관련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 행정계획의 확정을 위해 실시된 조사연구의 결과 등 당해 행정계획의 확정과정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이다. 다만, (i)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에 따라 당해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책정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당해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과 (ii) 관계자의 의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조사에 협조를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i)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책정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는 계획 획정을 위한 자유로운 검토·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고, 국민에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에 의해 적정한 계획의 책정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장래 동종의 행정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현재 책정된 행정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위와 같은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계획 책정 후에 있어서도 공개하는 것에 의해 행정계획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나 행정계획 전체의 실시의 적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행정계획의 책정시 필요한 중요한 검토·판단자료가 되는 것이나, 공개하는 것으로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20.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국가의 연구기관 및 그 외의 공공기관에 의한 연구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i)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ii)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iii)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조세의 부과, 징수,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등의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것,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에 있어서 보안경비·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것 또는 희소동·식물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연구자가 발표하기 전의 연구 테마, 내용, 성과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및 저작권(공표권, 복제권) 또는 공업소유권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노하우 등)을 취득하는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정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판정·평가의 방법, 희소동·식물의 서식지, 교정 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유치시설 등도 이것에 준한다)의 경비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하는 것에 의해 행정사무의 목적, 효과를 훼손하고, 특정시설의 보안경비 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서 행해지는 연구, 개발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취급하도록 한다.

## 21. 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등과 연관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에 관한 문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의 일체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 훈련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은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한다.

## 22. 남북관계·통일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통일대비계획, 통일정책 및 대북전략관련 법적지원 초안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가 된다.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 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연구계획서, 연구관련자료, 연구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된다.

### 23. 출입검사·단속 등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의 권한의 행사 및 법령에 기초한 명령·금지의 기본적 방침 및 그 결과의 개요에 관한 문서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다만, 출입검사 등의 실무의 실시예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므로 다음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하다.

- (i) 대상자에게 공개해서는 출입검사의 목적과 실효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의 범위·방법 등의 상세를 기재한 실시계획이나 실시요령
- (ii) 정보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에 관한 정보
- (iii) 공개하는 것에 의해 대상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징수·수거자료, 출입검사 등의 결과, 결과에 기한 요구, 처분, 개선조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

본 항목에서는 사무소, 영업소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잘못된 사무·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또한 그 시정을 통해 적법, 적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인 권한행사인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감찰 등 법령에 기한 일방적인 일정행위·수인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에 관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개함에 의해 개인·법인 등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출입검사 등의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그렇더라도 개인이나 법인 등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및 사람의 성명, 신체, 건강, 재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 24. 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세수의 내역, 세무조사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납부, 결정, 불복신청, 체납처분에 관한 문서 또는 세무조사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 공개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 징수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하다.

세수의 내역, 세무조사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징수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문서는 공개한다. 그렇지만,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 및 납세의 고지에 관한 문서, 납세자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의 수령에 관한 문서,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에 강제징수에 관한 문서 등 납세자 개인의 수입 등의 납세자의 권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조사의 방법, 범위 등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 자신에 관한 과세정보로 그것을 공개한다고 하여 행정청의 조세부과·징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과세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5. 지도감독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기본적 방침,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문서 및 지도감독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 (i)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문서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혹은 적정한 업무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포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것
- (ii)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또는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적 공표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

사업자의 경영·활동·설비, 물건의 제조·판매·사용 등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의 사무 운영의 지침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기본방침은 공개한다. 지도감독에 해당하면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등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원의 임용·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것, 공공사업 또는 계약 사무에 관한 것,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격차에 관한 것 등으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단체의 적정한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법령 등에 의해 권고, 지시 등에 따르지 않는 때에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능한 제재적 공표조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표조치는 사안마다의 사정을 감안하여 개선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와 같은 제재적 공표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상자에 대한 지시 등의 지도감독 사항에 관한 문서의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의 불이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집한 문서의 취급과 동일하게 제재적 공표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26. 기술·경영 등의 지도·조언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신청·요청에 응하여 행하는 기술·경영·직업소개·훈련 등의 지도·조언의 지침, 요령, 지도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이다.

본 항목의 대상문서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신고·요청에 의해 행하는 조성, 육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조언에 관한 문서이다. 지도·조언의 지침, 요령은 공개하지만, 개별 신고·요청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단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행하는 지도사항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7. 신청절차, 심사기준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인·허가(신고 등을 포함. 또한 개인, 법인 등의 단체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를 포함함)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인·허가신청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만 심사기준 중 공개됨으로써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본 항목에서 말하는 인·허가는 ① 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 등에 의해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신고, 제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② 특수법인 등에 대한 국가의 인·허가(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재무제표의 제출 등), ③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의 관여 중 (i) 국가의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당해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또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허가, 인가, 승인, 동의, 지정, 인정 등), (ii) 국가의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과하고 있는 것(신고, 보고, 제출, 통지, 등록 등)을 말한다.

인·허가의 신청절차, 심사기준에 관한 문서는 국민이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기준의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인·허가 사무의 목적이 훼손되는 등 심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28. 개개의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 인·허가대장, 업자·보유자 등록부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하다.

- (i)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 또는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경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ii) 공중에게 위험하고 특히 신중하고 엄정한 취급을 요하는 물건(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취급 또는 그 관련설비·시설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iii)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 또는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개개의 인·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은 인·허가가 행해지는 것에 의해 공개·비공개 판단을 행하며, 심사중인 경우 불허거나 불승인된 경우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인·허가대장이란 개개의 인·허가 심사의 결과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인·허가 관계문서에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또는 생산 노하우,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가 등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특수법인 등의 사무·사업에 관한 신청서·첨부서류 중에는 계산내역이나 용지취득 등에 관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문서가 공개되는 것에 의해 당해 사무·사업(공공사업,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저해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29. 공공사업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①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책정과 관련한 조사결과 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에 관한 문서, ② 공공용지 취득면적·손실보상액,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문서와 함께 ③ 공공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누계)기준, 부담금 계산기준 및 그것에 근거한 협정서 등 계산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이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한 것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

- (i)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ii)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것, 용지취득계획, 교섭방침 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iii) 조사연구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동종 사업계획의 책정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iv) 관계자의 의견조사로서 공개함으로써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

공공사업에는 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외에 청사,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가 포함된다.

공공사업에는 국민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저이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사업실적, 공공용지 취득 면적·손실보상액 등은 공개한다.

(i), (ii)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계산단가, 개별 사업개소 또는 보상 내용, 용지취득의 교섭방침 등이 있는데, 당해 사업 또는 계속·반복하여 실시하는 동종사업의 계약사무,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iii)의 '사업계획의 책정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는 계획책정을 위한 자유로운 검토,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국민에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계획의 책정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장래에 동종의 사업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책정사무에 관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상기와 같이 현저한 지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계획 책정 후에 있어서도 공개하는 것에 의해 사업계획의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iv)의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교섭사무나 계획책정사무에 있어서 중요한 검토·판단자료가 되는 것이다.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의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30. 개개의 신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절차 등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그 외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관한 문서 및 교부신청 전 절차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되,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정(명시), 보조사업비의 계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

- (i)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ii)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나, 당해 보조사업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장래의 동종 사무에 대해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체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31. 용자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가 스스로 행한 용자에 관한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계 문서의 기준을 준용한다.

용자에 관한 문서란 국가가 행하는 용자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용자 관계문서는 대부에 관한 문서와 상환에 관한 문서로 대별되지만, 이들에 대한 공개·비공개의 판단은 보조금 관계문서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32. 보험사업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의 구조, 가입·수급 등의 절차, 인정기준, 보험료 및 수급액의 산정방법 등은 공개한다. 그러나 보험에 관한 문서 중 수급 등의 인정에 관한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조장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

보험사업은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으로서 제도의 구조, 절차, 인정기준, 보험료 및 급부액의 산정방법 등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개하는 것에 의해 부정수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문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진료보수 명세서, 피보험자의 가입기록, 보험계약서 등 개인정보, 기업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 33. 지급(금전, 현물)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사회복지사업, 원호사업, 학교교육사업 등에 있어서 금전지급, 현물지급에 관한 사업의 개요, 지급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대상 정보이나, 지급의 인정에 관한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조장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과 지급에 관한 신청서·청구서, 개별의 인정에 관한 자료, 통지서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이란 특정 용건에 해당하는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이며, 사업의 개요, 지급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급의 인정에 관계된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부정수급의 조장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개개의 신청서, 인정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34.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학교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행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① 준비의 방침, 계획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서, ② 소장품, 전시실, 훈련실 등의 시설의 설비·비품에 관한 문서, ③ 운영 방침, 연수·훈련프로그램, 수험절차, 이용안내, 입소규칙 등 시설의 운영방법에 관한 문서, ④ 학생 수, 입관자 수, 입원자 수, 수업료, 입장료 등 시설의 이용 상황에 관한 문서와 더불어 ⑤ 교육, 연수, 치료, 생활지도, 훈련 등에 관한 기록 등 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이다. 그러나 ① 대학 등에 있어서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② 시설에 있어서 교육활동 또는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공공시설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서비스를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정비계획, 설비·비품, 운영방법, 이용상황, 운영실태에 관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에 있어서 교육목적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진료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사망률, 치료에 관한 기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환자에게 예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치료·회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35.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조약, 협정, 결의 등 국제간의 합의문서 등 및 그 외의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 (회의·회담에 관한 것, 경제협력에 관한 것, 자국민 보호에 관한 것, 조약·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것, 국제정세에 관한 것, 문화, 홍보활동에 관한 것 등)는 일반적으로 대외관계시책이 국가의 중요시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추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법령에 의해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어 있거나(실질적으로도 비밀에 해당하여야 함)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외교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외교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내용이 국가의 이해, 국제관계에 관한 것만으로서 문서의 성격에 의해 용이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 36. 통계조사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통계조사의 결과 및 전문적 조사기관이 행한 자연현상의 관측, 국토·수로의 측량 등의 결과는 그것들의 조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고려한 전문적인 처리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기해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지정통계조사의 결과 또는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한 시험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본 항목에서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통계수치, 계측수치,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조사결과는 적절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통계조사결과에 관한 문서가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 통계조사의 결과중에서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해 시험조사 등이나 법령에 의한 공개의무를 면제하는 지정통계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본 조사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자료로서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통계조사결과나 관측데이터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여 법령상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연히 비공개되어야 한다.

### 37. 업무통계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사무수행 중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 건수, 위반단속 건수 등의 행정활동의 실적 및 대상업자·시설 수, 화재·사고의 발생 수 등의

행정대상지표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요청을 고려한 처리를 거쳐 공개토록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검사, 조사, 단속 등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등 집계의 대상사무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인 업무통계에 대해서는, 사무수행에 대하여 집계된 행정활동 실적을 나타내는 데이터나 행정대상 수를 상징하고 원칙적으로 사회적 요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분류·정리가 매우 상세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검사·조사 또는 거래의 방법이나 위법행위의 양태·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경우 검사 등의 목적 및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38. 개별 고충·진정 등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고충서, 진정서 등의 문서, 처리표, 알선(주선)서, 의견조회서, 조사서 등의 개별사건처리에 관한 문서 또는 사안에 대한 답변서로서 공개함에 따라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가 가능하다.

개별사안의 내용과 처리과정에서 작성·취득한 문서는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청인 및 처리내용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로 비공개하여야 한다.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개·비공개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39.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행정기관에 의한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재송에 관한 사무절차규정 등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처리, 심리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사무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개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심판신청서, 심리기록 및 재결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심리과정이 비공개로 되는 것 또는 공개함으로써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청구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 관련 부분, 심리기록 중 개인의 주관적 이익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업상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심판 이외의 개별 약식쟁송 및 알선·조정·중재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사안처리,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과의 교섭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처리, 심리의 절차에 관한 것은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해분쟁의 재정, 부당근로행위의 심판, 공정거래법상의 심판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심리가 준수법적인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심리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보관하는 소송기록에 준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비밀, 사업자의 비밀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심리과정이 비공개되는 경우 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것 등 공공기관에 의한 알선·조정·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은 분쟁해결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40. 소송에 관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소송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소송에 관한 통계자료 및 개별의 판례·재판제도의 조사·연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지만, 개별 재판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금후의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 또한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사건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금후의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소송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연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지만, 개별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로서의 국가의 공격·방어방법이 명확하게 되는 등 금후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있다. 소송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계류 중에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도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하는 소송의 전제에 비추어 볼 때, 공개하는 것에 의해 국가에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종료 후에도 장래 동종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의 당사자로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 41. 문서대장 등 공통관리업무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문서관리대장 등 공공기관에 있어서 문서관리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서 및 업무 운영의 기본적 방침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문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본 공개기준에 있어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공개 가능하다.

일일근무일지, 감독자의 지시사항, 사무의 진행관리, 사무개선, 일상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노역의 조달에 관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내부관리에 관한 문서는 국민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적으로 당해 공공기관 내부의 일상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내부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토록 한다. 정부의 각 부처에 공통되는 관리업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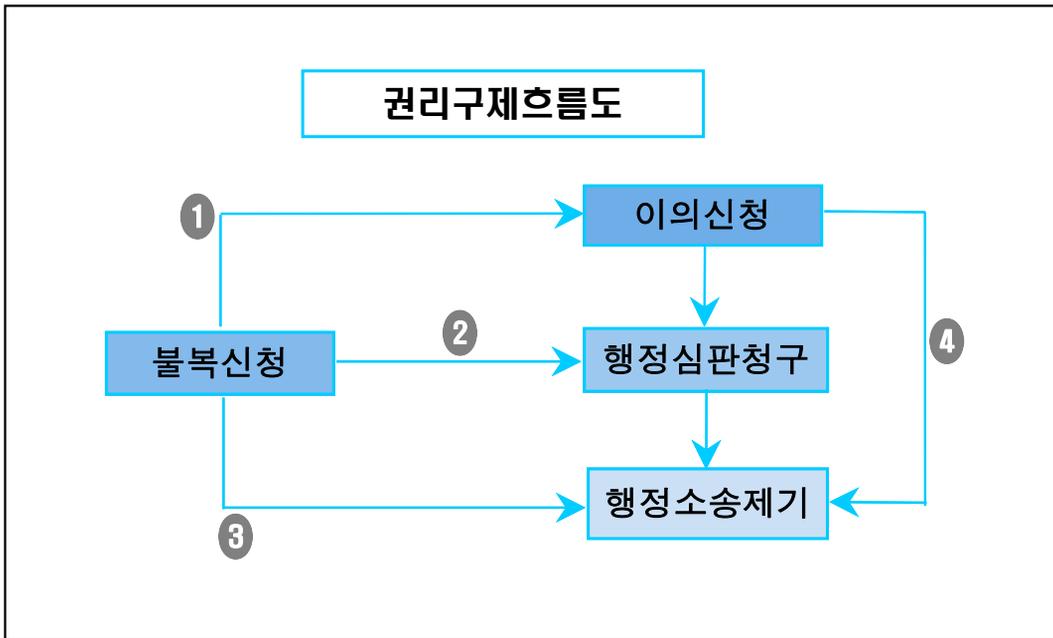
전적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관리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문서 중에 국민의 접근수단이 되는 ‘문서관리대장 등 공공기관에 있어서 문서관리의 상황을 나타낸 문서’ 및 시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업무운용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다만, 문서관리대장에 기재된 문서의 건명이나 수신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비공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의 전적으로 내부관리에 관한 문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i) 업무일지, 내부회의 개최 기록, 하부기관과의 연락문서 등 소관업무의 진행 관리에 관한 문서
- (ii) 내부감사결과 보고서 등 내부에 있어서 사무개선에 관한 문서
- (iii) 소모품 등(중요물품으로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물품)의 조달, 취득·유지, 역무의 조달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문서
- (iv) 그 밖에 관용차 사용 기록, 회의실 사용 기록

앞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내부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약, 발췌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 [ 제 5 장 정보공개와 권리구제 ]



※ 불복신청에 의한 권리구제는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②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한 후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 및 ③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④이의신청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I. 이의신청

### ▶ 신청권자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1조 제2항)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의사에 반해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 신청기간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1조 제2항)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한 피청구기관의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신청방법 (영 제18조)

-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함

### ▶ 심의 및 결과통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이의신청 사항은 각급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인용여부 등을 심의·의결함 (지소·출장소 등은 본소에서 처리)
  -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에는 기획조정실장(위원장), 각 실·국·본부 주무과장 등(위원, 6명) 외에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2명(변호사 1, 교수 1)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본부에 준하여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지소·출장소 등은 본소에서 처리)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 불복안내 : 각하 또는 기각 결정·통지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II. 행정심판

### ▶ 청구 적격자(법 제19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18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됨

### ▶ 청구방법 (행정심판법 제17조)

- 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 단, 산하단체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법무부장관이 됨

### ▶ 재 결 (행정심판법 제34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함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III. 행정소송

법적 구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소송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형태

정보공개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은 처분의 취소를 명하더라도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공개거부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취소소송 이외에 예외적으로 무효확인 소의 제기도 가능하다.

#### 2.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

정보공개소송은 신속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인 정보공개가 행하여지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정보공개의 의의는 크게 감소하지만, 정보공개소송의 우선적 심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은 우선적 심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피고행정청에 신속한 심리에 응하도록 소송지휘를 행하여야 한다.

#### 3. 입증책임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정보를 보유하는 행정기관측에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청구대상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입증이 요구된다. 이렇게 된다면 공개청구대상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알 수 없는 원고에게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기관이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最判 1994. 2. 8 民集 48卷 2号 255面).

#### 4. 심리대상

법원에서는 공개거부결정이 적법한가 여부(합법성 심사)에 대해서만 심리된다. 예외사유의 해석의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 적용에 폭이 있는 경우에 그 판단이

허용되는 폭을 넘어선다면 재량의 남용이 되어서 위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한도에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의 적법성이 심리될 수 있다.

## 5. 위법판단의 기준시

행정기관결정의 적법성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당해 결정의 시점이다. 즉 처분시의 시점에서 당해 결정의 위법여부가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처분후 사정변경으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이 행하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결시의 상황에 비추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 6. 인 카메라(in camera) 심리

공개청구 대상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개청구문서를 직접 보는 것이 불가결하다. 인 카메라 심리는 정보공개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개청구 대상문서에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부분을 분리하여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절한가 여부는 당해 문서를 직접 보아야 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 등에 관한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 등은 당해 정보의 제출하지 않는 것에 그것이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개청구 대상문서를 직접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20조 3항)

## 7. 판결 이외의 소송종결

소송으로 다루어지는 동안에 재판외적 화해를 통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도중에 공개청구인과 합의가 되어서 공개청구 대상문서를 그대로 공개한다든가 혹은 그 대상문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개청구대상이 된 문서를 공개하는 것에 의하여 소송 취하의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 도중에 법관의 조정으로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8. 다른 이유에 의한 공개거부결정

공개거부결정이 재판에서 다루어져서 법원에서 공개거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행정기관은 별도의 이유를 붙여서 다시 공개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후 별도의 이유에 의하여 공개거부를 하는 것을 무제한 인정하면 행정기관은 계속하여 공개거부이유를 변경하여 공개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적 제도운영이 요구된다.

## 9. 손해배상가능성

정보공개를 위법하게 거부당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10. 임의적 선택주의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일원적으로 규율 되는데 반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동법에 따른 불복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경우 순차적·선택적·병렬적인 방법 중 선택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공개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행정상 구제절차와 더불어 순차적·선택적·병렬적인 방법 중 선택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 6 장 정보공개 관련 참고자료

### 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71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 3 장 정보공개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외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정보공개청구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위원장은 제외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7127호, 2004.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⑤내지 <68>생략

**부 칙 <제8026호, 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8171호, 2007.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④생략

### 부 칙 <제885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 부 칙(행정심판법) <제887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 I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07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 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6조(정보공개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 4 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혁신정책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8493호, 2004.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85호, 2007.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 생략

## 부 칙 <제20707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10매 기준)1회 : 200원</li> <li>·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3이상 3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li>-B4이하 25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10매 기준) 1회 : 200원</li> <li>·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3이상 3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li>-B4이하 25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10매 기준)1회: 200원</li> <li>-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도면·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매 : 2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1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3이상 3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li>-B4 이하 25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매 : 2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3이상 3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li>-B4이하 25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10매기준)1회 : 200원</li> <li>-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마다 5,000원</li> </ul> </li> <li>-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마다 3,000원</li> </ul> </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롤마다 5,000원</li> </ul> </li> <li>-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편마다 3,000원</li> </ul> </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편 : 1,500원</li> <li>·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영화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여러 편이 1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ul>	-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컷마다 200원</li> </ul> </li> </ul>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10컷 기준) 1회: 500원</li> <li>·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1매 초과마다 2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1매초과마다 150원</li> </ul> </li>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	-
사진·사진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매 : 20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컷마다 500원</li> <li>·1매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li>복제(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컷마다 6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매 : 20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 250원</li> <li>·1매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50원</li> <li>5"×7" 100원</li> <li>8"×10" 150원</li> </ul> </li> </ul> </li> <li>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1MB 기준)1회: 200원</li> <li>-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li> </ul> </li> </ul> <p>※ 매체비용은 별도</p>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법인명등 및대표자)			주 민 등 록 (여 권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법 인 · 단 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input type="checkbox"/> 열람 ·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 · 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 ·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령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담 당 공 무 원 등)		직 급			이 름	서 명 또는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 급	서 명 또는인	
					이 름		
	일반인 인 경 우	이 름			서 명 또는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p>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접 수 기 관)</p> <p>※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mm × 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 건 청 취 일 시						
의 건 청 취 내 용						
기 타 참 고 사 항						
의 건 청 취 자 (담당공무원등)	직 급			이 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연락처			이 름	
	일반인인 경 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 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 개 일 시 (기 간)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 수 료 감 면 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 수 료 납 입 계 좌 ( 입 금 시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 리 과 명 - 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 접수 번호	이의신청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mm × 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법제9조 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 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 IV.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2003. 11. 14. 법무부 예규 제682호  
개정 2004. 11. 17. 법무부 예규 제710호  
개정 2006. 4. 27. 법무부 예규 제751호  
개정 2008. 6. 4. 법무부 예규 제798호  
개정 2008. 12. 5. 법무부 예규 제813호  
개정 2009. 9. 4. 법무부 예규 제90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그 소속기관(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용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및 사무관리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공개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공개로 분류된 공문서 등은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문서 등은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공문서 등을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함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획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②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교육·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외의 주관 및 처리부서)** 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미보유 정보 등의 처리원칙)**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 즉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문서 등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미보유”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한다.

**제7조(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 ①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공문서 등의 생산·결재 단계에서부터 공개여부를 실질적으로 분류(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하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각종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간이기안문 형태의 내부결재 문서도 반드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라 공개여부를 분류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즉시 공개)** ①정보공개청구인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  
가. 이미 홈페이지, 법전 등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  
나. 이미 여러 번의 결정·통지에서 ‘공개’로 결정된 정보  
다. 일반 간행물, 팜플렛, 안내서, 본인 작성 민원서류(청원·진정서 등)  
②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없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별표 1)’에 서명토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목록 등의 작성·비치)** ①시행령 제5조의 정보목록은 다음 각호에 따라 매월 작성 후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각 실·국·본부는 월별 기록물 등록대장(비공개·부분공개 대상정보 목록 포함)을 출력하여 목록별 공개여부를 검토 후 매월 5일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과는 각 실·국·본부별 기록물 등록대장을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기록물등록대장의 출력물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3. 목록 자체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에서는 정보공개절차 등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민원실 등에 게시·비치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본부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편람과 본부에 준하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실 등에 비치·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주기 등은 “별표 2”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와 같다. 본부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공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본부의 행정정보 공표범위(“별표 2”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 내에서 소관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산하단체는 법무부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공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정보의 목록 등록)**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공개·부분공개한 정보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목록(보유기관 및 부서명, 공개정보명, 공개범위 등)을 홈페이지 공개정보 목록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으로 청구·처리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3”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와 같고, 산하단체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동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적 공개기반 조성)** ①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코너 등 관련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2.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의 연계를 통하여 공표대상 문서 등이 결재완료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

②각 실·국·본부별의 소관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각 실·국·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④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등의 정비·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지소·출장소의 경우 본소 등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본부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교정기획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심의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산하단체는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 3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심의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심의 등

**제18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의 1/2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7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방법)** ①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 ①비공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부 처리부서에서는 부분·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토의견서(별표 4)”에 따라 사전에 국가송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부분 또는 비공개 등으로 결정·통지된 이후 당해 사안을 처리부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별표 4)”에 따라 사전에 국가송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송무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 등의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퍼센트 감액율을 적용한다.

③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 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정보공개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공개 교육)**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 부 칙 <제710호, 2004.11. >

가. 이 지침은 '04.11.17.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 제6조는 2005. 7. 1.부터, 제12조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751호, 2006. 4. >

이 지침은 '06. 4. 2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798호, 2008. 6. 4>

이 지침은 '08. 6.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3호, 2008.12. 5>**

이 지침은 '08. 1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3호, 2009. 9. 4.>**

가. 이 지침은 '09. 9. 4.부터 시행한다.

나. 법무부 정보목록 공개 세부 운영지침(총무과-9823, 05.8.26)은 폐지한다.

다. 2006년도 정보공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즉시공개제도 활용방안'(총무과-44, 07. 1. 3.)은 폐지한다.



[별표 2] (제10조 관련)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공 통	법무행정 분야별 주요정책 추진과제	정책수립, 정책 결정 및 실행, 추진실적 자료	수 시 (결재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주요정책 추진과정)	각 부서
기 획	대통령 업무보고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서	수 시 (보고서)	"	홈페이지 (법무부소개 → 법무부는 → 일반현황 → 업무계획및평가 )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회관련 자료	질의·답변 자료 (개인 식별자료 제외)	수 시 (제출· 보고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국회관련 정보공개)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회의원 요구자료	수 시 (제출· 보고서)	"	"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수 시 (제출· 보고서)	"	"	기획재정 담당관실
		업무현황· 현안보고 자료	수 시 (제출· 보고서)	"	"	기획재정 담당관실
	주·월간 업무 추진 현황	주·월간 업무 추진 실적·계획 보고서	매 월 (월 초)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자료실)	기획재정 담당관실
	예산 현황	세입·세출 예산 현황	매 년 (1월중)	"	홈페이지 (법무부소개 → 법무부는 → 예산현황)	기획재정 담당관실
재정집행계획· 집행실적 등		수 시 (연중)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국회관련 정보공개)	기획재정 담당관실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기 획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수 시 (국회 제출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국회관련 정보공개)	기획재정 담당관실
		예산낭비 사례 발굴 · 조치	수 시 (연중)	”	홈페이지 (국민광장 → 신고의장 → 예산낭비신고센터)	기획재정 담당관실
	세입 · 세출 결산 현황	결산개요, 각종 결산자료	매 년 (국회 제출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국회관련 정보공개)	기획재정 담당관실
	차량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현황	연 초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자료실)	기획재정 담당관실
법 무	법무부 소관 법령 제 · 개정안 및 입법예고안	개정 · 예고안	수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소관법령/ 입법예고)	각 부서
	부동산 실명제 관련 질의 응답자료	질의 및 응답자료	수 시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상담사례)	법 무 심의관실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운 영 지 원	입찰관련 자료	입찰계획서 및 결과	수 시 (공고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 한법률	홈페이지 (법무뉴스 → 입찰정보)	운 영 지원과

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장 소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공 통	법무행정분야별 정책수립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	연구보고서, 검토서, 공청회 자료	수 시 (정책 수립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행정자료실)	각 부서
법 무	사법시험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 기 (회의시)	"	홈페이지 (www.moj.go.kr/ barexam)	법 조 인력과
		사법시험 시행일정	연 중 (연초)	"	"	법 조 인력과
		문제지 및 최종정답	연 중 (시험후)	"	"	법 조 인력과
		접수 현황 및 각종 통계 게시	연 중 (시험후)	"	"	법 조 인력과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운 영 지 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장·차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분 기 (1, 4, 7, 10월)	공공기관 의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업무추진비)	운 영 지원과

5. 각종 평가결과 · 통계자료 등의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기 획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체평가 결과	매 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부소개 → 법무부는 → 일반현황 → 업무계획 및 평가)	행정관리 담당관실
	규제개혁 추진상황	규제완화 및 추진 상황	수 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 법령정보 → 규제개혁이 희망)	법 질 서 담당관실
	법무연감	전체	매 년 (발간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행정자료실)	기획재정 담당관실
	법무부 소속직원의 정·현원 현황	직급별 인원현황	매 월 (익월초)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행정자료실)	행정관리 담당관실
법 무	도서실 보유장서 현황	법무자료 발간	수 시 (작성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 간행물)	법 무 심의관실
		보유장서 목록	수 시 (작성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 간행물)	법 무 심의관실
검 찰	검찰관련 통계	사형집행 · 형사보상금 집행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 사면 현황	수 시 (변동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자료실)	형 사 기획과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공표위치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범 죄 예 방 정 책	보호관련 통계 (통계연보)	감호청구 현황, 비행청소년 선도·보호현황,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	홈페이지 (범죄예방 정책국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통계자료)	보 호 법제과
	보호관찰관련 통계 (통계연보)	대상자 관리·사회봉사·수강 명령·조사업무 처리·범죄예방위원 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	홈페이지 (범죄예방 정책국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통계자료)	보 호 관찰과
	소년보호관련 통계 (통계연보)	수용·교육·분류심사 현황	매 년 (발행시)	"	홈페이지 (범죄예방 정책국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통계자료)	소년과
교 정	교정관련 통계	수용·교육훈련·교도 작업 운영현황	매 년 (발행시)	공공기관 의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 (www.corrections. go.kr)	보안과 사회 복귀과 직업 훈련과
출입국	출입국관리관련 통계 (통계연보)	국민출국자·외국인 입국자·등록외국인· 사증발급·남북왕래자 현황	분 기 (발행시)	"	홈페이지 (www.immigration. go.kr)	정보팀
		국적민원 처리현황				국 적 난민과

6. 기타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관계법령	장 소 (찾아보기)	실 시 부 서
공 통	인사자료	채용계획 등 채용자료	수 시 (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홈페이지 (법무뉴스→ 채용광고)	각 부서
	훈령·예규 (비공개 대상 훈령·예규 제외)	전문	수 시 (제· 개정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법령정보→ 훈령/예규)	각 부서
	고시·공고	고시·공고문	수 시 (공고시 등)	"	홈페이지 (법무뉴스→ 공지사항)	각 부서
	보도자료	보도자료·해명자료	수 시 (송부 후)	"	홈페이지 (법무뉴스→ 보도자료)	각 부서
인 권	인권투어	관련 자료 게시	수 시	"	홈페이지 (www.hr.go.kr)	인 권 정책과
	인권레터	수집 자료 게시	수 시	"		인 권 정책과
운 영 지 원	정보공개업무 자료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 지침	수 시 (제· 개정시)	"	홈페이지 (법무지식→ 법령정보→ 훈령/예규) 민원실	운 영 지원과
		정보공개업무 편람	수 시 (작성· 변동시)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민원실	운 영 지원과
		정보목록	매 월 (매월 10일까지)	"	홈페이지 (법무서비스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운 영 지원과

[별표 3] (제12조 관련)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소관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비밀관리, 보안업무	비밀문서	각 부서
감 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감찰담당관실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 보안업무 관련 접수 및 자체생산 비밀문서	각 부서
법 무	○ 시험정보의 공개(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 사법시험 제3차 시험 채점표 ○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답안지 스캐닝	법조인력과
출 입 국	○ 외국인 동향조사 활동계획 수립 ○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정보사업 심사분석	체류조사과
감 사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 조치 ○ 법무부 소속 공무원중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서류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자료 ○ 선물신고제도 관련 자료 ○ 주식백지신탁 관련 자료 ○ 병역사항 (병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감찰담당관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기 획	법무시설기준규칙	등 지침	시설담당관실
교 정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교정시설별 수용자 분류수용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	난민인정 관련 업무	관련 문서(관련지침은 공개대상)	국적난민과
	사증발급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사회통합과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연습(을지연습) 실시와 관련한 업무처리</li> <li>○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li> <li>○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li> <li>○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중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li> </ul>	각 부서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을지연습 기본계획 수립, 실시 및 강평</li> <li>○ 법무부 총무계획 수립, 검토 및 승인</li> <li>○ 자체 총무계획 및 응전자유화집행계획 수립</li> <li>○ 직장예비군 편성·교육훈련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li> <li>○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관련 국방부 및 법무부 교육훈련계획</li> </ul>	비상계획관실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민방위 편성 운영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 계획, 교육훈련</li> <li>○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 및 점검자료</li> <li>○ 법무부 소관 국가재난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li> <li>○ 법무시설 방호지침 및 방호태세 점검</li> <li>○ 비상대비 관련 세미나 등 일반업무 처리</li> <li>○ 산하기관 비상대비 계획점검·조정</li> </ul>	비상계획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에산안 편성</li> </ul>	기획재정 담당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운영</li> </ul>	행정관리 담당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li> <li>○ 정보보호 내부대책 및 전략</li> </ul>	정보화담당관실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대비 법무계획·통일기획요원 등 비밀자료(목록)</li> <li>○ 비밀로 분류된 연구 결과물</li> </ul>	통일법무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형사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대책</li> </ul>	국제형사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li> </ul>	사회복귀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심사관련 업무지시</li> <li>○ 입국심사제도개선</li> <li>○ 재외공관 사증발급승인 관련 자료</li> <li>○ 산하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승인 관련 자료</li> <li>○ 사증발급편람 개정발간에 관한 시행문</li> <li>○ 사증발급제도개선에 관한 검토서</li> <li>○ 국가정보우선순위(PNIO) 자료 수집 및 자료 응신</li> <li>○ 선박업무 및 해상밀입국 방지관련 업무지시</li> <li>○ 선박업무 제도개선관련 공문</li> <li>○ 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li> <li>○ 대테러 및 경호안전관련 회의 참석</li> <li>○ 위·변조여권 관련 자료발간</li> <li>○ WTO 및 FTA 국제협상 업무</li> <li>○ 주한외국공관원 등 접촉</li> </ul>	출입국심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최종 확정 및 시행</li> </ul>	체류관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출입국관리법령 위반관련 기획수사</li> </ul>	체류조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인정신청자 접수 및 조사보고서 처리</li> <li>○ 난민인정여부 심사·결정</li> <li>○ 난민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처리</li> </ul>	국적난민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국적동포의 재외공관 사증발급승인 및 이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 자료</li> <li>○ 외국국적동포의 산하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승인 및 이와 관련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자료</li> <li>○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제도개선에 관한 검토서, 시행공문</li> </ul>	사회통합과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li> </ul>	운영지원과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소관 \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검 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공안기획과
검 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공안기획과
출입국	출국금지·정지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입국금지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입국규제 실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기 허가 및 폐기 관련 자료, 위탁관리관련 세부자료</li> <li>○범죄(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li> <li>○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보)</li> </ul>	각 부서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운영</li> <li>○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운영</li> </ul>	공안기획과
범죄예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출소심사회의 기초자료</li> <li>○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촉 및 해촉 승인 및 관리</li> <li>○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심사회의 기초자료</li> </ul>	보호법제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국심사 관련 업무지시 및 제도개선 검토자료</li> <li>○선박업무 및 해상밀입국 방지관련 업무지시</li> <li>○선박업무 제도개선 관련 자료</li> <li>○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li> <li>○입국금지 및 시종발급 규제자 결정과 관련하여 산하기관에서 보고한 자료</li> <li>○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입국규제에 관한 자료</li> <li>○입국금지해제 자료</li> </ul>	출입국심사과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검 찰	형사·공안사건의 범죄예방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의견 수렴·조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범죄예방 정 책	사회보호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법제과
	판결전 조사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관찰과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관찰과
	분류처우심사 등 수용처분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교과·생활성적 등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소년 외부행사 감호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위탁 소년이송 및 호송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보호소년 임시퇴원 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과
교 정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특이수용자 지정 및 처우 관련 문서	보안과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항	접견부 등 관련 문서	보안과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계구에 관한 사항	관련 지침	보안과
	분류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분류심사 및 가석방심사 관련 문서	분류심사과
출입국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	관련 지침	체류관리과
	출입국관련 사범 처리 업무	관련 문서	체류조사과
	동포 체류관리 업무	관련 문서	사회통합과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법 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관련 정보보고	국가송무과
검 찰	○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검찰과
검 찰	○ 사면실시 계획, 사면대상자 선정 및 관련 자료 ○ 형사사건의 분석 처리 및 보고	형사기획과
검 찰	○ 공안 관계법령의 제·개정 타당성 검토 및 입안 ○ 공안사건(국회의원 체포·구금 동의요구)관련 형집행 및 압수물 처리 지휘·감독 관련 문서 ○ 공안사건에 있어서 공공안전 위해요인 수집자료 ○ 공안사건의 검찰사무보고 감독 및 정보보고 ○ 공안사건에 있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 사건 분석 처리	공안기획과
검 찰	○ 범죄인 인도청구 및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 접수 ○ 국제형사사건관련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대책 ○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및 대책 ○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외국정부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 ○ 주한미군지위협정관련 미군 및 미군속사건 처리 자료 ○ 인신매매 관련 국제수사공조 및 정보공유 ○ 인신매매 방지위한 유관기관 회의 ○ 국제수형자 이송관련 국외이송 및 국내이송 ○ 외국인 범죄 통계현황 및 대책 ○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수사공조 자료(대검찰청의 수사협조요청서, 유관기관 등의 수사자료 및 정보제공서, 수사공조서, 정책 건의 및 통보서, 정책회의 및 보고서) ○ 국제수형자 이송관련 신청서, 확인서, 명령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국제형사과
범죄예방 정 책	○ 보호소년 등의 수용사고 처리 ○ 보호소년 등의 이송허가 상신 처리 ○ 보호소년 등의 퇴원허가 상신 처리 ○ 교과교육소년원 학사관리(졸업장)	소년과
교 정	○ 전국교정기관장회의 개최, 그 결과 평가 및 보고 ○ 교정인력 진단	교정기획과
교 정	○ 공안사범의 교육·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 내용	사회복귀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형자이송(형확정자 등, 개별처우자 등) 승인</li> <li>○교정사고에 대한 처리 관리·감독</li> <li>○공안사범 이송 승인</li> <li>○공안사범의 수용 전반 기본지침 및 정보사항 처리</li> <li>○수용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와 기본계획 내용</li> <li>○보안야간근무체계 개편 계획 수립</li> <li>○수용자 징벌제도 개선</li> <li>○무인접견관리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및 확충</li> <li>○경비교도 사고 등에 대한 정보사항 분석 및 대책 마련</li> </ul>	보안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석방심사 관련 서류, 자료 분류 및 재검토</li> <li>○가석방실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li> <li>○가석방 부적격 사유 발생여부 확인</li> <li>○가석방 집행·취소·실효</li> <li>○가석방 민원 및 진정 처리</li> <li>○가석방자 국외여행 허가여부 검토</li> <li>○가석방 통계, 가석방 관련 각종 지시 및 협조</li> </ul>	분류심사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석방 관련 정보보고</li> <li>○수형자자치제 현황</li> <li>○분류처우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 지시 및 보고</li> <li>○분류처우 관련 정보보고, 법령 제·개정 등</li> <li>○분류분과회의</li> </ul>	분류심사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결정통지서 등은 공개)</li> </ul>	의료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국규제자(출국금지·정지자, 연장, 해제 요청자) 접수 문서 및 입력 자료</li> <li>○출국규제자 관련 출입국정보시스템</li> <li>○외국인 동향에 관한 주한외국공관원 등 접촉 관련 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사항</li> </ul>	출입국심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동향조사요원 정원현황</li> <li>○불법체류외국인대책협의회 계획 수립 및 회의자료 내용</li> </ul>	체류조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국적동포 등 동포 관련 체류관리 지침</li> </ul>	사회통합과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중에 있는 문서	관련 문서	각 부서
	승진, 전보 등 인사계획	관련 문서	각 부서
	다면평가	관련 문서	각 부서
	근무성적평정	관련 문서	각 부서
법 무	법무자문위원회 및 산하특별분과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무심의관실
	법령안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자료	관련 문서	법무심의관실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공증인징계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무과
	공증인 서류검열 결과	관련 문서	법무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1·2차 시험과목별 성적분포, 과락율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2차 시험전체 성적분포, 과락율,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제3차 채점내역	관련 문서	법조인력과
감 사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지시	관련 문서	감사담당관실
	불시 감찰·조사계획	관련 계획	감사담당관실
출입국	귀화, 국적회복 및 결정이유	관련 문서	국적난민과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방문 관련 공문</li> <li>○ 감사수감 관련 자료, 감사결과 보고서</li> <li>○ 규제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 심사기준은 공개)</li> <li>○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특정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및 개인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만,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li> <li>○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다만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li> <li>○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li> <li>○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등)</li> <li>○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 지장을 주는 정보</li> <li>○ 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심의·협의·조사 자료 및 자체 검토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의 혼선 야기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li> <li>○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li> <li>②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li> <li>③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li> </ul> </li> <li>○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li> </ul>	각 부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포상에 관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li>○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li> <li>○ 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와 공개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회의자료</li> </ul>	각 부서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낭비사례 발굴 · 조치관련 답변문서</li> </ul>	기획재정 담당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품질관리카드 입력관리</li> <li>○ 자체 공무원제안 접수, 검토 의뢰 및 심사결과서</li> <li>○ 성과관리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li> <li>○ 규정 정비를 위한 자료 취합 및 개정안</li> <li>○ 응시원서 접수대장, 채용서류</li> <li>○ 다면평가계획서, 다면평가 결과분석서 및 순위명부</li> <li>○ 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li> <li>○ 인사심사자료, 인사심사요청 공문</li> <li>○ 국외훈련 다면평가서</li> <li>○ 조직진단 및 평가에 따른 결과분석과 대응방안</li> </ul>	행정관리 담당관실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법령 제 · 개정안의 초안, 확정된 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 조희,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된 의견,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법제처 심사의뢰, 심사중인 법령안 및 소관부령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필증</li> <li>○ 각 부처 법령자문에 있어서 제 · 개정법령안, 자료조사결과, 관련 실 · 국 · 본부로부터 제출된 의견 및 검토의견</li> <li>○ 타 실 · 국 · 본부 소관법령 · 훈령 · 예규 제 · 개정안에 대한 법령 (일반)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대상 법령 · 훈령 · 예규 제 · 개정안 및 자료조사, 검토의견</li> <li>○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상정안건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발표 자료</li> <li>○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조희 및 자료조사, 검토의견, 합의서 (의견서 및 합의담당관 서명 포함)</li> <li>○ 민사관계법령에 대한 연구 자료수집, 회의참가, 검토 및 계획</li> <li>○ 법무자문위원회 본회의 등 회의개최 준비, 회의자료 및 회의록</li> <li>○ 법무자문위원회 직원채용 시험문제 및 관련공문</li> </ul>	법무심의관실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징계 관련 서류(접수, 검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항)</li> <li>○ 공증사무소 관련서류 검열 및 시정지시</li> <li>○ 변호사법령 개정안 및 의견조회</li> <li>○ 공증제도 개선관련 의견조회, 검토의견서 작성</li> <li>○ 공증관련 법령개정안 초안 작성 및 의견조회</li> <li>○ 공익법무관관련 법령개정안 초안 작성 및 의견조회</li> </ul>	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약 등 국제협약안에 대한 법률의견요청서 접수 공문, 법률검토, 의견회신 내용</li> <li>○ 외교통상부의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의뢰 접수, 법률검토 및 의견회신 내용</li> <li>○ 각국 협상동향 전문, 각국 협상동향 보고서</li> <li>○ 법률시장개방 관련 협상대응 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부처 대책 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li> <li>○ APEC회의 관련 접수공문 및 전문, 결재 문서</li> <li>○ 국제상거래협약 관련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li> <li>○ FTA 협정체결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관계부처의 대책회의 및 국제회의 참석자료</li> <li>○ OECD 동향에 대한 접수공문 및 전문, 결재 문서</li> <li>○ WTO 서비스 전문, 검토 및 결재 문서</li> <li>○ WTO 접수공문 및 전문, 검토 및 결재 문서</li> <li>○ 법무협력관 관련업무보고</li> <li>○ 통상관련 자료수집, 의견조율, 참가여부 결정, 협상준비자료</li> <li>○ 법무협력협정 체결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li> <li>○ 법무협력 교류대상국 선정을 위한 실무자 접촉 및 교류방안</li> <li>○ 법제정비지원 대상국 선정 및 지원방법</li> <li>○ 국제거래법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자료 및 국제협약가입 추진 절차</li> </ul>	국제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관련 정보보고</li> <li>○ 국가배상심의회 자료</li> </ul>	국가송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승인·북한주민접촉신고·사업자승인·물자반출입 승인에 대한 의견</li> <li>○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의견</li> <li>○ 중요사항 법적 자문·검토의견</li> <li>○ 교류협력추진협의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회의 의견</li> </ul>	통일법무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검토보고서</li> <li>○업무처리 관련 지침</li> <li>○비공개 회의 내용, 자료</li> </ul>	통일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법령 제·개정안의 초안, 심사중인 법률안, 관계부처의 의견 조희, 입법예고된 안에 대한 외부기관 의견</li> <li>○각 부처 법령자문에 대한 법령검토 및 관련 실·국·본부의 자료 조사에 관한 의견조회</li> <li>○타 실·국·본부 소관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법령(상사) 자문 검토 및 자료조사, 검토의견</li> <li>○상사관계법령, 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수집, 회의참가, 검토 및 입법 추진 계획</li> <li>○상사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조사, 제·개정 필요성 검토의견</li> <li>○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심사, 지정,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관련 자료</li> <li>○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심사, 지정,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관련 자료</li> <li>○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준비, 회의자료 및 완성 되기 전의 회의록</li> </ul>	상사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법시험 1차시험 합숙출제</li> <li>○사법시험 2차시험 합숙출제 및 채점기준표</li> <li>○사법시험 3차시험 시험위원 위촉 및 질문에</li> <li>○신규시험위원 후보자 명부</li> <li>○문제은행관리</li> <li>○사법시험 제1·2·3차 시험장 사용 협의</li> <li>○인터넷 접수된 응시원서</li> <li>○사법시험 제1·2·3차 시험 집행을 위한 각종 자료</li> <li>○사법시험 제3차 시험 실시계획 및 채점표</li> <li>○사법시험 제1차 시험 문제지 제작, 배송 및 채점</li> <li>○사법시험 제2차 시험 채점</li> <li>○면접 채점표 점수 입력</li> <li>○사법시험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li> <li>○사법시험관리위원회 운영</li> <li>○사법시험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li> <li>○사법시험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유지보수 및 개편</li> </ul>	법조인력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검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검찰과
검찰	○경제사범관리위원회 개최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관련 중요사안 파악, 대처 지시, 지시사항 등 점검 및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불법행위 엄정대처 지시 및 지시사항 등 점검 ○형사사건 수사지휘관련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사면 실시 계획, 처리지침 및 대상자 선정 작업 ○피의자 보상심의회 회의 소집 ○마약류보상금지업무 ○형사관계특별법령 제·개정 타당성 검토 및 의견조회 ○형사사건의 검찰 정보관리 ○수사상 인권침해사건의 사안 파악 및 조치	형사기획과
검찰	○공안관계법령의 제·개정 검토	공안기획과
검찰	○형사관계특별법령 제·개정 계획안 의견조회 ○사법개혁 법안회의 계획 수립, 회의 준비, 회의록 및 보고서 ○형사법 개정회의 계획 수립, 회의 준비, 회의록 및 보고서	형사법제과
범죄예방정책	○소년 가석방·임시퇴원 허가·취소 안건 검토 ○보호관찰 가해제 취소 및 보호관찰 정지해제 안건 검토	보호법제과
범죄예방정책	○소년보호행정관련 법령 제·개정관련 정부입법계획, 의견취합	소년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내용 및 관련 자료 ○인권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의뢰 내용 및 자체 검토 내용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관련 위원회 회의 내용 ○UN 인권기구 개인 진정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내용 ○인권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정부 의견 ○인권규약 정부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 내용 및 관련 자료	인권정책과
인권	○인권침해 예방, 실태점검, 인권교육 및 제도개선 건의 ○인권옹호자문단 운영	인권조사과
교정	○산하 교정기관 순회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민영교도소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교도관 복제 자체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	교정기획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li> <li>○ 교정캐릭터 및 휘장류 개선 계획, 의견조회 및 연구용역 의뢰</li> </ul>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교정기관장회의 개최</li> <li>○ 교정인력 진단 기본계획 등</li> </ul>	교정기획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교육생 선발보고서</li> </ul>	사회복지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야간근무체계 개편 계획 수립</li> <li>○ 경비교도대 법령 등 개정계획, 개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li> </ul>	보안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결정통지서 등은 공개)</li> </ul>	의료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대정부 질문 대응</li> <li>○ 출입국 관련 비밀 소유 및 인가자 현황</li> </ul>	출입국기획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 법령 제·개정</li> <l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li> <li>○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li> <li>○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자료, 위원회 개최</li> <li>○ 외국인정책 제출자료 타당성 검토</li> </ul>	외국인정책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규제 외국인 입국허가 검토 및 결정</li> <li>○ 무사증 입국대상 국가지정</li> <li>○ 입국심사제도개선</li> <li>○ 사증면제협정 등 출입국 관련 협정사항에 관한 검토</li> <li>○ 사증발급제도개선에 관한 검토안</li> <li>○ 사증발급편람 개정발간에 있어서 자료수집 등</li> <li>○ 선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수집자료 및 확정</li> <li>○ 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심사업무 관련 개선계획 및 협의</li> <li>○ 남북왕래자 출(입)경심사 관련 개선계획 및 협의</li> <li>○ 출국규제에 관한 이의신청 관련 결정</li> <li>○ 외국인 출국정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결정</li> </ul>	출입국심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외국인력회의 회의자료 작성, 참석 및 사후관리</li> <li>○ 외국인력제도 개선 공문, 자료수집, 의견수렴, 검토안 및 최종확정안</li> <li>○ 외국인보호명령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li> <li>○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관련 통계 및 추세분석</li> <li>○ 보호외국인 안전관리 대책수립관련 안전사고 수집자료</li> <li>○ 외국인 보호시설 현황 및 문제점</li> <li>○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의 적정성 및 기록관리</li> </ul>	체류관리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운영</li> <li>○ IOM 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유치계획안 수립, 협의자료 및 체결서 등</li> <li>○ 체류심의조정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거소신고지침 제·개정 개선 요구자료 수집, 타당성 검토, 의견조회 및 개선안 마련</li> <li>○ 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른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li> <li>○ 외국적동포 관련 자료수집</li> <li>○ 외국적동포 관련 정책요구 분석 및 관련 자료 수집</li> </ul>	사회통합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개선계획 수립, 자료 수집, 연구검토 및 결과보고서</li> <li>○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사업 추진결과보고서 접수, 결함 사항 등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li> </ul>	정보팀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청에 대한 감사자료</li> <li>○ 검찰활동을 통해 수집된 비위자료 처리</li> <li>○ 법무부 검찰위원회관리</li> <li>○ 검찰업무</li> </ul>	감찰담당관실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관한 자료</li> <li>○ 감사원 위탁민원 처리 및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청구</li> <li>○ 본부 및 소속기관 일상감사</li> <li>○ 부내 부분감사 및 종합감사</li> <li>○ 일상감사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자료</li> <li>○ 본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감사자료</li> <li>○ 소속기관 등 감사결과 이의신청 관련 자료</li> <li>○ 공직자 비위 직무감찰 관련 특별감사</li> <li>○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대행 명령</li> <li>○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 협력</li> <li>○ 공직기강확립추진 및 평가</li> <li>○ 부패방지대책 추진</li> <li>○ 공무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관련</li> <li>○ 일상감사 의뢰 및 일상감사 내용 반영여부 확인</li> </ul>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 정기보안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li> <li>○ 보안업무 수행지침 시달 및 실국의 세부시행계획 취합</li> <li>○ 취합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보안위원회 심의요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li> <li>○ 보안업무심사분석 결과 취합</li> </ul>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합된 보안업무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안위원회 심의요구 자료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내용</li> <li>○ 연도 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통보</li> <li>○ 보안업무내규 개정(안), 개정자료, 검토요청</li> <li>○ 보안업무내규 개정(안)에 대한 보안위원회 심의요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li> <li>○ 소속기관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자료 취합 및 통보</li> <li>○ 폐기심의회 의결에 의한 폐기기록물 목록</li> <li>○ 이의신청 관련 의견조회</li> <li>○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li> <li>○ 재분류 대상 목록에 대한 처리과 공개여부 의견조회, 비공개연장 신청목록</li> </ul>	운영지원과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각 부서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예비군 편성·교육훈련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li> <li>○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관련 국방부 및 법무부 교육훈련계획</li> <li>○ 민방위 편성 운영 및 자원전수조사 실시계획, 민방위 교육훈련</li> </ul>	비상계획관실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 접수, 임용관련서류 및 채용서류</li> <li>○ 승진후보자 및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인사심사 자료</li> <li>○ 다면평가계획, 다면평가결과분석 및 순위명부</li> <li>○ 근무성적평가 실시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li> <li>○ 직무성과계약 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운영실태 조사</li> <li>○ 승진심사 다면평가 및 성과급 다면평가</li> <li>○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li> <li>○ 소청심사 변명자료, 출석관련 자료</li> <li>○ 외부전문가 등 특별채용</li> <li>○ 전직시험 실시 및 인사발령</li> <li>○ 휴직복직 신청</li> <li>○ 제2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자료 작성</li> <li>○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자료, 심의자료 및 회의록</li> <li>○ 징계처분 관련 자료</li> <li>○ 각종 혁신협의회 구성 운영</li> </ul>	행정관리 담당관실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li> <li>○ 법무자문위원회 직원 채용관련 임용서류 등</li> </ul>	법무심의관실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징계 관련서류 접수 및 검토</li> <li>○ 공증인 징계서류 접수 및 조사,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정</li> <li>○ 변호사법령 개정안</li> </ul>	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거래법 관련 국제회의 참가자 선발 관련 자료</li> </ul>	국제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정보보고</li> <li>○ 국가배상심의회 자료</li> </ul>	국가송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li> </ul>	상사법무과
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험종사요원 선발 및 교육</li> <li>○ 사법시험에 접수된 응시원서</li> <li>○ 사법시험 제1·2차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관리요원 배치표</li> <li>○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성적부, 합격자 대장</li> <li>○ 사법시험 제2차시험 성적부, 합격자 대장, 답안지 열람신청서</li> </ul>	법조인력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범관리 및 경제사범의 위반 실태 파악·조치</li> <li>○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개최</li> <li>○ 사면대상자 선정 작업, 사면자료 및 유공자 표창 내용</li> <li>○ 마약류보상금지급 업무</li> <li>○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개최</li> <li>○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 관리</li> <li>○ 사형집행절차</li> <li>○ 국회의원 체포·구속 시 체포·구금 절차</li> <li>○ 수사상 인권침해사건 관련 사안 파악</li> <li>○ 수사상 인권침해사건 관련 민원접수·처리</li> </ul>	형사기획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사건(국회의원체포·구금 동의 요구) 형집행 및 압수물 처리 지휘·감독</li> </ul>	공안기획과
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법 개정회의</li> </ul>	형사법제과
범죄예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소심사회의 기초자료</li> <li>○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해촉 승인 및 관리</li> <li>○ 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심사회의 기초자료</li> <li>○ 소년 가석방·가퇴원 허가·취소 관련 자료</li> <li>○ 보호관찰 가해제 취소 및 보호관찰 정지해제 관련 자료</li> </ul>	보호법제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범죄예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소년 등의 이송·퇴원허가 상신 관련 자료</li> <li>○ 교과교육소년원 입학 및 전·편입학, 검정고시, 졸업장 발급</li> <li>○ 보호소년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li> <li>○ 소년보호위원 위·해촉 추천 대상자 접수</li> </ul>	소년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하교정기관 순회점검 확인서 등</li> </ul>	교정기획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형자이송(형확정자 등, 개별처우자 등) 승인</li> <li>○ 공안사범 이송 접수, 지시</li> <li>○ 공안사범의 청원</li> <li>○ 경비교도 배치, 신상 등에 관한 사항</li> </ul>	보안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조사내용 등(본인의 청원서나 접수증명원, 청원결정통지서 등은 공개)</li> </ul>	의료과
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석방 심사 관련 자료(신청서류, 심사 및 신상조사표, 보호관찰사안조사서 등)</li> <li>○ 가석방심사실무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li> <li>○ 가석방 집행·취소·실효 등</li> <li>○ 가석방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li> <li>○ 가석방자 해외여행 허가여부 검토</li> <li>○ 가석방 통계, 가석방 관련 각종 지시 및 협조, 국회요구자료</li> <li>○ 가석방 관련 정보보고</li> <li>○ 가석방 관련 법령 제·개정 등</li> <li>○ 수형자자치제 현황</li> <li>○ 분류처우 관련 민원 및 진정 처리</li> <li>○ 분류처우 관련 정보보고</li> </ul>	분류심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규제 외국인 입국허가 관련 자료 및 입국규제 외국인 일시해제 관련 자료</li> <li>○ 재외공관 사증발급승인(일반·중국) 관련 자료</li> <li>○ 산하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승인(일반·중국)관련 자료</li> <li>○ 산하기관에서 보고한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자 확정 내용 및 이에 관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자료</li> <li>○ 입국금지해제 계획 및 해제</li> <li>○ 국가정보우선순위(PNIO) 자료 수집 및 자료 응신</li> <li>○ 출국규제자(출국금지·정지자, 연장자, 해제자) 관련 접수, 입력 조치 및 이의신청 처리</li> <li>○ 국민 출국 금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의견조회, 결정</li> </ul>	출입국심사과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출국 정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의견조회, 결정</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입국규제 및 이에 관한 출입국관리 자료</li> </ul>	출입국심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조사요원, 사무소별 정원조정 등</li> <li>○ 외국인보호명령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서 송부</li> </ul>	체류조사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회의자료</li> <li>○ 외국적동포 관련 수집자료 검토서</li> <li>○ 외국적동포 관련 정책수요, 환경분석 및 의견수렴</li> <li>○ 재외동포 법률상담</li> </ul>	사회통합과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개선계획, 자료수집, 연구 및 검토, 결과보고서, 평가서</li> <li>○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li> <li>○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li> <li>○ 대외기관의 정보연계 제공</li> <li>○ 위변조 자료수집 분석, 관계기관과의 자료 공유, 국제교류 및 산하 기관 전파 공문</li> <li>○ 출입국자 통계 개정편람</li> </ul>	정보팀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 조치</li> <li>○ 법무부소속 공무원 재산등록 중 금융조회 및 재산등록</li> <li>○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자료</li> <li>○ 선물신고제도안내 및 선물 이관</li> <li>○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li> <li>○ 병역사항신고 안내 및 병역사항신고의무자 관련 인사자료</li> <li>○ 부조리 신고관련 보상금 등 지급과 관련한 자료</li> <li>○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 자료</li> <li>○ 검찰청에 대한 감사자료</li> <li>○ 정보보고 및 검찰사무보고 관리</li> <li>○ 감찰활동을 통해 수집된 비위자료</li> </ul>	감찰담당관실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위탁민원 처리</li> <li>○ 일상감사결과 이의신청</li> <li>○ 소속기관 등 감사결과 이의신청</li> <li>○ 공직기강확립추진 관련 공직기강 유공공무원 공적조서</li> <li>○ 공직자 행동강령</li> <li>○ 공무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관련</li> </ul>	감사담당관실

•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수당신청서, 공제신청서 등 급여 신청자료</li> <li>○임대주택 입주 신청, 입주예정자 명부, 고지 및 계약, 퇴거신청 및 계약해지</li> <li>○선택적 복지신청서</li> <li>○정부보관금납부서, 정부보관금 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li> <li>○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신원조회, 인가증 교부 및 회수·파기</li> <li>○각종 출입증 발급신청서, 차량출입증 발급 요청, 차량출입증 발급 대장, 청사출입증 발급요청서</li> </ul>	운영지원과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정보는 제외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교 정	수용자 위탁·외부통근 작업업무	외부기업체와 계약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	직업훈련과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 법인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li> <li>○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사업활동에 따른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li> <li>○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li> <li>○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li> <li>○ 특정업체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li> </ul>	각 부서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적동포 관련 자료 및 책자 편집·교정</li> <li>○ 외국적동포 정책 최종안</li> </ul>	사회통합과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각 부서

(2) 구체적 예시

소관	업무내용	관리부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청구인과 정보제공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li> <li>○ 법무시설 개발 등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각 부서
출 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적동포 관련 정책 수립</li> </ul>	사회통합과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매각 공고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운영지원과

[별표 4] (제21조 관련)

검토의견서

200 . . 0000과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처 리 기 한			회 신 기 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검 토 대상 정보				
공 개 여 부		<input type="checkbox"/> 부분공개 (0항) <input type="checkbox"/> 비 공 개 (0항)		
근 거 법 령				
주 무 과 검 토 의 견				
참 고 사 항				

## V. 비공개 결정처분의 통지 표준화 방안

### 1. 개요

공개청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의 근거와 사유제시 방법을 표준화하여 법무 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향상

### 2. 시행배경

- 비공개 사유 제시방식이 부서·기관 또는 담당자별로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왔음
- 비공개 결정통지시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제시하여 불복신청율이 매년 증가(100%)하는 추세

### 3. 추진경과

- 2005년도 법무행정 정보공개 혁신계획 수립 ('05. 4.)
  - 「비공개 처분 결정통지서 표준모델 개발」을 실행과제로 지정

### 4. 개선방안 :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통지 표준서(별첨)」 적용

“공개청구 → 검토 → 비공개 결정통지 사항 → 표준모델 적용”

#### 가. 적용원칙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사유와 근거” 제시는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통지 표준서」(이하「표준서」라고 함, 별첨)를 적용하여 작성, 통지함(원칙)
- 「표준서」 적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표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예외)
  -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자체평가시 「표준서」 적용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나. 적용방법

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란에 “별첨”이라고 표시함

2)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별첨 「표준서」의 「결정근거 및 결정사유별 표준모델 (첨부 1)」을 비공개결정 처분통지 표준서인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사유서”에 적용하여 작성함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사항이 1개 이상이거나 혼합되어 있는 경우 「표준서」의 “표준모델 적용사례(첨부 2)”와 같이 “비공개·부분공개, 비공개 대상정보별 등”으로 적용하여 작성함

《결정근거 및 결정사유별 표준모델》  
(법 제9조의 「비공개 근거」 별로 적용)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모델
부분공개	제9조 제1항 제1호	모델 1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모델 2
	제9조 제1항 제6호	모델 3
비 공개	제9조 제1항 제1호	모델 4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모델 5
	미작성, 폐기 등으로 미보유·미관리 정보	모델 6
	폐기 등으로 미보유·미관리 정보	모델 7
	청구정보 불명확 등으로 보정요청이 필요한 경우	모델 8

※ 적용방법 : 별첨 「표준서」의 “표준모델 적용사례(첨부 2)” 참고하기 바람

3)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서에 「표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 통지

다. 시행일자 : '05. 8. 8.부터 시행

## 5. 기대효과

-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비공개 처분의 사유 제시로 국민 신뢰도 제고 및 이의신청 등 불복제기율이 감소
- 비공개 사유서 작성이 용이하고 작성시간이 단축되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결정통지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
- 행정편의 또는 자의적 비공개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인한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 촉진으로 행정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

(표준서)

## 정보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 사유서

### 1. 결정근거

-----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근거 기재란 -  
- “첨부 1”의 비공개 근거별「결정근거」 제시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기재 -  
-----

### 2. 결정사유

-----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기재란 -  
- “첨부 1”의 비공개 근거별「결정사유」 제시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  
-----

위 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과, 홍길동, 전화 : 02-123-1234)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1)

## 「결정사유 및 근거 제시」 표준모델

[공개청구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공개청구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음

## 《 부분 공개 시 》

[모 델 1 :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적용]

### 1. 결정근거

공개청구한 ○○○에는 다른 법률 등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 2. 결정사유

공개청구 정보인 ○○○○○에는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 **등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 델 2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적용]

## 1. 결정근거

공개청구한 ○○○○○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교정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 2. 결정사유

공개청구 정보인 ○○○○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 ○○○ 등 교정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수용자 탈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 델 3 :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적용]

## 1. 결정근거

공개청구한 ○○○○○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 2. 결정사유

공개청구 정보인 ○○○○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 공 개 시 》

[모 델 4 :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적용]

### 1. 결정근거 (비공개 대상정보)

공개청구한 ○○○은 ○○법률에서 비밀로 정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 2. 결정사유

공개청구한 ○○○○은 ○○○법률 제○조에 의거하여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델 5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적용]

### 1. 결정근거 (비공개 대상정보)

공개청구한 ○○○은 비공개 대상정보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함

### 2. 결정사유

공개청구한 ○○○○은 ○○등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수용자 탈주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델 6 : 미작성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적용]****1. 결정근거**

공개청구한 ○○○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함

**2. 결정사유**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임  
 공개청구한 ○○○○는 우리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델 7 : 폐기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적용]****1. 결정근거**

공개청구한 ○○○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함

**2. 결정사유**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임  
 공개청구한 ○○○○은 우리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보존기간(작성 : 2001. 5월, 보존기간 : 3년)이 경과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2005. 3월 폐기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 델 8 : 청구정보의 불명확 등으로 보정요청이 필요한 경우 적용]

### 1. 결정근거

공개청구한 ○○○은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비공개함

### 2. 결정사유 (청구내용 불명확시)

공개청구한 ○○○○는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우리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청구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재청구하신다면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결정사유 (청구 기간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개청구한 ○○○○는 청구기간 또는 청구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 청구기간, 청구부서 또는 청구범위 등을 특정하여 재청구하신다면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2)

## 표준모델 적용사례

## 《 청 구 사 례 》

청구정보 가운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사항	결정내용	비 고
1) 법무 교도소·구치소 등 감사의 목적	미 보 유	미작성
2) 2005년 대구 감사 내역	비 공 개	보정요청
3) 사법시험 채점표 및 답안지	비 공 개	제1호
4) 도산법 권고안 연구보고서	비 공 개	제4호
5) 2008년도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대장	부분공개	제6호
6) 계호업무지침	부분공개	제4호
7) 중번순찰제운영규칙	비 공 개	제4호
8) 1992년도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대장	미 보 유	폐기
9) 난민여행증명서 건본 송부	비 공 개	제1호 (비밀)
10) 기록물등록대장	비 공 개	보정요청

## 《 적용 사례 》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사유서

#### 1. 결정근거

- 가. 공개청구한 “3) 사법시험 채점표 및 답안지”에는 다른 법률 등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
- 나. 공개청구한 “9) 난민여행증명서 견본 송부”에는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정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 다. 공개청구한 “6) 계호업무지침”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교정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
- 라. 공개청구한 “4) 도산법 권고안 연구보고서, 7) 중번순찰제운영규칙”은 각각 비공개 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과 교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마. 공개청구한 “2008년도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대장”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
- 바. 공개청구한 “1) 법무 교도소·구치소 등 감사의 목적, 8) 1992년도 민원 사무 접수 및 처리대장”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함
- 사. 공개청구한 “2) 2005년 대구 감사 내역, 10) 기록물등록대장”은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비공개함

## 2. 결정사유

- 가. 공개청구 정보인 “3) 사법시험 채점표 및 답안지”에는 사법시험법 제18조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
- 나. 공개청구 정보인 “9) 난민여행증명서 견본 송부”에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
- 다. 공개청구 정보인 “6) 계호업무지침”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수용자의 구체적 관리기법, 계호방법 및 근무자 유의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교정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수용자 탈주사고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
- 라. 공개청구한 “4) 도산법 권고안 연구보고서”는 법안의 정책방향과 세부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는 중요자료로써 법안이 성안되기전에 이를 공개하는 경우 통합도산법안의 방향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기 다른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게 되어 법무부의 통합도산법안 제정 추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으며,
- 공개청구한 “7) 중번순찰제운영규칙”은 교정공무원 순찰에 관한 근무교대 시간 및 순찰시간, 근무개소별 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정공무원의 근무패턴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교정사고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
- 마. 공개청구 정보인 “2008년도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대장”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
- 바.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으로

공개청구한 “1) 법무 교도소·구치소 등 감사의 목적”은 우리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청구한 “1992년도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대장”은 우리부에서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보존기간(작성 : 1992. 1월, 보존기간 : 1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 제22조 및 같은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2003. 9월 폐기되어 공개할 수 없음

사. 공개청구한 “2) 2005년 대구 감사 내역”은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우리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청구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재청구하신다면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공개청구한 “10) 기록물등록대장”은 청구기간 또는 청구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 청구기간, 청구부서 또는 청구범위 등을 특정하여 재청구하신다면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과, 홍길동, 전화 : 02-123-1234)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위 적용사례는 표준모델 적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이므로 예시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의 근거와 사유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VI. 비공개 결정 등 통지시 안내문 발송 계획

### 1. 목적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시 결정근거와 그 사유만을 통지하여 청구인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비공개 결정 등 통지시 안내문 추가 발송

### 2. 시행배경

- 대상정보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시 결정근거 및 결정사유만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어 청구인들의 불만 초래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시 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복신청을 최소화 하고 고객 만족도 증진

### 3. 추진경과

- 「'08년도 법무행정 정보공개 추진계획」에서 실행과제로 설정 ('08. 5.)

### 4. 개선방안

#### 가. 안내문 내용(예시)

사례 1)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우리부에서 작성되었거나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 청구내용과 관련있는 ○○기관에도 문의하여 이송 조치하려 하였으나, 문의기관에서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비공개 결정·통지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유사한 정보를 취득할 경우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 ○○과 ○○○(전화 : 02-2110-○○○○)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내용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명기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부득불 부분공개한 것으로서, 만일 자신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인적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스팸

메일 등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기관도 개인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 〇〇과 〇〇〇(전화 : 02-2110-〇〇〇〇)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나. 통지방법

- 결정통지서 통지시 불입자료인 “결정내역” 맨 끝장 하단 공간을 이용하여 기재·통지
- 불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뒷장에 첨부하여 통지

## 5. 기대효과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보를 받더라도 피청구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고 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각인
- 피청구기관의 정책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간접적인 정책홍보효과 기대

## 6. 행정사항

-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후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시 안내문 통지에 적극 협조 바람.

## Ⅶ.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표준 문안

### 1. 배경

- 정보공개결정내역 작성시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상의 비공개 표준모델 활용도가 낮고 사무적인 문구 사용으로 인한 공감대 부족으로 이용자 만족도 저조
- 청구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 실시 및 청구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결정 유형별 표준 문안을 마련, 결정 내용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

### 2. 표준 문안

#### ▶ 시작 인사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한 이미지로 다가서기

○○○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찾아주셔서(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본문

청구정보에 대한 보유여부 및 보유에 따른 공개실시 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적시는 물론 근거 및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비공개(부분공개)에 따른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별첨(유형별 표준문안) 참조〉

## ▶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공개처리 내용 관련 인사 및 처리(주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청구정보에 대한 결정내용이 미흡하였거나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닥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0000과(팀) 000(☎ 02-2110-0000) >*

### 3. 협조사항

- 유형별 표준문안 예시(붙임)를 참고하여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더 좋은 문안을 준비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하기 바람
  - ※ 인사말·본문 작성 시 청구인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작성

(별첨)

## 결정유형별 표준문안 예시

## □ 공개결정

## 1. 청구정보가 명확한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 정보명 : 000(수량 : 000매)

수수료 총액 : 000원(수수료 : 000원, 우송료 : 00원)

※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우송료는 우표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납부 즉시 위 정보를 송부하겠습니다.

## 2. 청구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귀하께서 공개 청구하신 정보는 “……”로 판단되지만 우리기관에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와 유사한 정보인 “……………  
……”로 특정하여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정보명 : 000(수량 : 000매)

수수료 총액 : 000원(수수료 : 000원, 우송료 : 00원)

※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우송료는 우표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납부 즉시 위 정보를 송부하겠습니다.

## 3. 청구정보가 홈페이지, 간행물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경우

## ○ 소재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의  
해석상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현재까지 공표(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일반에 이미 공표(공개)된 청구정보 “……………  
……………”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청구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정보의 공개위치(법제처 홈페이지 등)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같음하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

「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검색(……………)

## □ 부분공개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정보명 : ○○○
- 공개내역(수량 : ○○매)
  - 공개부분 : .....
  - 공개정보 수량 : ○○매
  - 비공개부분
    -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호
    - 비공개 사유 : “비공개 결정처분의 통지 표준화 방안” 참조
- 수수료 총액 : 000원(수수료 : 000원, 우송료 : 00원)
  - ※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우송료는 우표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납부 즉시 위 정보를 송부하겠습니다.

## □ 비공개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합니다.

- 비공개 정보명 : ○○○
- 비공개 근거 및 사유
  -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호
  - 비공개 사유 : “비공개 결정처분의 통지 표준화 방안” 참조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닥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0000과(팀) 000 (☎ 02-2110-0000)>

## □ 전화 등을 통해 청구인과 응대하는 경우

- 정보공개청구서 가장 먼저 응대하는 사람은 정보공개담당자로서 첫 번째 응대가 피청구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므로 응답자의 작은 반응이라도 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친절한 응대가 요망됨

### 바람직한 응대 요령

-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례지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양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처리기간을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 “이건 이런 이유로 비공개정보인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바람직하지 아니한 응대 요령

- “거기 뭐하는 데냐?”, 또는 “뭐 하는 사람이냐?”
- “무슨 목적으로 이런 청구를 하느냐?”
- “왜 이리 많은 것을 청구하느냐?”
-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냐?”
- “바빠서 기일 못 지켰는데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
- “와서 열람해라”
- “답답하면 소송해라”

## Ⅷ.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안내제

### 1. 추진배경

- 정보공개 청구건수 과다 및 시스템(업무망과 외부망)의 분리로 정부통합메일로 통지된 접수상황이 확인 곤란하여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도과되거나 기일을 경과하여 연장 통지하는 사례 다수 발생

### 2. 추진계획

- 대상 : 법무부(본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청구건
- 내용 : 청구건별 처리실태 확인 및 처리기한 안내메시지 발송
- 방법 : 법무샘 메모 또는 전화(부재시 SMS 문자 발송)

단 계	시 기	수신대상자	안내방법	안내내용
1단계	종료 5일전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처리자	· 1개 부서에 5건 이상 청구된 경우 · 처리부서가 3개 이상 에 걸쳐있는 경우	- ○월○일 접수된 ○○○의 정보공개 처리기한이 ○월 ○일입니다.
2단계	종료 2일전	담당사무관	· 청구정보에 대하여 미처리 중인 경우	- ○월○일 접수된 ○○○의 정보공개 처리기한이 ○월 ○일입니다. 기한내 처리 요청합니다.
3단계	종료 1일전	정보공개처리자 담당사무관	· 청구정보에 대하여 미처리 중인 경우	- 정보공개 처리 마감 하루 전입니다. 금일중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연장하실 경우에는 청구인 에게 지체없이 연장통지 하기 바랍니다.

- 절차 : 1차 메시지 발송 후에도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단계별(2차·3차) 메시지를 발송하여 신속 처리하도록 독려
- ※ 1차 안내메시지는 처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와 처리자에게 모두 발송하여 해당부서의 정보공개 처리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함

### 3. 기대효과

- 정보공개의 신속한 처리 및 절차 준수를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증진
- 처리기한 사전안내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처리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

### 4. 협조사항

-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처리기한 지체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IX.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안내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안내문

1. ‘접수일자’, ‘접수번호’란은 공공기관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청구인’란은 이름, 주소 등 청구인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 가. ‘이름’란에는 개인의 경우 이름, 법인의 경우 법인명 내지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나. ‘주소’란에는 개인 내지 법인의 주소 내지 생활의 근거되는 곳(수용자의 경우 수용기관 주소)을 기재합니다.
  - 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내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라.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수용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마. ‘전화번호’란에는 일반전화 내지 개인휴대폰번호를 기재합니다.(수용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바. ‘전자우편주소’에는 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수용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정보내용’에는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는 동법상의 공개 청구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 2000. 4.28.선고 2000구4179판결)

※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그 목적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8.24.선고 2004두2783판결)

4. ‘공개형태’는 공개시 정보의 형태를 표기(V)합니다.
  - 가. ‘열람·시청’은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사본·출력물’은 복사물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 ‘전자파일’은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라. ‘복제·인화물’은 인화물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수령방법’은 청구인이 청구정보 수령시 원하는 방법을 표기(V)합니다.
  
6.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접수증’은 공공기관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대표자)	홍 정 보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681025 - 1234567
	주 소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 양동 123-45번지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031) 123 - 4567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07.7.2.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 교도소 수용중에 하의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07.8.4.접견표, 2. '07.8.1부터 9.15까지 청구인 관련 소송서류 수·보낸 기록		
공 개 형 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령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수료 감 면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7 년 11 월 28일				
청 구 인 홍 정 보 (서명 또는 인)				
○ ○ 교 도 소 장 귀 하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X. 중요 결정 사례

### 1.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1) 공공기관은 이미 공표(공개)된 청구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개 정보의 위치를 안내하는 것으로 공개결정에 갈음할 수 있음

#### 결정 사례

- 청구인 : ○○○(000교도소 수용중)
- 청구정보 : 2008년 법무부 정보목록
- 결정구분 : 공개
- 공개내용
  - 공개 청구한 “2008년도 정보목록”은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로서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정보의 소재(위치) 및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으로 공개에 갈음하겠습니다.
  - 공개청구하신 ‘2008년도 정보목록’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 → 「법무서비스」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정보목록」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배상결정례 : 서울지구배심2008국배제44호

사 건 : 서울지구배심2008국배제44호

사고유형 : 공무원의 불법행위

청 구 인 : 사 ○ ○(00 교도소)

주 문 : 이 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행정안전부에 200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신청인이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보소재안내로 그 공개방법을 변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조 사 결 과

### □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판단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성실하고 평균적인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함.(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에 접속하여 열람, 저장, 사본·출력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이미 공표(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결국 이미 공개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고,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소재안내로 답변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임.

## 2. 불특정 정보를 일괄 청구하는 경우

- 가. 정보공개법의 규정 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그 실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한정되어 있음
- 나. 청구인은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도록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결정 사례

- 신청인 : ○○○
- 청구정보 : 2005년 이후 00국 산하기관에 시달한 지시공문 일체
- 결정구분 : 비공개
- 결정사유
  -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출력물을 교부하는 것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그 실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한정되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은 그러한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도록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서울행법 2004. 4.28. 선고 2000구 4179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 판례 : 서울행법 2000. 4.28. 선고 2000구4179 판결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서대문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1.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9.12.24. 피고에게 ① 1962. 9.20.경 서울 중구 만리동 1가 일대로 개설에 따라 철거민들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79의 114(하천 642평) 일대를 이주정착지로서 임시, 무상으로 점유하게 한 조건의 문서, ②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 주택개량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581호)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① 문서는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2. 판 단

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동법에서의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 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는 이것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서울특별시가 1961. 7.30.경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서울 중구 만리동 1가 소재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연희동 하천부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승계취득한 연희동 하천부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이 도로 개설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들로 하여금 임시, 무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문서가 있을 것임에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자료가 없다는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61년 당시 서울 중구 만리동 1가 일대에 도시계획사업 및 이에 따른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을 실시한 주체는 서울특별시로서, 피고가 1992. 3.10. 승계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연희동 하천부지를 양도받으면서 위 도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당시 철거민들에게 연희동 하천부지 일대를 점유하도록 한 문서를 넘겨받았다거나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일로부터 약 30년 가까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들로 하여금 임시, 무상으로 연희동 하천부지 일대를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철거민들에게 연희동 하천부지 일대의 점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가운데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단32598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서울특별시나 피고와 사이에 연희동 하천부지 부분의 점유와 관련한 대부나 무상사용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①의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영수증 등의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매출전표·영수증 등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써 보호받아야 함

#### 결정 사례

- 신청인 : ○○○
- 청구정보
  - 법무부장관 역임 후의 총 활동내역서
  -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법무부 관계 위원회의 판공비 총액, 사용처와 그 영수증 사본
  -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법무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월별정리하고 그 내역에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 결정구분 : 부분공개
- 결정내역
  - 1항 법무부 장관 역임 후의 총 활동 내역서 【공개, 4매】
  - 2항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법무부 관계 위원회의 판공비 총액, 사용처와 그 영수증 사본 【비공개】
- 결정근거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 결정사유

공개청구 정보인 ‘법무부 관계 위원회의 판공비 총액, 사용처와 그 영수증 사본(2006년 1월~10월까지)’은 우리 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법무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 【부분공개, 1매】

## - 결정근거

공개 청구한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서 및 영수증’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성명, 상호명)에 관한 사항과 법인,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다만, 각 부서별 월별 집행액은 공개함

## - 결정사유

공개청구 정보인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서 및 영수증’에는 이름,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다만 각 부서별 월별 집행액을 공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목별 집행내역 및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임  
(대법원 2003. 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 판례 : 대법원 2003. 3.11. 선고 2001두6425

(행정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군수

원심 판결 : 대구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관하여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인정

나. 또한,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 2.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해당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명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제한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 (1)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결국, 원심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면, 이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2) 또한,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주문 기재 방법 또는 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XI. 정보공개 관련 질의 & 응답

### 1. 정보공개 접수단계

1

####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의 정의

Q. 일선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도 기록물(전자 문서 포함)로 등록되어야만 정보에 해당되는지요?

A.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하였거나 타 공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만이 공개대상이고,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대상 정보이므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진 및 동영상 등의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개대상에 해당되나 즉시 등록·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 법원에서의 사실조회 처리 방식

Q.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개인의 연봉과 퇴직금을 조회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정보공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A.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닙니다. 이는 기관간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이 아닌 사무관리규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때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 수는 없는 것이며 기관에서 개별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3

##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의 분류

Q.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질의형식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는 아니면 다른 처리절차가 있는 것인지요?

A.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내용이 민원사항이라면 민원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반면에 서신 형식의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서신내용이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에 기재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정보공개로 갈음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4

## 타인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Q.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말이 안되는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함은 물론, 청구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허구인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A. 첫 번째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질의한 내용처럼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거나, 특정되지 않은 청구인 경우 정보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보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내용이 정보공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민원 이첩”으로 처리한 후 민원접수부서에 청구서를 전달하여 민원으로 접수·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규정과 관련,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어야 작성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시점

에서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고 공개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전화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5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기재사항 모두 기재여부

- Q.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 또는 개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지?
- A.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서중 공란으로 비어둘 부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보완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보완 등은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함)

## 6

## 법인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시 기재사항

- Q. 법인인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시 신청서란에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모두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와 법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 A.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시 개인은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기재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법인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의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1호 규정에 사업자(법인, 단체) 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만 기재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일반단체와 구분하여,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 입력사항으로 되어 있어 2개 항목이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2개 항목과 법인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모두에게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신분 확인서(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했을 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7

### 원청구서에 대한 보충서 접수시 처리기간

**Q.** 처리중에 있는 원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보충서”라는 제목의 비양식 서면이 접수되었는 바, 이 경우 처리기간 기산일은 언제 인지요?

**A.**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로 1차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정보공개청구 보충서”라는 제목으로 처리기간 내에 다시 청구 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안이 ‘별지 제1호 서식’인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니고 A4용지에 발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수신자에 해당 공공기관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서로 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원 정보공개청구서와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서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별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도 별도로 기산하는 게 바람직한 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접수부서에서 접수한 날(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개여부를 결정통지 하여야 됩니다.

## 8

### 교정시설 수용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기산일은

**Q.** 교도소의 경우 민원실과 수용자들의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하고, 수용자가 거주하는

사동에서 사동근무 직원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각각의 결정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A.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날이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정보공개청구 접수부서(민원실, 문서수발실 등)에 제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동관리 근무자가 민원실에 서류를 전달한 날을 기산일로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국가공무원 근무시간내(09:00~18:00)에 사동관리 근무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동관리 근무자의 주된 임무는 수용관리이므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받은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종료 즉시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근무종료후 인계인수, 상황보고 등의 형편을 감안하여 근무종료후 1시간부터 결정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사동근무직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용자 사동에서 18시 이후에 사동관리 근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익일 09:00부터 기간을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9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

- Q.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이 여러 건으로 기관내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경우 처리부서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수료 산정 및 결정 통지서는 누가 통지하는지요?

- A.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기관내 여러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없는데에는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취합,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수수료 산정, 결정통지서 발송 등은 주된 처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부서에 전달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을 대표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므로 주관부서 미지정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정보공개 취하서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는지

- Q. 해당 처리과에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취하서를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과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A.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보유·관리 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서의 경우는 진행중인 정보공개업무의 종결과 관련되므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면 종결처리후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1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사본 교부를 민원 신청한 경우

- Q.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해당 자료를 수령한 청구인이 자료 분실을 이유로 자료의 재복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 위 사항을 정보공개청구로 재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A. 기 공개자료를 분실하여 민원으로 해당 정보를 재복사해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수수료 부과여부에 따라 업무절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사안 처럼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정보공개나 민원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지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로 접수 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참고로 법 제정 당시의 수수료 선정 과정을 보면, 첫페이지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해 정보를 탐색하는 인건비 등이 고려되어 수수료가 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첫 페이지에 대한 기본 수수료가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 12

## 정보공개 접수증 직인 날인 여부

Q.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보면 신청서에는 기관장, 접수증에는 기관명 란이 있는데, 절취선 및 접수증에 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접수증에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만을 하여 교부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A. 모든 개별법의 서식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0171호)』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식승인 요청을 한 후 서식 승인을 얻어야 만이 법정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도 시행규칙 제정 당시 서식 승인을 받은 법정 서식입니다.

따라서 서식상의 간인과 관인 날인사항도 사무관리규정상의 제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규정 제12조(문서의 간인)의 규정에 의하면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로서 ①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②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③허가·인가 및 등록증에 관계되는 문서인 경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정보공개청구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2조에 해당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절취선에 간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접수증에 접수자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접수기관명에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사무관리규정 제21조(관인 날인 및 서명)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로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25조(관인생략 등) 제1항에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증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를 아닌 공공기관명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규정상 관인을 날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청구서에 표기되어 있는 절취선과 접수증의 공공기관명에

간인과 관인을 날인할 필요가 없으며, 접수증에 표시되는 접수자의 직급과 성명의 기재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청구인이 답변자를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

Q. 정보공개 청구인이 담당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해 해당 내용에 대해 재청구 하면서 답변자를 타부서로 지정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타부서로 지정해야 하는지요?

A.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여 공개결정 통지한 경우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수단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의 내용처럼 담당(처리)부서에서 공개한 정보의 내용이 청구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아닌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청구인이 청구서에 다른 부서를 직접 지정해서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부서는 우선 청구인이 처리부서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요청한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동일내용을 처리부서만 달리하여 재차 청구한 것으로, 접수부서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요청대로 청구서의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받은 부서에서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업무 및 정보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 처분부서로 이송하고, 원 처분 부서는 재차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정받은 부서나 원처분 부서의 결정에 대하여 만족해 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또다시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내용을 3회 이상 반복청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여 내부 종결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14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접수 거부

- Q. 정보공개청구 접수 자체를 거부한 때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 A.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이를 어길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5

## 청구서상의 주소는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

- Q. 정보공개청구서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지정한 임의의 주소를 말하는지요? 그리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또한 청구인이 받기 수월한 전화번호와 메일을 기입해도 가능한지요?
- A. 정보공개청구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본인의 사실상 거주지, 근무지 등을 기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본인의 연락처로 기재하시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 등 연락이 용이한 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본인 확인 요청시 지체없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6

## 청구권 없는 자의 청구서 처리방법

- Q. 정보공개청구권 없는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A. 정보공개 청구권이 없는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서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민원이척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종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이첩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7

의식없는 자 대신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Q. 동생의 의식을 잃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안계시므로 형이 대리인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면 되는지요? 청구서와 위임장, 인감증명,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정도면 되는지요?

A.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와 관련된 본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형의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가족관계, 동생의 사고로 인해 형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상황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 정보공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

소속직원의 정보공개청구 가능여부

Q. 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소속직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건지요?

A.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 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사가 소속 학교에 대하여도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찾아볼 수 없기도 합니다.

19

청구정보의 소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처리방법

Q. 공개청구한 정보의 소관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단체·개인 등의 소관인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이송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비공개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

## 2. 정보공개 처리(결정)단계

20

### 조사과정에서 소속직원이 작성한 경위서 공개 여부

Q.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경위서를 공개 거부할 수 있는지요? 공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지요?

A. 담당직원의 경위서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장래 동종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의사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을 고려한 후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게 될 이익과 비교·교량(형량)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직원의 경위서를 공개할 경우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공개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이지만,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기관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21

### 소관사항이지만 실적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Q.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공개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리한 실적이 없는 경우,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이 없는 것도 하나의 정보이므로 공개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A. 정보의 유무 즉 정보가 있다, 없다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공개로 결정하고 해당업무를 수행에 따른 실적이 없음을 통보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존재여부” 자체가 중요한 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면, 비공개기준에 해당되는 근거 조항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2

### 청구정보를 72포인트로 재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Q.**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청구 정보를 72포인트로 출력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를 72포인트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인의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한글 72포인트 재작성’을 통한 공개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현재 정보공개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피청구기관에서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개분량이 적어서 업무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열람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차원’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3

###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인 인적사항관련

**Q.**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신청한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정보공개청구한 경우, 본인을 제외한 제3자(수임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청구한 것이므로 제3자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또한 발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어느 선까지 보아야 하는지?

**A.** 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내용이 신상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수임인을 포함한 제3자의

의견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한 청구시 제3자의 메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팩스 또는 등기우편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실 통지 및 의견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발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만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름, 주소(개략적인 부분) 및 연락처는 공개가 가능하나, 주소의 상세지번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 24

## 청구인의 성명이 들어간 진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Q. 특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청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여 진정서 내용과 조사내용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처리 방법은?

A.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등에서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 25

## 정보공개 지연처리에 대한 책임

Q.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을 지연 처리한 직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보공개를 민원사무로 보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지요?

A. 정보공개법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처리절차 및 방법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목적과 대상 및 적용범위가 상이하므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직원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업무를 광의의 민원사무로 볼 경우 지연처리에 대한 처분규정의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사무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처리지연 등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6

### 임용 당시 선서문 공개여부

Q. 임용선서문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인지요?

A.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의미하므로 질의하신 임용선서문은 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은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용 공직자의 서명은 도용 등의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7

### 하급기관의 정보를 상급기관에 청구한 경우

Q. 청구인이 상급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상급기관은 청구서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공개하여야 하는지?

A.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이송을 받은 기관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반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현행 정보공개법령에서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새롭게 취합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소관 기관(하급기관)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이송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무방하리라 봅니다.

28

타기관 소관인 민원취지의 정보공개 처리방법

Q. 정보공개 요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질의, 진정, 건의 등인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이 아닌 민원 이첩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A. 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라면 설사 그 내용이 질의, 진정, 건의 등의 민원성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원 접수 기관에서 자체 민원 이첩할 것이 아니라 청구정보를 보유·관리중인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면 됩니다.

민원 이첩에 대한 판단은 해당 청구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 우선 정보공개를 접수하고 이후 타기관의 정보임을 이유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면 되고, 이송받은 기관의 접수부서에서 민원 이첩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29

정보공개청구도 보완 요구가 가능한지

Q. 청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보통 청구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보충설명을 요구하는데, “청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라는 판단의 기준과 정보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A.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자체로는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확한 청구의 취지 및 범위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이러한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서의 보완 요구 절차를 거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 해당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를 사유로 부분공개결정 통지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회의록”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사결정의 종료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회의록 및 발언 위원의 명단 공개 여부 및 공개한 경우 공개범위는?

A. 우선, 참고적으로 위원회 등 위원 명단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세부기준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바, 내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제6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인 ‘라목’ 규정에 의거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나, 외부위원의 명단과 관련, 그 명단에 포함된 이름과 직위, 경력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는 하나, 그 공개로 인하여 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각종 사회단체의 로비, 협박, 압력 등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된 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명단과 관련하여서는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련,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의 발언자는 심의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며,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회의내용은 개별 위원 명단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나 행정소송의 판결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회의내용을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장래에 동종의 위원회 구성·

운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할지의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법적 설치근거, 업무의 성격 등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중 ①공무원징계위원회(공무원징계령 제20조), ②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26조의2), ③도시계획위원회(당해 자치단체의 도시관리조례 및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회의록은 당해 개별법에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그 외의 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의 구체적 사유를 당해 공공기관이 입증할 수 없다면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당해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발언자 내용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1 개인직무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Q. 공공기관 소속직원이 개인의 직무 편람을 작성할 목적으로 상급기관에 업무관련 사항을 질의하여 받은 답변자료도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지요?**

**A.**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직무편람을 작성할 목적으로 상급기관에 질의 답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질의 & 답변서”의 경우는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 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개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례 등을 통하여 확정된 내용으로 공개해도 될 사안이라면 청구인의 배려차원에서 공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청구량이 과다 또는 내용이 포괄적인 경우 대처방법

Q. 청구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포괄적인 경우 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청구요구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악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8.24. 2004두2783)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다 및 포괄적인 청구 등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체”식의 포괄적인 청구는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표된 ‘정보목록’을 검색하여 구체적인 청구항목을 청구서에 기재한 후 청구토록 안내하는 식의 비공개 결정 통지, ②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2항을 적용(공개방법 직권변경)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③ 열람 및 사본을 통한 공개시 개략적인 수수료 내역을 산출하여 청구인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본의 사전 복사 등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33

정보공개법상의 “지체없이”의 정의

Q. 정보공개청구 내용중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에서 “지체없이”는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하는가요?

A.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체없이”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1조의 ‘공개기간의 연장’, ‘제3자 의견청취’, ‘타기관 이송’과 제13조의 ‘정보공개 결정통지’ 등 주요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업무 담당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중인 전후의 업무가 단절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로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4

정보를 비법정양식으로 가공한 후 공개 가능한지

Q. 일정한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만든 양식으로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A.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와 관련,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를 근거로 비공개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시 선택한 정보공개 형태 및 방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공기관이 직권으로 선택·변경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

공공기관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개여부

Q. 공공기관의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은 공개대상이 되는지요?

A. 공공기관의 특정예산 집행상황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해당기관의 계좌번호와 카드번호에 대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계좌번호와 카드번호는 공공기관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및 빈도도 높은 현대 사회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세출 관련 계좌번호, 카드번호와 은행명의 공개가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36

전산시스템상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의 공개여부

Q. 정보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이를테면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중 생년월일이 0월0일부터 0월0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같이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도 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는지요?

A. 공공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자료중 정보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월○일부터 ○월○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의 정보는 전산시스템상 별도의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이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가공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급자를 공개해 달라고 하였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응 들어 비공개함이 타당합니다.

37

취합 등 별도의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공개여부

Q. “2005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인쇄물 계약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쇄물계약 대장 등 따로 관리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 해당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요?

- A. 청구정보인 “2005년 1월~2008년 1월까지 기관에서 발주한 모든 인쇄물 계약현황(계약일자, 계약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입찰방식, 실제 납품된 업체명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2005년 1월~2008년 1월까지 기관에서 발주된 모든 인쇄물 계약현황(계약일자, 계약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입찰방식, 실제 납품된 업체명 등)”의 정보를 가공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대로 원본에 대한 사본을 교부하고자 한다면 이에 부합되는 모든 계약 및 회계서류의 원본내용중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오히려 당해 공공기관에게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한 사항만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면 인쇄물 계약에 대한 계약 및 회계서류에 대한 장수를 낱알이 산출하시어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에 대한 사본을 만들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구인이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내부종결하시기 바랍니다.

38

## 정보목록상 공개 표시된 문건을 비공개한 경우

- Q. 내부 검토중인 자료를 정보목록상에 ‘공개’로 표시를 한 이상 ‘공개’ 해야 하는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목록의 내용에 대한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 A. 제정 당시 “주요 문서목록”만 공개토록 규정되었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2004. 1.29. 자 전문 개정을 통해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내용과 관련, 정보목록의 전자적 공개 이후에도 공개와 비공개의 구분을 잘못

설정하여 놓은 문서 등의 정보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다시 정정할 수 있으며, 공개 시점에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공개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정보목록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비공개대상 범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면 비공개 결정이 가능한 것이며, 다만, 국민들이 당해 기관이 특정 정보목록을 공개 대상으로 설정하고 청구한 그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한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청구인의 불필요한 불복제기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전자적 공개는 반드시 공개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과 달리 공개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은 정보 생산 시점에서 설정한 것으로 실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반면, 정보공개 청구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제반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의 원칙” 등이 개입되는 것인 만큼 공개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이나 이해관계인(제3자)의 이익보호에도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9

이미 공표(공개)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시 공개방법

Q.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표자료라 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공개형태인 사본·출력물이 아닌 소재안내를 통한 공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와 같은 공개방법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정보공개제도 외에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사전정보공표제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동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현재까지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공개)된 자료는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개청구시

청구인들은 얻고자 하는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공표(공개)된 정보의 소재 및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은 공개방법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국민은 자신이 직접 또는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미 사전 공표된 정보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이를 자유로이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특수한 개인적인 사유가 위와 같이 이미 사전 공표(공개)된 정보의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06-10935, 07-01715)의 재결례도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복심판 제기에 대하여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 결정한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께서 공개형태를 사본·출력물로 명시하여 공개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된 당해 정보의 소재(인터넷 접근경로 : URL)를 안내하여 주고, 열람 및 출력에 장애가 없다는 내용 등 그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입증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법·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불복심판 제기를 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 결정될 개연성이 많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

## 동일단체내 다른 임원이 동일건을 반복 청구한 경우

**Q.** 동일 단체(법인 등) 내에서 각기 다른 임직원(개인명의)이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처리절차에 의거 정보공개여부결정과 통지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요?

**A.**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해석에 있어서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그 법인 등의 임직원의 청구적격은 다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 등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인 등의 임직원이 번갈아가며 동일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부서)을 괴롭힐 목적으로서 정보공개법을 악용(남용)하는 사례라고 판단되더라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에 개별 청구건별로 2회 청구건까지는 결정통지하고 3회 청구건부터 내부종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당해 법인 등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 설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41

### 지구대 CCTV 녹화내용을 복제물 형태로 청구한 경우

Q. 열람·시청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결정된 지구대 CCTV 녹화내용에 대하여 시청·열람 후 녹화의 공개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공개여부?

A.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를 공개 받으려면 해당 정보가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정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수기로 작성하여 생산된 종이문서라면 이는 본인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당해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CCTV 녹화물 역시 개인의 모습이 촬영된 부분만 열람·시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CCTV 녹화물은 청구인의 모습 뿐만 아니라 동일 장소에서 상당시간 동안 여러 사람 또는 물체 등의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활동 내용 및 상황들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녹화테이프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에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 42

### ‘근무상황부’의 공개 가능 범위

Q. 연가, 병가, 출장, 당직휴무, 연수 등의 항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 부분은?

- A.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관련,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그것이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조퇴, 외출, 당직휴무,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면 이중 비공개 판단의 기준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 ‘근무지내 출장, 당직휴무, 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비공개의 구체적인 사유가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이므로 연가 및 병가 등의 날짜의 공개는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근무지내 출장, 당직휴무, 연수’의 날짜 및 사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결근, 지참, 조퇴, 외출과 관련한 날짜는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

**내부결재 없이 참고자료로 보관중인 문서의 공개여부**

- Q. 언론에 공개되어 감사실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결재 없이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청구인이 조사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하는지요?
- A. 감사실의 “2003년도 도매시장 관련 진상 조사결과 보고서”의 정보는 비록 언론에 문제점이 공개된 도매시장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문서에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관리되지 않았을 경우 문서로서의 성립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의 대상인 정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공개대상 정보의 종류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므로 공개대상 정보는 아니지만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였고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보고 즉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44

## 판결집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공개 가능여부

**Q.**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지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자 거주실태 및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자 납부대상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을 때 정보공개법을 통한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일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6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예시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분류하여 보면, ①일반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본적지 등, ②가족 정보인 부모의 성명 및 직업, 배우자의 성명 및 직업 등, ③교육 및 훈련정보인 학력, 학교성적, 상벌사항, 성격 및 행태보고 등, ④병역정보인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⑤부동산정보인 소유주택, 소유토지, 소유상점 및 건물 등, ⑥동산정보인 연봉,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원천 등, ⑦법적정보인 전과 기록, 교통위반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등, ⑧의료정보인 병력, 의료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등, ⑨습관 및 취미정보인 흡연량, 음주량, 취미의 종류, 도박성향 등, ⑩민감한 정보인 인종 및 종족, 정치적 견해, 성생활정보, 행정처분기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6호에 해당될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공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 인사기록카드 공개여부

Q. 공공기관의 '특정인에 대한 근무경력 및 채용계획, 채용공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사기록카드 하나 밖에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공개범위는?

A. 정보공개 청구된 “특정인의 근무경력 및 채용계획, 채용공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인사기록카드’ 밖에 없다면 이는 근무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채용과정에 대한 내용과 채용 당시의 채용공고서의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은 ‘부분공개’로서 공개내용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현황인 바 이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당해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학력, 가족사항 등을 가리고 성명과 현 근무부서만 공개하는 형태가 타당할 것이며, ‘채용과정에 대한 내용과 채용 당시의 채용공고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정보(자료)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형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5

## 제3자가 다수인 경우 의견청취 방법은

Q.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제3자가 다수의 개인으로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의 의견청취방법은?

A.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의 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면 됩니다.

47

구두 의사표시만으로도 취하할 수 있는지

Q. 청구인이 취하의사를 밝혔지만 취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청구인을 대신하여 기관에서 청구인과의 통화내용을 기재하고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청구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A. 우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취하’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는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한 민원서류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처리 기간은 즉시이므로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신청한 민원처리를 종결하면 되고, 별도의 수리 통보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하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의 취하서에 대한 처리는 두 가지 경우의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직접 “취하”버튼을 누른 후 종결 처리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종결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하의사를 구두로 밝힌다거나, 스스로 취하원 작성·제출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정보공개처리를 종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8

접견인과의 대화기록 공개대상여부

Q. 수용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접견녹취록(녹음파일)에 대하여 문서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청구서대로 공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녹취록 형태로 공개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A. 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 형태 및 방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공기관이 직권으로 선택·변경하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녹음파일 형식의 녹취록을 서면 형식의 녹취록으로 가공하는 데 있어 당해 공공기관(교도소)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양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경우를 말합니다. 녹음파일 형식의 녹취록을 서면 형식의 녹취록으로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이 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면 서면 녹취록으로 별도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녹취록 가공과 관련,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본인의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자료 활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면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사무소에서 속기사가 기록한 공증된 녹취록이 재판에 증거 효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녹음파일 형식을 별도 이동매체(CD 등)에 저장하여 공개하고 청구인의 비용으로 속기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녹취록을 만들도록 권유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관계인인 ‘제3자’ 즉 청구인과 대화한 접견자에게 정보공개청구사실 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자의 목소리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자의 목소리를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나, 현행 ‘무인접견시스템’에서는 당사자간의 목소리를 구분하여 이를 별도 CD에 기록할 수 없고, 제3자의 목소리를 가리고 부분공개를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공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개형태와 공개방법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한 녹취록이 7분정도의 내용으로서 이를 서면녹취록으로 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제3자의 발언내용을 가리고 청구인 본인의 발언내용만 서면으로 옮겨 적어 이를 부분공개 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산정은 녹화테이프 내용을 복제하는 것으로 1편으로 간주하여 5,000원[녹취록 작성 비용은 번역료(A4 1매, 680자가 1만원임)의 1/2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49

송치서류 부분이 행정정보에 해당하는지

Q. 고소장,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등의 원본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여 송치서류 부분(송치서 표지, 의견서, 수사결과보고)만 내부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정보 대상인지?

※ 송치서 부분은 송치서류 결재 과정에서 수기로 결재란을 만들어 결재를 받습니다.

A.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자체 생산하였거나 외부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청구정보는 당해 공공기관이 검찰로 송치한 고소장, 고소인의 진술 등의 자료의 일부를 복제한 것으로, 부분 자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가 아닐 지라도 이전에 결재를 맡은 원본 문서의 일부이므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송치서류 부분을 공개하실 경우 청구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가 있을 경우에 해당 조항에 의거 비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50

홈페이지-자유게시판의 청구 대상 여부

Q. 홈페이지 상의 자유게시판에 있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이것이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나요?

A.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결재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유게시판”의 내용은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는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51

## 수용자가 열람·시청의 공개형태를 원하는 경우

**Q.** 수용자가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직접 열람·시청을 요청할 경우 또는 정보공개형태를 사본·출력물 등으로 한정하고 일부는 열람·시청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A.** 청구인이 수행자로서 개별법에 의거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이를 해소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을 열람·시청과 직접방문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사본·출력물로 당해 공공기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행자 개인의 청구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당해 수행자 개인이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을 위하여 교정기관에서 별도의 교도관을 입회하여 일일이 수행자를 해당 기관까지 직접 방문하여 열람시키게 한다면 교정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형집행법 등 개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다른 개별법인 정보공개법이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감자나 수행자의 지위에서 청구취지가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고 공익적 감시활동을 이유로 많은 양의 정보를 청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악용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는 권리남용을 들어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남용을 들어 무조건 비공개 하는 것 보다는 앞에서 설명 드린 절차를 거쳐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부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시 정보공개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당해 공공기관에서는 수수료 산출을 위한 정보공개 결정 정보를 사전에 사본으로 복사하여 비치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오니 수수료 산출은 사본 복사가 아닌 원본의 매수를 산출하여 계산하고 청구인이 비용부담에 응하면 그 이후에 사본을 복사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52

“ ~ 관계철”인 경우 처리방법

Q. ○○○관련철, ○○○관계철 등의 내용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정보 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 A. 질의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우선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정보목록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문서목록상의 보유문서 전체를 청구한 사례이기 때문에 문서철 내의 모든 정보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청구인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신 후 내용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① 정보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정 정보내용을 명기할 것
  - ②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
  - ③ 청구한 정보의 양으로 볼 때 비용부담(수수료)가 크다는 점을 설명할 것
- 이상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내용을 특정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회신이 없을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3

업체선정과정에서의 신청서류가 대상인지 여부

Q. 입찰에 응찰하여 탈락한 업체 명의로 낙찰 업체의 신청 서류중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 공개가 가능한지?

- A. 우선 이는 ‘입찰참가절차 및 결과관련 문서’와 ‘인허가 문서’에 대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입찰관련 정보로서 입찰실시에 관한 공고사항, 입찰에 부치는 계약의 내용, 입찰실시의 장소·일시 등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입찰 결격 사유, 경쟁계약 참가자격 요건, 업자선정기준 등 입찰참가의 절차·결과에 관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②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③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허가문서와 관련, 개별적인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 인·허가대장, 업자·보유자 등록부는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다만, ①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 또는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경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무기, 화학,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취급 또는 그 관련설비·시설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③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 또는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54

##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정보공개

Q. 성과상여금 S 등급자 및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S 등급자 및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공개여부는?

A. 먼저 첫 번째 질의내용인 성과상여금 S 등급자 명단 공개 가능 여부와 관련, 그 명단에는 소속, 직급, 성명, 성과등급 등이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성과관리규칙’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서 동 규칙에 이에 대한 공개, 비공개 규정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성과상여금 S 등급자 공무원 명단 공개’ 여부는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인 ‘소속, 직급, 성명, 성과등급’ 등이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당해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다른 개별법에 이에 대한 비공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가 가능하고 현재 SS 등급자 및 S 등급자를 상·하반기 별로 각각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위원 명부는 소속과 성명, 직위 정도는 공개하도록 하고, 다만 심의회와 같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의

비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등록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위원 명단과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도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결국 사안에 따라 심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명단의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공무원징계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은 개별법령에 의거 비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 명단은 당해 공공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염려의 유무 및 정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의 지장 유무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당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지만, 성과관리위원의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하여야 합니다.

## 55

### 접견민원인의 인적사항 공개여부

**Q.** 수용자가 본인을 면회한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면서 면회인 성명만이라도 공개를 청구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구치소의 수감자를 면회코자 하는 자는 별도 신청서에 민원인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회 목적 등)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자가 본인을 면회한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①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의 비공개와 ②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한 사항으로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①항에 비공개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 미국 등은 ②항에 비공개 세부기준을 두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①과 ②항을 동시에 개인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회를 한 민원인은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민원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의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겠지만 혹시 공개에 동의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한 이상 공개하셔도 됩니다.

우리부의 경우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접견 신청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주소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체크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보라미시스템에서 관리하여 민원인 “주소” 공개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56

## 관인대장의 전자적 공개 가능여부

**Q. 관인대장의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방법은?**

**A.** 관인대장은 관보에 사전 공표된 정보로서 공개가 가능하나, 이의 공개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방법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한 관인대장을 청구인이 위·변조하여 범외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도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과 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정보공개 통지단계

57

#### 즉시공개 정보수령증 발급

Q. 즉시공개처리전에 대한 정보수령증에 수수료 납부 내역이 없다면 청구인은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로서의 수령증 사본(금액기재 포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공공기관은 즉시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공개 처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수령증을 발급하여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보관하는 바, 정보공개청구인이 수령증 사본을 요청할 시 수령증 원본을 복사하여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여 담당공무원의 날인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에 대해서는 ①정보수령증에 별도 표시하여 날인하거나, ②해당 정보청구 건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내용, 처리결과, 수수료 산출내용 및 근거, 수수료 징수일 등의 내용을 표시한 “수수료 영수확인증”의 별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8

#### 관인이 날인된 정보공개시스템상의 결정서를 원하는 경우

Q.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출력하면 관인 날인이 생략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관인 날인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정보공개시스템상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면 시스템상 관인 날인이 생략되어 있어 공문서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관인 날인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59

## 비공개결정통지서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 요청

Q. 청구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피청구기관에 재교부 신청한 경우 이를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A. 청구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신청하는 일반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는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4. 기타

60

###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시 수수료 부과여부

- Q.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경우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 각호는 비용감면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본인이 제출하였던 서류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도 비용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수료를 당연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61

### 책자에 대한 정보공개수수료 부과 기준

- Q. 백서, 연감 같은 책자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홍보물, 팜플렛 등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요?
- A. 책자도 용지의 크기에 따라 매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홍보물과 팜플렛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무료로 배포된 자료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로 산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62

### 신문사가 수수료 감면대상인지 여부

- Q. 언론기관인 신문사도 비영리 단체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와 신문사 대표(사장)의 직인날인 없이 기자증을 제시하고 개인 신분으로 신청시 감면대상이 되는지?

- A.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 때의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므로 비영리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신문사는 감면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기자가 개인 신분으로 청구하였다면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63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공개된 정보의 수수료

- Q. 공개할 정보가 매우 간단한 경우 공개정보를 첨부물로 등록하지 않고 결정통지서에 직접 기재해도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 A. “공개할 정보가 매우 간단한 경우” 공개정보를 첨부물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결정통지서에 직접 기재해서 공개해도 무방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첨부한 문서가 없고 또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줄 때 공공기관에서 우편료를 부담하고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64

영치금이 압류된 수용자의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 Q.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향후 청구에 대하여 결정내용을 통지하지 않아도 하자가 없는지?
- A. 수용자가 교정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기관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인 정부수입인지와 우송료인 우표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납부할 수 있는 영치금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서신교환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대리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는 공개(부분공개) 결정된 정보의 수령에 대하여 위임이 가능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영치금 압류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정하여진 기간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이 내부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수수료 납부를 요청하고 미납된 경우 납부일시를 정하고 10일 경과시 내부종결 처리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용자가 본인의 영치금이 압류되어 비용부담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용(남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시고, 기일까지 비용부담이 없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종결을 하시기 바라며, 그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보공개법 제5조 및 민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의 남용을 들어 비공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5

**열람 후 사본 교부를 원하는 경우의 수수료 부과**

- Q. 청구인이 공개정보 수령방법을 열람 후 필요한 부분만을 사본·복제물의 형태로 재청구할 경우 열람수수료 및 복사에 따른 수수료 정산방법은?**
- A.**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비록 공개형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교부방법을 일반우편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청구인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본교부가 가능한 바, 이 경우 당초 정보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상의 수수료 산출금액은 “원본의 열람·시청”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열람부분에 대한 수수료 납부 후 청구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본교부를 요청할 경우 그 해당 매수마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을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 산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납부하여야만 사본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열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본교부를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받을 경우 정수결의금액과 정보공개시스템 상의 정산 수수료 내역이 다르므로 시행문과 결정통지서 등 출력한 문서에 별도 부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66

**칼라사본이 가능한 경우 수수료 부과기준**

**Q.** 정보공개청구시 도시계획원도를 칼라사본으로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 기관이 칼라복사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개여부 및 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선택한 공개형태 및 방법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존중하여야 하는만큼 청구인이 도시계획도(원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이를 칼라사본으로 청구하였다면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사 매체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칼라형태로 공개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수수료 산정은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의 수수료와 당해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한 수수료 규정에 명시된 금액(‘도면·카드 등의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에 명시된 사본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청구에 동의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칼라복사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므로 청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시중의 복사비용을 참고하여 부과하면 됩니다.

67

**수수료로 수입인지 대신 우표를 제출한 경우**

**Q.** 수용자가 수입인지 대신 우표를 정보공개수수료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우표로 납부받아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우선, 교도소 수감자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수감자는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서는 접견, 서신과

전화통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도 서신에 의한 방법으로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내용과 관련, 수용자 특성상 비용 납부 시 수입인지와 우표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비용부담 총액에 대하여 우표로 전부 서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시에는 반송사유를 분명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본인들의 특수한 지위를 악용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우표로 전부 납부하면 해당 기관이 알아서 처리하여 주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귀찮게 여겨 우표로 수입인지를 대신하여 결정통지서에 소인하여 놓으면 이는 사후감사시에 문제가 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영치금을 계좌로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서신으로 계속 요구하는 수감자도 많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령 등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반송하고, 해당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내부종결 처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결정통지서에 소인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68

제3자의 불복구제 이후 접수된 취하서의 처리

Q. 정보 부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이 있는 후 접수된 청구인의 취하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취하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처분의 신청후 취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은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어떤 처분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를 취하하는 것은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취하를 하여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처음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여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취하가 인정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69

## 시스템상의 정보공개처리대장 관리방법

- Q.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수기대장과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양식을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대장을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 A.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시스템에 반영하여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중인 기관에서는 시스템상의 관리 양식을 출력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즉 시스템과 실제 처리 수기대장이 다르다면 별도의 대장이 필요하지만 시스템 양식과 수기대장의 형식이 동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로 마련하지 않고 시스템상 대장을 출력하여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70

## 비공개세부기준에 포함된 정보의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

- Q.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시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A.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는 “...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무부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p.41)을 보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은 각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으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경우는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비공개 세부기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이미 심의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어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가급적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71

허위사실 적시시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여부

Q.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결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 정보를 은폐할 목적 등으로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통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번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주체는 해당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문서내용의 허위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수행중의 사소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하여 내용상 부정확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문서의 명의인이 아니라도 전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공무원은 본죄의 주체가 되나, 업무보조자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보다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표에 특정인의 예정순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대판1990.10.16, 90도1170)

담당공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서에 적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고, 부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72

공개정보에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원하는 경우

Q.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본대조필을 원하는 경우 이영 응하여야 하는지?

A.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를 보면 청구인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보공개법

에서 규정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무원이 원본의 정보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처벌조항을 별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형법 등에 의하여 징계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에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로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징계별과 형사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공개대상 정보 공개 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면 대구지방법고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시 원본의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3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시 수당 지급 여부

**Q. 정보공개심의회를 여건상 부득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 심의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인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 대면회의가 원칙이지만,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심의는 집합심의가 아닌 관계로 위원들이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처럼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자체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보시면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심의시 수당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내부방침으로 별도 결재를 득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74

민원성 이의신청 처리

Q.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인 집 앞에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외관 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처리과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외관 도면을 전부 공개 하였으나, 공개정보가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전에 열람한 건축물 외관 도면과 수치가 상이하다고 하면서 기존에 열람시켜 줬던 도면을 공개 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처리방법은?

A.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과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①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당해 제3자 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 이미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각하 결정하실 수 있으며, 굳이 본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이접하여 답을 회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공개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각하결정대상이나, 민원인의 편의차원에서 민원이접하여 답변을 회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75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Q. 이의신청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정보공개결정도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얼마후 위원회에서 비공개결정한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심의회를 다시 개최해야 될까요?

A. 공개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쳐 비공개결정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정보공개결정시점과 이의신청시점 사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심의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76

##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경과한 결정통지의 효력

- Q. 정보공개결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하루 초과하여 결정통지를 한 경우 결정내용의 효력은?
- A. 정보공개결정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통지기일인 7일을 넘겨 하루 초과하여 결정통지 하였다 하여 결정내용에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피청구기관이 결정통지를 지체 하였다면 해당기관은 정부업무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77

## 제3자의 의견에 반한 행정심판 재결시에도 공개실시일에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 Q.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 A.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 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8

공개방법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여부

Q.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방법을 사본의 교부로 요구하였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열람으로 공개결정하여 통보하였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양의 과다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출력물과 열람을 병행하여 교부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79

## 정보목록을 수용사동에 비치하여야 하는지

Q. 교정기관에서 정보목록을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동에 정보목록을 비치해야 하는지 여부?

A.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면 별도로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동에 정보목록을 비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수용자들의 편의제공차원에서 정보목록을 사동에 비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질의&응답에서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

초판 발행일 : 2007년 12월

1차 개정판 : 2009년 12월

발행처 :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09호

전화 / 02-2110-3484

팩스 / 02-2110-3079

집필 및 편집 :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이은식

담당사무관 김경수

담 당 이경남

담 당 이우람

인쇄처 : 동광문화사

전화 / 02-503-5165

leelee1974@hanmail.net

지킴이  
기분 좋은 기분